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85-01



#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

| 2022. 4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본 보고서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04. 08

책임연구원: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백승흠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인숙 행복한울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이사

연구보조원: 이세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제1장 서론

|                         |    |
|-------------------------|----|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10 |
|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 | 12 |
| 제3절 연구 방법 .....         | 13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거주시설 유형

|                                   |    |
|-----------------------------------|----|
|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개념과 유형 .....          | 16 |
| 1.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과정 .....            | 16 |
|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               | 17 |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 24 |
| 1. 선행연구 검토 .....                  | 24 |
| 2.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    | 26 |
| 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      | 30 |
|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례 .....           | 32 |
|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32 |
|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33 |
|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 34 |
| 4.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례 .....            | 35 |

## 제3장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에 대한 법과 제도

|                                                               |    |
|---------------------------------------------------------------|----|
|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 39 |
|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                                           | 39 |
| 2.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                                        | 40 |
| 3.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 42 |
| 제2절 외국의 복지시설 CCTV 설치관련 법제도 분석 .....                           | 46 |
| 1.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 46 |
| 2. 영국 .....                                                   | 55 |
| 3. 미국 .....                                                   | 56 |

|                                      |    |
|--------------------------------------|----|
| 4. 독일 .....                          | 60 |
| 5. 일본 .....                          | 62 |
| 제3절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 66 |
| 제4절 소결 .....                         | 78 |

## 제4장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실태조사 결과

|                                        |    |
|----------------------------------------|----|
| 제1절 방문조사 개요 .....                      | 84 |
|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장소 현황예시 .....       | 95 |
| 제3절 소결 .....                           | 96 |
| 1. 기관방문 결과 .....                       | 97 |
| 2.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돌봄 시범사업 연계방안 ..... | 98 |

## 제5장 CCTV 관련 인식조사 결과

|                             |     |
|-----------------------------|-----|
| 제1절 종사자관련 FGI 분석 결과 .....   | 104 |
| 1. 종사자 FGI 참여자 .....        | 105 |
| 2. 연구절차 .....               | 106 |
| 3. 자료분석방법 .....             | 105 |
| 4. 종사자 FGI 분석 결과 .....      | 106 |
| 5. 소결 .....                 | 120 |
| 제2절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 122 |
| 1. 전문가 FGI 참여자 .....        | 122 |
| 2. 연구절차 .....               | 123 |
| 3. 자료분석방법 .....             | 124 |
| 4.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 125 |
| 5. 소결 .....                 | 138 |
| 제3절 장애인 당사자 FGI 분석 결과 ..... | 140 |
| 1. 당사자 FGI 참여자 .....        | 140 |
| 2. 연구절차 .....               | 140 |
| 3. 자료분석방법 .....             | 141 |
| 4. 당사자 FGI 분석 결과 .....      | 141 |
| 5. 소결 .....                 | 146 |

|                          |     |
|--------------------------|-----|
| 제4절 이해당사자 FGI 분석결과 ..... | 148 |
| 1. 이해당사자 FGI 참여자 .....   | 148 |
| 2. 연구절차 .....            | 148 |
| 3. 자료분석방법 .....          | 149 |
| 4. 이해당사자 FGI 분석 결과 ..... | 149 |
| 5. 소결 .....              | 166 |
| 제5절 요약소결 .....           | 170 |

## 제6장 결론 및 제언

|                                              |     |
|----------------------------------------------|-----|
| 제1절 연구결과 .....                               | 174 |
| 1. 선행연구와 외국 법 제도의 함의 .....                   | 174 |
| 2.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                     | 178 |
| 3. 장애인거주시설 CCTV 관련 인식조사 결과 함의 .....          | 179 |
| 제2절 연구제언 .....                               | 180 |
|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운영관리 규정과 지침 및 예산추계 ..... | 182 |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안) .....   | 182 |
| 2.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운영 내부 지침(안) .....         | 186 |
| 3.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운영시 소요예산 추계(안) .....      | 189 |
| 참고문헌 .....                                   | 191 |
| 부록1: 개인정보처리 규정(안) .....                      | 193 |
| 부록2: 개인영상정보 CCTV 처리 규정(안) .....              | 199 |
| 부록3: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안) .....                   | 205 |
| 부록4: CCTV 설치운영규정(안) .....                    | 212 |
| 부록5: 일본사례(시립장애인복지시설 방법카메라 운용규정) .....        | 225 |

## <표 차례>

|                                          |     |
|------------------------------------------|-----|
| [표 1] 장애인거주시설 유형과 기능 .....               | 22  |
| [표 2]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09-2019) .....       | 23  |
| [표 3]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수(2019) .....          | 23  |
| [표 4]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33  |
| [표 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 34  |
| [표 6]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 35  |
| [표 7] GDPR의 구성 .....                     | 46  |
| [표 8] 외국 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    | 79  |
| [표 9]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실태조사표 .....             | 83  |
| [표10]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장소 .....            | 94  |
| [표11] 노인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식차이 ..... | 96  |
| [표12] 종사자 FGI 참여 대상자 .....               | 103 |
| [표13] 종사자 FGI 분석 결과 .....                | 104 |
| [표14] 전문가 FGI 참여 대상자 .....               | 122 |
| [표15] 전문가 FGI 분석결과 .....                 | 124 |
| [표16] 당사자 FGI 참여 대상자 .....               | 140 |
| [표17] 이해당사자 FGI 참여 대상자 .....             | 148 |
| [표18] 이해당사자 FGI 분석결과 .....               | 149 |
| [표19] 사회복지기관 CCTV 설치현황 .....             | 175 |
| [표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 .....         | 175 |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연구방법 설계도 .....               | 14  |
| <그림 2> 충청남도 ○○ 거주시설(기관방문) .....     | 85  |
| <그림 3> 충청남도 ○○ 보호작업장(기관방문) .....    | 86  |
| <그림 4> 경기도 ○○ 거주시설(기관방문) .....      | 87  |
| <그림 5> 서울 ○○구 단기거주시설(기관방문) .....    | 89  |
| <그림 6> 충북 ○○ 노인요양시설(기관방문) .....     | 91  |
| <그림 7> C ○○ 주간보호센터(기관방문) .....      | 92  |
| <그림 8> D ○○ 공동생활가정(기관방문) .....      | 93  |
| <그림 7> CCTV 이용료(예시) .....           | 94  |
| <그림 8> 장애인거주시설 디지털돌봄 서비스 체계도 .....  | 97  |
| <그림 9> IoT 센서 및 통신단말장치 설치(예시) ..... | 98  |
| <그림10> CCTV-연기감지카메라(예시) .....       | 100 |
| <그림11> CCTV 영상(예시) .....            | 101 |
| <그림12> CCTV 설치예시(예시) .....          | 101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인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다른 보편적 권리보다 우선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실현을 위해 법적 권리, 공동체,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동의로 제시된다. 한편, 인권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존엄한 삶의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권리의 동등성이나 구조관계에 따라 다양한 논쟁이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인권보장보다는 보충적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가지며, 이와 같은 보충적 서비스마저도 대부분 특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예로서 장애인의 취업관련 규정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권리실현으로서의 취업 보장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서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취업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불편감도 감수해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인권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이다. 거주시설 내 장애인에게 시설 거주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자립생활과 탈시설화에 의한 소규모 시설화, 사회통합 등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일명 도가니법으로 명명되는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사 1/3 이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자 중 선임하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강화해서 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관은 지도점검과 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4년 약 4년간 진행되어진 광주Y학교 성폭행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에서부터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지적장애인 성폭행이 발생한 전주의 J시설,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횡령, 이용장애인 상습폭행을 한 서울 I시설, 장애인 인권유린과 학대로 인해 2016년 5월 16일 종사자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한 남원 P시설 등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이용장애인 인권유린과 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인권유린과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종사자가 학대를 목격했을 때 내부의 공식적 보고체계에 보고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공식적 조치보다는 이러한 사항을 아무 개입이 없이 방관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나(강선아, 2006, 유성호·강선아, 2008), 사회복지시설 내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서소혜·박화옥, 201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2년도 시행되어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59조의 4항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유린에 대해 학대신고의무자로 시설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유린과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있다. 하지만 학대행위 당사자가 근무하는 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과 리더십 부재, 학대에 관대한 조직 문화, 내실 있는 교육(인성, 인권 등) 부재 등과 해당 시설 관리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재 등의 제도적인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시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CCTV 영상관리 정보 관리 및 운영지침 등 CCTV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범위

장애인거주시설은 자유를 갈망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통제가 불가피한 거주시설의 특성이 상반되게 교차하는 곳으로서 시설 내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의 폭에 따라 크고 작은 인권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욕구의 기준과 종사자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도 차이가 있어 거주시설은 인권 관련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인, 시설, 종사자, 장애인 등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서로 맞물리면서 인권보장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찾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 문제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딜레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주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가 인지하는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의 범위가 구체적이거나 체계화되지 않아 시설 내 인권문제는 그 해결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및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준비를 통해 장애인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거주시설 내 CCTV 설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거주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범위로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유형분석 및 인권침해 사례 분석
  - －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및 유형
  - － 외국의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문헌 및 법령분석
-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장소 설정 및 관리운영 기준 마련
  -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CCTV 설치 장소 기준 마련
  - － 장애유형 및 시설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CCTV 설치 장소 기준마련

- CCTV 영상관리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 문제 방지를 위한

CCTV 관리 운영기준 마련

- CCTV 영상의 열람 사유 및 열람 절차 규정 등 마련

#### ○ 장애인거주시설 CCTV 영상관리 운영지침 마련

- 시설 내 CCTV 영상관리 열람 요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연구
- CCTV 설치 비용 조사 및 비용 보조안 마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운영비 보조안 연구

## 제 3절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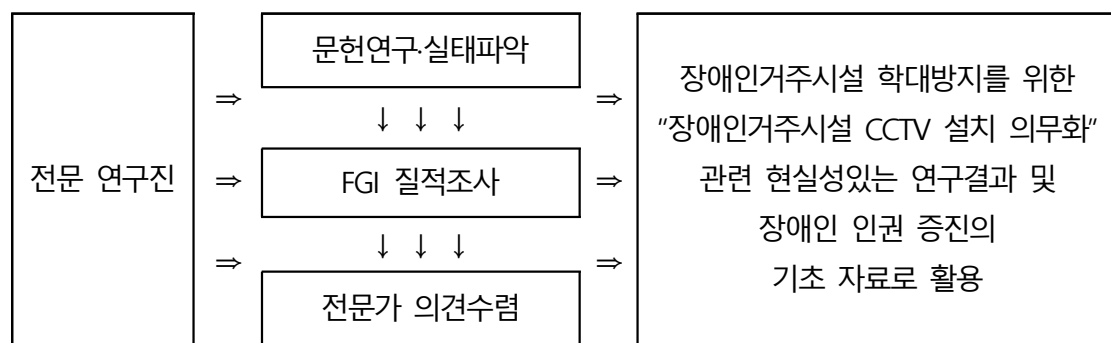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CCTV 설치 장소 결정과 CCTV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문헌연구 및 법령연구를 위해 국내외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또한 타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운영 기준등과 함께 관련 법령과 지침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CCTV가 설치된 수도권지역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시설 외) 일부기관을 방문 조사하여 CCTV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사례를 분석하였다.
3. 시설종사자, 당사자, 장애인계 인권 전문가, 후견인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FGI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각 토의 진행은 1시30분 ~ 2시간 정도 진행되며, 인터뷰 내용은 질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로 인한 피해, 연구참

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심층인터뷰의 경우 의사소통과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가족이나 생활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문헌연구, 질적조사, (전문가 간담회 및 관련전문가 자문)등 크게 3 가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방법 설계도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거주시설 유형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개념과 유형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확대 사례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거주시설 유형

### 제1절 장애인거주시설 개념과 유형

장애인 거주시설은“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 가정에서 제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일상적 보호, 생활환경 정비, 주거공간 제공 등의 보호적 기능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적·문화적 그리고 변호적 기능 등의 개별적 보호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적 구분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장애유형별거주시설),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요양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장애영유아시설)들을 입소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장애정도나 장애유형에 따라 입소대상자에게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은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거주서비스 이외에도 복합적인 상담, 교육,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1.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역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변해왔다. 장애인을 분리하여 수용 보호하던 기능에서 장애인을 재활치료, 교육하며 사회복귀시키는 기능으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

통합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선 근대에 들어서 한국전쟁동안에 시설이 확대되어 1952년 10월에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장애인시설을 정신치료 교화원, 불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등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처럼 50년대와 60년대는 외원기관과 종교자선조직에 의한 시설 설립과 수용보호가 이루어졌고, 70년대를 지나면서 외원단체들은 점차 철수하고 그 역할이 한국의 성직자들이나 자선가들에게 이양되었다. 당시에 장애인시설은 사회 안전을 위한 격리, 수용의 의미가 컸다. 이후 1971년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사회복지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가 종사자의 2/5를 차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지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장애인시설에 대한 국가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전문개정된 생활보호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능별로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전문화된 시설들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정상화이념이 장애인복지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하면서, 시설복지 수용 보호 성격을 대신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에 역점을 두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소개되었고, 기존의 대규모 거주시설 중심의 정책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책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도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국외의 주요 변화는 거주 공간과 활동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거주공간에서는 거주 장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면서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활동공간을 분리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장애인복지 이념인 정상화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복지선진국들은 거주공간과 일상생활공간의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사회내의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서 결국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을 함께 이용하는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 1) 장애유형별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일상생활지원서비스·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1) 목 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 및 유지 지원

#### (2) 기본방침

-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근거법령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 (4) 설치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 목적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 지원

### (2) 기본방침

- 공동생활가정은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 (3) 설치 기준

-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 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 되지 않도록 한다.

### 4) 체험홈

#### (1) 목 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 (2) 기본방침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험홈을 운영하여야 함.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1항 제3호,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 (4) 설치 기준

- 체험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로서 지역사회 내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체험홈은 집단적인 장애인거주시설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입지조건 및 입주자의 장애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등 부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과 절차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입소대상과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입소 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
- 입양기관 보호 장애 아동(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관할 복지 실시기관에 이용 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 아동)
- 실비 이용 대상자(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2) 입소 의뢰 절차

- 입소 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 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거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 적격성 여부 심사 실시

[표1] 장애인거주시설 유형과 기능

| 유형구분        | 대상 장애인                                                                              | 기능                                                                                      |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 장애 포함)<br>시각장애인(중복 장애 포함)<br>청각·언어장애인(중복 장애 포함)<br>지적·자폐성장래인(중복 장애 포함)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인영유아                                                                       | 6세 미만의 장애인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화에 필요한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 대상자의 동일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표2]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09-2019)

(단위: 건, %)

| 구분   | 총계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                  |        |             |        |                      |        |                   |        | 중증<br>장애인<br>거주<br>시설 |        | 장애<br>영유아<br>거주시설 |        | 단기<br>거주시설  |        | 공동생활<br>가정 |       |
|------|-------------|--------|-------------|--------|------------------|--------|-------------|--------|----------------------|--------|-------------------|--------|-----------------------|--------|-------------------|--------|-------------|--------|------------|-------|
|      |             |        | 소계          |        | 지체<br>뇌병변<br>장애인 |        | 시각<br>장애인   |        | 청각<br>·<br>언어<br>장애인 |        | 지적·<br>자폐성<br>장애인 |        |                       |        |                   |        |             |        |            |       |
|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시<br>설<br>수 | 인<br>원 |            |       |
| 2009 | 397         | 23,243 | 235         | 13,048 | 38               | 2,230  | 14          | 760    | 11                   | 519    | 172               | 9,539  | 153                   | 9,728  | 9                 | 467    | 91          | -      | 531        | -     |
| 2010 | 452         | 24,395 | 260         | 19,270 | 40               | 3,673  | 14          | 873    | 10                   | 386    | 196               | 14,338 | 182                   | 4,813  | 10                | 312    | 103         | -      | 589        | -     |
| 2011 | 490         | 25,345 | 289         | 14,038 | 39               | 2,102  | 15          | 787    | 9                    | 361    | 226               | 10,788 | 191                   | 10,798 | 10                | 509    | 119         | -      | 637        | -     |
| 2012 | 1348        | 30,640 | 342         | 14,926 | 40               | 2,057  | 16          | 786    | 8                    | 335    | 278               | 11,748 | 201                   | 11,006 | 10                | 510    | 128         | 1,438  | 667        | 2,760 |
| 2013 | 1397        | 31,152 | 356         | 15,069 | 39               | 1,978  | 16          | 770    | 8                    | 320    | 293               | 12,001 | 216                   | 11,412 | 9                 | 473    | 131         | 1,432  | 658        | 2,766 |
| 2014 | 1457        | 31,406 | 375         | 15,246 | 44               | 2,208  | 15          | 632    | 7                    | 270    | 309               | 12,136 | 223                   | 11,344 | 9                 | 466    | 137         | 1,495  | 713        | 2,855 |
| 2015 | 1484        | 31,222 | 383         | 14,920 | 39               | 1,668  | 16          | 628    | 7                    | 255    | 321               | 12,369 | 233                   | 11,314 | 10                | 541    | 141         | 1,548  | 717        | 2,899 |
| 2016 | 1505        | 30,980 | 381         | 14,817 | 40               | 1,766  | 17          | 711    | 7                    | 228    | 317               | 12,112 | 233                   | 11,192 | 9                 | 452    | 146         | 1,616  | 736        | 2,903 |
| 2017 | 1517        | 30,693 | 376         | 14,630 | 39               | 1,690  | 17          | 700    | 7                    | 232    | 313               | 12,008 | 233                   | 10,996 | 9                 | 429    | 147         | 1,699  | 752        | 2,939 |
| 2018 | 1527        | 30,152 | 376         | 14,168 | 33               | 1,418  | 16          | 662    | 7                    | 223    | 320               | 11,865 | 239                   | 10,995 | 9                 | 398    | 150         | 1,671  | 753        | 2,920 |
| 2019 | 1557        | 33,954 | 368         | 13,620 | 33               | 1,304  | 15          | 615    | 7                    | 216    | 313               | 11,485 | 251                   | 10,978 | 9                 | 382    | 159         | 1,733  | 770        | 2,949 |

주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표3] 시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수(2019)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2020)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검토

CCTV와 관련된 연구는 장애인복지분야 보다는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수술실과 관계되어 논의되고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재·신수진(2021) 서울 인천 소재 노인복지시설 9군데를 대상으로 하여 CCTV 설치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하여 보호자가 시설 종사자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복지시설 CCTV의 필요성과 긍정적 기능,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CCTV 설치 관련 법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CCTV가 노인학대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점을 이해하고 추후 지능형 CCTV의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진·김희성(2018)은 케어인력과 노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CCTV 윤리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TV 설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 시설관리 규정에 명시할 것, 둘째,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보호 교육 강화, 학대행위자(기관) 처벌강화, 노인이용자 대비 종사자 비율을 상향조정할 것, 셋째, 시설관리자가 시설종사자-노인(가족) 간의 신뢰 형성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것, 넷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운영규정 마련과 설치에 대한 합의절차, 관리책임자 지정, 정보열람과 관리지침, 보관기간, 기능보강비용 및 기기 유지관리 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용필·이호용(2017)은 장기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프로그램실 등)에 설치 검토가 필요하며, CCTV 설치 시, 입소노인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시설의 반대, 설치 및 운영비용, CCTV 열

람권 및 열람범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여 있으므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진·조문기(2020)는 노인복지시설의 CCTV 설치 제도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으며,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인력에게 CCTV는 노동 감시에 따른 활동제약이나 사기저하라는 부작용과 함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 CCTV 자료의 접근권 및 활용범위, 설치 및 관리비용, 비밀카메라와 공개 카메라설치에 따른 효과성,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김진, 2019;재인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CCTV에 대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현장경험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CCTV운영관리 방안과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보다 효과적이며 실천적인 노인학대예방 교육 방안과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지연(2017)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323명을 대상으로 CCTV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보육교사의 CCTV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가 CCTV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 동료교사 및 학부모와 관계가 원만한 교사일수록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CCTV 인식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원장 및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학부모관계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의 아동학, 유아교육(학)과와 영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 직장인으로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기술과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CCTV 전면설치가 모든 해결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정립한다면, 어린이집에서 CCTV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인식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차선희·이진숙(2016)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CCTV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영유아의 관찰을 통해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고, 부정적인 태도로는 교사와 아동 간에

거리감증대, 유대감의 약화, 부자연스러운 행동, 가식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현욱(2021)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의료인 등의 민감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CCTV의 설치 및 운영방법은 물론 법 위반시의 제재까지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촬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법제도적으로 강력히 차단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인의 과긴장, 소극진료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책임보험제도의 강화나 책임귀속 관련 법제의 정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2.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는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충분한 학술적 및 제도적 사전검토 없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정순원, 2017; 조재현, 2015). 그러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인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요한 자유권의 충돌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동의들이 필요해 보인다. 2016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생활시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입소 노인, 보호자, 시설종사자의 80% 이상이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한편 일부 시설종사자들은 설치 반대의 이유로 신뢰 관계의 저하 등을 우려했다.

한편, COVID-19로 인해 요양병원 등 노인 생활시설의 면회가 금지되는 동안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신고가 증가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유아 등 어린이

시설에는 모두 설치돼 있는 CCTV가 노인요양시설에는 설치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요양시설 입원 환자가 멍들고 뼈가 부러져도 보호자는 해당 시설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면회 제한도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기도 하다. 가족들은 수시로 부모를 방문해 정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CCTV 설치 권장과 운영 방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최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다시 재점화 되었으며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요양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수급자와 종사자가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학대 방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 기록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연 1회 이상 CCTV 설치 등을 조사하고 점검한다. 단, 요양시설 원장이 CCTV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감시하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목적을 ‘노인 안전’으로 한정했다.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어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자료를 보면 2011년 196건에 불과했던 생활 시설 노인 학대는 지난해 521건으로 10년간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대면 면회 금지 등 폐쇄성이 높아지면서 요양 시설 노인 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CCTV 설치를 통한 학대예방에 대한 실효성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사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

인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라는 중요한 자유권의 충돌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들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의 CCTV 관련 주요 내용이다.

제33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12.21] [[시행일 2023.6.22.]]

### 3.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슈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주된 입법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 보안이다. 이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동의 인권 확보와 학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변지훈, 2020)

2015년 9월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2015년 1월 발생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운영자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5657건이던 아동학대 사례가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27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였다(심지선, 2017)<sup>1)</sup>.

CCTV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직접적인 배경이 된 아동학대 사건은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K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보육교사의 여아 폭행 사건이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밝혀지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과 예방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교사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처음으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존재이며,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다(김정수, 2019). 이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을 일으키게 되자 국회

1) 아동학대는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064건, 2019년 30,045건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인다. (국가통계포털)

에서는 2월 임시회를 열어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3표 차로 부결되었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점점 더 힘을 더하게 되어 결국 4월 30일 제332회 국회 임시회에서 재석 190인 중 184인의 찬성을 얻어 압도적으로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개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 이들의 인성함양 과목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하도록 하였다.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관련 내용만 제시).

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5조의4, 제44조제2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36조).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제15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2항).

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도록 함(제15조의5제3항 및 제4항).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계자와 관련된 영상이 적절하게 운영 및 처리되도록 하였다.

###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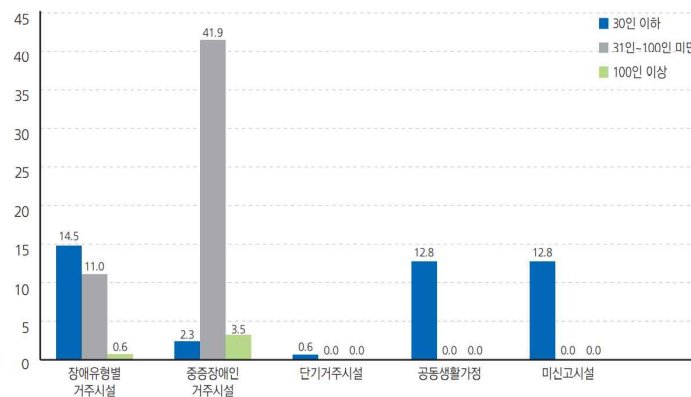
####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다수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형태의 장애인거주시설(56.2%, 150건)과 미신고시설(8.2%, 22건)에서 발생했다. 2020년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미신고시설 포함)은 총 47개 시설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47.7%(8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26.2%(45건), 공동생활가정과 미신고시설이 각각 12.8%(22건), 단기거주시설이 0.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로 보면 31인~100인 미만 시설이 52.9%(91건)로 가장 많았고, 30인 이하 시설 43.0%(74건), 100인 이상 시설 4.1%(7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 장애인학대 발생 역시 31인~100인 미만 시설(91건)이 가장 많았다.

[표4]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 구분            |       | 30인 이하 |      | 31~100인 미만 |      | 100인 이상 |     | 계   |       |
|---------------|-------|--------|------|------------|------|---------|-----|-----|-------|
| 장애유형별<br>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 -      | -    | 1          | 0.6  | -       | -   | 1   | 0.6   |
|               | 시각장애인 | -      | -    | 6          | 3.5  | -       | -   | 6   | 3.5   |
|               | 청각장애인 | -      | -    | 1          | 0.6  | -       | -   | 1   | 0.6   |
|               | 지적장애인 | 25     | 14.5 | 11         | 6.4  | 1       | 0.6 | 37  | 21.5  |
|               | 소계    | 25     | 14.5 | 19         | 11.0 | 1       | 0.6 | 45  | 26.2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4      | 2.3  | 72         | 41.9 | 6       | 3.5 | 82  | 47.7  |
| 단기거주시설        |       | 1      | 0.6  | -          | -    | -       | -   | 1   | 0.6   |
| 공동생활가정        |       | 22     | 12.8 | -          | -    | -       | -   | 22  | 12.8  |
| 계             |       | 52     | 30.2 | 91         | 52.9 | 7       | 4.1 | 150 | 87.2  |
| 미신고시설         |       | 22     | 12.8 | -          | -    | -       | -   | 22  | 12.8  |
| 총계            |       | 74     | 43.0 | 91         | 52.9 | 7       | 4.1 | 172 | 100.0 |



자료 : 2020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직영 및 위탁)와 민간(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으로 구분된다. 2020년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민간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이 84.0%(126건)로 가장 많으며, 개인 13.3%(20건), 기타법인 2.7%(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 구분            |       | 사회복지법인 |      | 기타법인 |     | 개인 |      | 계   |       |
|---------------|-------|--------|------|------|-----|----|------|-----|-------|
| 장애유형별<br>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 1      | 0.7  | -    | -   | -  | -    | 1   | 0.7   |
|               | 시각장애인 | 6      | 4.0  | -    | -   | -  | -    | 6   | 4.0   |
|               | 청각장애인 | 1      | 0.7  | -    | -   | -  | -    | 1   | 0.7   |
|               | 지적장애인 | 30     | 20.0 | 1    | 0.7 | 6  | 4.0  | 37  | 24.7  |
|               | 소계    | 38     | 25.3 | 1    | 0.7 | 6  | 4.0  | 45  | 30.0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80     | 53.3 | 2    | 1.3 | -  | -    | 82  | 54.7  |
| 단기거주시설        |       | -      | -    | 1    | 0.7 | -  | -    | 1   | 0.7   |
| 공동생활가정        |       | 8      | 2.3  | -    | -   | 14 | 9.3  | 22  | 14.7  |
| 총계            |       | 126    | 84.0 | 4    | 2.7 | 20 | 13.3 | 150 | 100.0 |

자료: 2020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50건이다. 이 중 학대피해 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255건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방임-경제적 착취-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장애인학대 유형(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정서적 학대-방임-성적 학대-유기 순)과 비교하면 2020년에는 정서적 학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신체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41.3%(2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6%(13건) 등의 순이었으며, 정서적 학대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75.3%(67건),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6.9%(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37.5%(3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거주시설 각각 25.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미신고시설이 51.4%(1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생활가정 27.0%(10건)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74.1%(43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적장애인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각각 8.6%(5건) 등의 순이었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많이 발생했고, 정서적 학대,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 구분                    |       | 신체적학대 |       | 정서적학대 |       | 성적학대 |       | 경제적착취 |       | 방임 |       | 계   |       |
|-----------------------|-------|-------|-------|-------|-------|------|-------|-------|-------|----|-------|-----|-------|
| 장애<br>유형별<br>거주<br>시설 | 지체장애인 | -     | -     | -     | -     | -    | -     | -     | -     | 1  | 1.7   | 1   | 0.4   |
|                       | 시각장애인 | 4     | 6.3   | 3     | 3.4   | 2    | 25.0  | -     | -     | -  | -     | 9   | 3.5   |
|                       | 청각장애인 | 1     | 1.6   | -     | -     | -    | -     | -     | -     | -  | -     | 1   | 0.4   |
|                       | 지적장애인 | 26    | 41.3  | 15    | 16.9  | 3    | 37.5  | 5     | 13.5  | 5  | 8.6   | 54  | 21.2  |
|                       | 소계    |       |       |       |       |      |       |       |       |    |       |     |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 13    | 20.6  | 67    | 75.3  | 2    | 25.0  | 3     | 8.1   | 4  | 74.1  | 128 | 50.2  |
| 단기거주시설                |       | 1     | 1.6   | -     | -     | -    | -     | -     | -     | 1  | 1.7   | 2   | 0.8   |
| 공동생활가정                |       | 9     | 14.3  | 4     | 4.2   | 1    | 12.5  | 10    | 27.0  | 5  | 8.6   | 29  | 11.4  |
| 소계                    |       | 54    | 87.7  | 89    | 100.0 | 8    | 100.0 | 18    | 48.6  | 55 | 94.8  | 224 | 87.8  |
| 미신고시설                 |       | 9     | 14.3  | -     | -     | -    | -     | 19    | 51.4  | 3  | 5.2   | 31  | 12.2  |
| 총계                    |       | 63    | 100.0 | 89    | 100.0 | 8    | 100.0 | 37    | 100.0 | 58 | 100.0 | 255 | 100.0 |

자료: 2020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 4.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례

##### 1) 경기 남양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해온 김희선(46)씨 사례<sup>2)</sup>

"늘 저한테 문제가 있다면서 혼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여기서 죽을 바엔 나와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탈시설을 결심했어요."

23년의 시설 생활은 일상화된 폭력, 억압, 경제적 착취 등으로 점철됐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7시에 밥을 먹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 누워만 있는 생활이 반복됐다. 희선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 몫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이 보내는 용돈도 마찬가지였다. 시설 종사자들이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이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인권 침해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 "감히 이야기할 생각도 못했고, 이야기해도

2) <https://www.nocutnews.co.kr/news/5538387>, CBS노컷뉴스 2021.04.20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고 희선씨는 말했다.

## 2) 여주 라파엘의 집 학대 사건<sup>3)</sup>

2020.7.23. 11:21 피해자가 벽에 기댄 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짐볼을 피해자를 향해 약 14회 가랑 발로 차 피해자의 몸에 맞추어 폭행

2020.7.26. 20:04 피해자가 잠을 자기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약 9시간 51분 동안 방치

2020.8.17. 19:58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걷어차

여주라파엘의집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시설이 코호트격리조치된 상황에서 직원 18명에 의해 8명의 중증장애인이 집단적인 학대를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코호트 격리조치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학대에 가담했으며, 구속수사를 받던 2명의 가해자가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 3) 강화도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sup>4)</sup>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종사자 B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께 A씨를 남성 휴게실로 끌고 들어가 수십차례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위 천공(구멍) 수술을 받았다.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는 위 천공이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정황을 신고 했다. 그 뒤 이 기관은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5월 30일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해당영상에서 A씨가 B씨에 의해 억지로 남성 휴게실에 끌려갔다가 나온 뒤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3) '장애인거주시설 발생 학대사건 엄중 처벌하라'에이블 뉴스. 2021.08.20

4) '학대해도 말 못한 강화도 무연고 중증장애인' 인천투데이. 2021.10.06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담당자가 면담에서 A씨에게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묻자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배가 아프다. 발로 밟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6월 21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2019년부터 발생한 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원인불상 상해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 4)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 학대사건<sup>5)</sup>

2014년 11월 - 장애인(거주인)에 대한 인권 침해(제압복, 귀잡아당김, 끈으로 묶는 행위, 폭행) : 시설장 교체

2015년 3월 - 비지정후원금·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시설에서 수당신설(증액) 지급 : 개선명령

2016년 11월 - 시설운영회 미운영 : 개선명령

2017년 12월 - 장애인(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신과약물 부적절 관리·처방 없는 임의 투약, 시건(잠금)장치가 설치된 방에 장애인(거주인) 감금) : 시설장 교체

2020년 5월 - 장애인(거주인)에 상습적인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 시설폐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루디아의 집'이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등으로 처음 문제가 된 건 2014년이였다. 당시 가해자들은 벌금 300만 원 선고받고, 루디아의 집은 1차 행정처분(시설장 교체)을 받았다. 시설장이 바뀌어도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지 3년만인 2017년, 이번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루디아의 집 종사자인 가해자들은 약식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시설은 2차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루디아의 집은 지난해(2020년) 5월, 폐쇄 명령을 받았다.

---

5) '시설에 있으면, 장애인들은 계속 맞는다' 오마이뉴스. 2021.04.20

## 제3장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에 대한 법과 제도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제2절 외국의 복지시설 CCTV 설치과연 법제도 분석

제3절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4절 소결

## 제3장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설치에 대한 법제도

###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세계 여러 나라가 어쩔 수 없이 갖는 딜레마이다. 빅데이터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유도하는 형태로 법제의 진행방향이 세워져 있고,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익명 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도 관련 데이터(그것이 비록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는 자료라 하더라도)의 양이 증가할수록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공개되어도 무관한 데이터일지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추론될 수 있으므로(Gruschka, N., Mavroeidis, V., Vishni, K. and Jensen, M. 2018) 정보주체의 노출 위험성이 증가한다.

2012년 Charles Duhigg는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미국의 3대 유통업체 ‘타깃(Target)’의 고객정보 분석 담당자의 설명과 당시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화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간추리면, 타깃이 15세 여고생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쿠폰북을 발송, 이를 본 딸의 아버지가 항의했으나 이후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타깃은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게스트(Guest) ID를 부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객 관련 데이터를 모두 연계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개인의 소비패턴과 성향을 파악, 맞춤형 광고전단과 쿠폰북을 발행했다. 여성 고객의 소비행태를 분석해 출산 및 육아용품과 같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소비가 예상되는 물품들까지 광고전단에 삽입해 소비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타깃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2%(약 28조원) 이상의 급격한 매출성장을 실현하였다(Charles Duhigg 2012).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깃이 2013년 11월 7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카드정

보 등)를 해킹 당하는(Larry Digna 2014)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사생활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타깃의 사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다. 현대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생산하고 누군가와 공유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사실상 필수가 되어버렸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져올 경제·산업적 가치는 타깃의 사례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때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sup>6)</sup>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정보는 유출 자체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만, 무엇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둘째, 데이터 보안이다. 데이터 보안은 비단 타깃과 같은 대형 소매점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은 이들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지도 모르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데이터 보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끊임없는 해킹 도전으로부터 정보보호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많은 비용(최신 보안기술과 장비 도입)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2.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사람들은 사생활 혹은 이름도 낯선 프라이버시가 자유, 민주, 정의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사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대화를 통해 개인주의가 충분히 개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6) 타깃은 이 사건으로 47개 주정부와 워싱턴D.C.에 합의금으로 1850만 달러(약 220억 원)를 지불하였고, 법률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총 2억 20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지출하였다. Rachel Abrams, “Target to Pay \$18.5 Million to 47 States in Security Breach Settlement”, The New York Times, May 23, 2017.

<<https://www.nytimes.com/2017/05/23/business/target-security-breach-settlement.html>> (2022.3.5. 최종방문).

게다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주장들은 이념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 아직 어떤 이론가도 그것이 목숨을 바칠 만큼 중요한 가치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이 그것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뿐 큰 사회적 반향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약이 늘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보상과 함께 제시된다는 점이다. 국가안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효율성, 국가경쟁력, 편의성 등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가치가 프라이버시의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된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선택은 항상 혼란스럽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입법이나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사회적 지지나 정치적 동력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시급히 국가적 입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갈수록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보험증, NEIS, 어린이집의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그에 따른 거액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였다.

특히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 나라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고령자보호시설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상술하였던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정보의 이용이 우선인지를 두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가운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 흐름은 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이용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이용을 허용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엄격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설치 문제에도 두 가지의 첨예한 이익이 대립한다. ‘장애인의 보호’와 ‘장애인의 사생활보호’이다.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설물관리와 사고방지 등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CCTV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며 기본권은 언제든지 가장 먼저 수호되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생활보호가 관리적 차원의 필요성 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CCTV의 설치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수 없다.

### 3.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 1)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되었다.

이 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집·이용·제공 등(=처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면,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원칙에 따라 CCTV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에는 동법 제10장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2)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법은 단순한 비밀보호법이 아니며, 이 법에서의 ‘개인정보’는 비밀보호법상의 ‘비밀’처럼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업무수행 목적의 수집·이용·제공'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 3)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두 10장 7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제2장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자율규제의 촉진시책 등을, 제3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기준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및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로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 통지제도를, 제5장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6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처리 등 특례에 관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를, 제7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절차·요령,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을, 제8장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소송대상, 전속관할, 대리인선임,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 효력 등을, 제9장에서는 보칙으로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 신고, 시정조치 등을, 제10장에서는 벌칙, 과태료 및 양벌규정 등을 두었고,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 4) 법적용 의무대상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함(제2조)으로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까지 확대하였다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단계별 보호기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6) 개인정보 암호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한다(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우선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한다. 그러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일정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년 4월)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

#### 8)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제33조), 만약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34조).

#### 9)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가진다(제35조-제37조).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규정되어 있다(제39조 및 제39조의2).

#### 10)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제40조부터 제57조까지).

## 제2절 외국의 복지시설 CCTV 설치관련 법제도분석

### 1.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제11장, 99개조, 전문 17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5월 28일에 시행되었다.

GDPR은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강행 규정(위반시 과징금 부과)이고, EU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GDPR은 개인정보책임자(DPO) 지정 등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이동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 개인정보의 정의

GDPR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 즉 정보주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를 말한다(제4조). 여기서 식별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점의 가능한 기술 수준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같은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제안이유서 23(a)).

#### 2) GDPR의 구성

[표7] GDPR의 구성

|             |                                                |
|-------------|------------------------------------------------|
| 1. 총칙       | 목적, 범위, 정의                                     |
| 2. 원칙       | 처리의 원칙, 처리의 적법성, 동의의 조건, 특별한 처리유형              |
| 3. 정보주체의 권리 | 투명성,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잊혀질 권리), 정보이동권, 자동처리(프로파일링) |

|             |                                                                                                     |
|-------------|-----------------------------------------------------------------------------------------------------|
| 4. 관리자·처리자  | 일반적 의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공동관리자, 대리인, 처리, 처리활동의 기록, 안전관리, 정보침해고지, 정보보호영향평가, 사정협의, 정보보호책임자의 배치, 행동규범, 인증 |
| 5. 개인정보이전   | 타당성결정, 적절한 보호조치, 구속력 있는 기업준칙, 특례, 국제협력                                                              |
| 6. 독립감독기관   | 독립성, 설치규칙, 임무, 권한                                                                                   |
| 7. 협력·일관성   | 감독기관의 협력, 상호지원, 일관성의 체제, 유럽정보보호평의회                                                                  |
| 8. 구제·책임·처벌 | 고충신청권, 사법구제권, 보상권, 과징금                                                                              |
| 9. 특별한 처리상황 | 표현의 자유, 공적 기관에 대한 접근, 국가 번호제도, 고용관리, 통계역사 연구                                                        |
| 10. 위임행위    | 위임, 절차                                                                                              |
| 11. 최종조항    | 구 EC지침 폐지, 전자프라이버시지침과의 관계, 시행                                                                       |

### 3) GDPR의 실체적 범위(제2조)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된다.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정의된다. 개인정보에는 IP주소, e-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도 포함된다. 처리 업무에는 특히 정보의 수집, 이용 및 개시(開示)가 포함된다.

GDPR은 개인정보의 특별 유형의 처리에 대한 추가적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별 유형에는 인종, 혹은 민족 출신, 정치적 의견, 신조 혹은 철학상의 신념, 노동조합원을 분명히 하는 개인정보, 자연인을 특별히 식별하는 목적의 유전·생체 정보를 분명히 하는 개인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자연인의 성생활이나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회원국은 유전·생체 정보나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해서 제한사항을 포함한 추가적 조건들을 도입할 수가 있다.

### 4) GDPR의 지리적 범위(제3조)

GDPR은 EU역내에 설치된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에게 적용된다.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EU에 있는 개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나 (지불이 요건으로 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혹은 EU역내에 있어서의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그 행동이 EU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EU역외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에게도 적용된다.

EU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보처리자와 수탁처리자이지만 그러나 그 활동이 GDPR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EU회원국에 설치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일정한 예외가 있다). 대리인은 정보보호감독기관(DPAs)의 연락처이며, 정보처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EU에 거주하는 개인이다(제27조).

#### 5)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제5조)

GDPR은 개인정보는“적법성·공평성 및 투명성(lawful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개인정보는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을 위해서 수집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목적 제한의 원칙).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는 반드시“정보최소화의 원칙”(the principle of data minimization)을 존중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처리되는 목적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한편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정보는 “정확”(accurate)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책임 원칙”(the accountability principle)도 그 자체가 기본원칙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보존제한(storage limitation), 완전성(또는 무결성, integrity) 및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그것이 처리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정보 주체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6) 처리의 적법성(제6조)

GDPR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는 다음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적법하게 될 것이다.

- 정보 주체가 정보처리에 동의했을 경우
- 정보 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정보처리가 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 정보처리가 정보 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불가결한 이익(the vital interests)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 정보처리가 공익상 수행되는 업무의 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 정보처리가 정보처리자 또는 제삼자에 의해 추구되는 적법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러한 이익 보다는, 특히 정보 주체가 아동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요구하는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과 자유가 우선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이 '특별한 범주의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의된다(제9조).

## 7) 동의(제4조, 제7조, 제8조)

GDPR은 동의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즉 EU 개인정보보호연구그룹(Article 29 Working Party; WP29)의 동의요건에 관한 견해를 반영한 GDPR에 따라, 동의는 자유롭게 행해져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고지되어야 하고, 진솔로써 또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써 정보처리에 대한 합의를 보이는, 정보주체의 희망에 대한 명백한 표시여야 한다. 동의를 위한 요청은, 명확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알기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다른 사항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는 그/그녀의 동의를 언제라도 쉽게 철회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권리는 미리 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이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를 위한 아동의 동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만약 16세 이하의 개인이 정보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한 경우, 동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문제된 아동의 부모의 책임

(parental responsibility; 한국법상‘친권’과 유사하다.)을 가진 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회원국은 이 연령을 13세 미만인 아닌 연령으로 낮추는 국내법을 도입할 수가 있다. 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하 사이로 연령을 낮출 수 있다.

#### 8) 개인의 권리(제12조-제23조)

GDPR은 개인의 권리를 유지하고, 종종 강화하며,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 (정보, 접근, 정정, 이의제기, 삭제, 제한, 잊혀질 권리, 정보이동권).

가. ‘정보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information)는, 정보처리자가 개인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정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4조의 예외가 있다). 이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하며, 알기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고 쉬운 말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처리자는 쉽게 볼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정보처리의 개관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 된 아이콘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는, 특정한 상황에서 리스트화 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elisting)와 정보를 삭제시킬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 삭제권(right to erasure)으로도 언급된다. 개인은 특정한 상황에서 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더 이상 그 정보가 필요 없을 경우나 개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다. ‘처리 제한권’(the 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은, 예를 들어, 중간 기간 동안 정보주체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정보처리자가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또는 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위해 더 이상 개인정보가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 소송의 성립을 위해 정보주체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한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된다.

라. ‘정보이동권’(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은, 그/그녀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계에서 읽어들이 수 있는 형식으로 받고, 방해받지 않고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그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정보처리가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 그리고 정보처리가 자동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 개인이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만 적용된다. 이 새로운 정보이동권의 행사는 삭제권이나 접근권의 행사를 침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GDPR 제23조에 따라 이 권리들의 행사에는, 민주적 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전, 방위, 또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의한 제한이 있다.

#### 9) 정보처리자의 책임(제5조, 제25조, 제30조, 제35조-제43조)

책임 원리(accountability,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자(즉,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정의하는 주체)는 GDPR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처리자는 정보보호정책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어떤 조치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조치가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정보처리자는 처리의 성질, 범위, 문맥 및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GDPR은 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을 입증하는 것을 돕는 완전한 일련의 툴을 제공하며, 그 일부는 강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보호책임자(DPO)의 창설, 정보보호영향평가(DPIA)의 수행,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과 개인정보보호 기본설정(Privacy by Default) 원칙의 존중은 강제적이다. 정보처리자는 책임원리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행동강령(the codes of conduct), 인증제도(certification mechanism)와 같은 다른 것들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도구에 관한 추가 정보에 관해서는, 제29조 작업반의 뉴스룸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WP29 가이드라인(the specific WP29 guidelines)을 참조할 수 있다.

## 10) 정보처리자의 의무(제28조)

GDPR은, 특히 안전조치와 국제적인 정보이전에 관해서, 정보처리자의 지위와 별개의 법적 지위를 수탁처리자에게 주면서 수탁처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다.

정보수탁처리자(data processor)는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가 보증하는 것만큼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정보처리가 GDPR의 요건에 합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정보처리자는 안전관리, 정보보호영향평가와 정보침해 고지의 문제에서 정보처리자를 지원해야 하고, 정보처리자의 정보처리 지시가 GDPR 또는 EU법이나 회원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자에 의한 처리는 정보처리자에 의해 수탁처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또는 다른 유효한 법률 행위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계약기간과 같은 다른 법률 행위 또는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정보 외에, GDPR은, 예를 들어, 수탁처리자가 정보처리자로부터의 서면 지시에 따라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수탁처리자는 정보처리자의 승인없이 다른 수탁처리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항을 열거한다.

## 11) 정보침해의 고지(제33조, 제34조)

GDPR에 따라 정보보호감독기관(DPA)에 대한 정보침해의 고지는, 이 정보침해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된다. 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리고 가능한 경우 침해를 한 후 72시간 이내에 DPA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침해가 자연인의 권리와 의무에 고도의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련된 정보주체에게도 고지되어야 한다.

수탁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자에게 정보침해를 고지해야 한다.

## 12) 국제적 이전(제44조-제49조)

GDPR에 따라 개인정보는, EU역내에서 주어진 보호수준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의미하는 정보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하는 EU역외의 제3국 또는 국제기관에 이전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타당성(adequacy)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 또는 국제기관으로의 개인정보의 이전은,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 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표준정보보호 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구속력 있는 기업준칙(binding corporate rules), 그리고 승인된 행동강령이나 인증 등의 새로운 도구들과 같은 많은 이용 가능한 도구들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타당성 결정이 없고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 이전에 수반하는 위험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후 제안된 이전에 대해 개인이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경우나, 또는 설득력 있고 적법한 이익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의 한정된 상황에만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다른 제3국으로의 재이전에도 이러한 요건이 적용된다.

## 13) 감독, 협력, 구제(제50조, 제83조)

일반적으로, GDPR은 독립성의 요건과 정보보호감독기관(DPA)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문권, 조사권 및 시정권을 이용할 수 있다.

GDPR은 EU에서 향후 볼 수 있게 되는 과징금에 대한 접근방식과 수준을 매우 강화하고, 이를 조화시킨다.

정보보호기관(DPA)은 심각한 GDPR 규정 위반 시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일반적인 GDPR 규정 위반 시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1천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GDPR은 EU역내에서 DPA에 대한 집단소송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수준에서의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법원에서 유사한 절차

를 예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 2. 영국

영국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8; DPA. 이후 2016년 전면 개정됨)은 EU GDPR과 함께 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날인 2018년 5월 25일에 발효되었다.

### 1) 영국 데이터 보호법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DPA)은 영국에서 개인 데이터의 사용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영국 국내법이다. 이 의회법은 1988년에 통과되었는데, 조직이나 정부 기관이 개인 또는 고객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이 법에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인 ICO에서는 Brexit 이전에 EU의 GDPR 성립에 많이 관여하였고, 대부분의 GDPR 규정이 영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rexit 이후에 영국은 New GDPR법안을 가결하여 GDPR의 내용을 그대로 영국에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GDPR에서는 회원국에 입법을 유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영국 DPA 2018에 자세히 반영하였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에 통과되어 2018년 5월 25일에 GDPR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DPA는 EU의 GDPR에서 회원국에 유보한 내용에 관하여 그 요건을 영국 법률로 분류하였고, DPA에서는 GDPR에 추가 요건이나 면제를 추가하였다.

### 2) DPA의 원칙

DPA 2018에는 정부 및 기타 조직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담당자는 “데이터 보호 원칙”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둘째, 특정되고, 명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셋째,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넷째, 정확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 상태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다섯째, 필요 이상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여섯째, 불법 또는 승인되지 않은 처리, 접근, 손실, 파괴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적절한 보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었는지 여부 등.

### 3) DPA의 중요 내용

DPA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사용 방법에 대한 조직 및 영국 정부를 위한 지침 및 모범 사례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하는 것;  
둘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셋째, 정보보호기관인 ICO(영국의 정보보호위원회)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넷째, 규정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는 것 등이다.

또한 이 법은 정보주체의 민족적 배경,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 전과 등을 보다 민감한 정보로 규정하고, GDPR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DPA는 첫째, GDPR이 회원국에게 제23조의 조항에 따라 자국법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이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범죄 및 법적 절차, 기타 유형의 특수 데이터 범주와 같은 특정 시나리오 내에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DPA는, 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가 정보 보호 원칙 및 해당 데이터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준수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이러한 특별한 카테고리의 정보를 처리할 때 조직이 “적절한 정책 문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DPA는, 국가 안보나 국방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처리나 정보자유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비정형 매뉴얼 정보에 대해서는 GDPR의 적용을 면제한다.

넷째, 특정 시나리오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예외가 있다. 즉, 기업은 정보 주체의 접근(access) 요청(DSARS)을 거부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 처리에 대한 최소 동의 연령을 GDPR이 16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DPA는 유엔 아동권리조약이나 그 선택의정서들을 감안하여 13세로 낮추어 정하고 있다.

여섯째, DPA는 또한 ICO가 특정 시나리오 및/또는 산업 정보를 처리할 때 기업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행동요강(codes of practices)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반드시 영국의 DPA 2018과 EU의 GDPR을 같이 참조해야 한다.

### 3. 미국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 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은 EU의 GDPR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더욱 엄격하다. CCPA는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정보보호법(또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인데, 캘리포니아주 Civil Code 제104편 제3장(DIVISION 3. OBLIGATIONS) 제4절(PART 4. OBLIGATIONS ARISING FROM PARTICULAR TRANSACTIONS)의 규정들 속에 TITLE 1.81.5.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제1798.100조 ~ 제1798.199.100조]로 자리 잡고 있다. 완화되고 유연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GDPR의 엄격성을 도입하였다고 생각되는 CCPA는 향후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CCTV(미국과 영국에서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는 명칭보다는 Surveillance Camera, Surveillance Camera System, Security Camera System 등으로 통용된다.)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캘리포니아의 CCPA가 CCTV설치의 기준으로선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용어의 정의

###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어떤 정보가 특정인 또는 가구(家口, household)를 식별하거나, 관련되거나, 묘사하거나, 합리적으로 결부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그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s. 1798.140 (a)). 바이오식별 정보, 온라인 식별자,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 기존 정보로부터 유추된 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공공기록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 비식별화된 정보나 집합 소비자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家口)'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우리나라나 GDPR과 상이한 점이다.

### (2) 비식별정보, 가명처리

비식별정보는 특정정보가 특정 소비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하거나, 관련되거나, 묘사하거나, 결부될 수 없거나 또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비식별정보라고 한다(s. 1798.140 (h)). 비식별화란 재식별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재식별을 방지하는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명처리란 보호조치가 취해진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소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게 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의미한다.

### (3) 사업자

주사무소 위치에 무관하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3가지 즉 연간 총 매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50,000만 달러 이상의 소비자나 가게, 장치 등의 개인정보를 상업목적으로 구매하거나 받거나 상업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공유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로 연간 매출의 50% 이상

을 창출하는 경우 중의 하나를 만족하면 사업자로서 규율 대상이 된다(s. 1798.140 (c)). 비영리기관이나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단 적용대상이면 온라인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 (4) 소비자

캘리포니아 거주 자연인을 의미한다(s. 1798.140 (g)). CCPA는 연방법이 아니고 주법이기 때문이다.

#### (5) 사업목적과 상업목적

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 목적을 사업목적과 상업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전자는 사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집시의 운영 목적 또는 통지된 목적을 위한 활용을 의미하고, 후자는 상품 등의 판매 등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활용을 의미한다(s. 1798.140 (d)(f)).

### 2)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의무

#### (1) 공개요구권 및 공개의무

소비자는 수집시 사업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와 항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업자는 수집시 소비자에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목적, 지난 12개월 동안 실제로 수집되거나 판매된 소비자 개인정보의 범주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수집했던 개인정보 범주를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일회성 거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삭제요구권 및 삭제의무

소비자는 사업자가 수집한 소비자정보에 대하여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로부터 거부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행된 계약에 관한 정보, 데이터보안 탐지 목적, 오류 수정 목적, 법적 의무 준수 목적, 연구 등의 목적, 호환된 범주에서의 내부적 사용 목적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3) 정보접근권 및 정보제공의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집한 소비자정보의 범주, 수집소스의 범주, 수집 또는 판매의 목적, 공유한 제3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로부터 정보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난 12개월 동안 판매하고 공개했던 개인정보 범주를 공개하고 12개월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일회성 거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판매거부권 및 판매중지의무

소비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언제라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opt-out). 소비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의 판매거부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소비자의 경우는 소비자가 판매 동의를 할 때만, 13세 미만 소비자의 경우는 보호자가 판매 동의를 할 때만 소비자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opt-in).

### (5) 평등대우의무

사업자는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격 등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개 등

사업자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위 소비자의 권리나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나 권리행사 방법을 공개하고, 관련된 개인정보 범주 등을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씩은 갱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통지요구권이나 정보접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45일 이내에 무료로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1번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3) 제재

#### (1) 공적 제재

CCPA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의 권한이며,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민사별로서 건당 최대 2,500달러를 부과하며, 특히 고의에 의한 위반의 경우는 최대 3배수인 7,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 (2) 개별적 소송

사업자는 합리적인 보안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암호화되지 않거나 민감한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소비자에게 위반당 100달러~750달러의 법정손해 및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인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면 위 법정손해배상책임은 면하나 실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면책과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진다.

## 4. 독일

독일은 1995년 발효된 EU의 정보보호지침(EU-DSRL)에 의거하여 2001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입법하였고, 2003년 개정을 통해 비디오감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법은 연방의 공공기관뿐 아니라 비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연방정보보호법은 i) 공공기관이 임무수행을 위해, ii)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iii) 구체적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정당한 이익의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보호받을 이익이 우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비디오 감시를 허용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감시 상황과 장소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제4조 제2항), 수집정보의 처리 및 이용은 그 정보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법익이

우월하지 않을 때만 인정된다(제4조 제3항).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은 국가 및 공공안전을 위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4조 제3항). 수집한 정보가 특정개인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 처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제4조 제4항). 당해 자료가 목적달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 또는 지속적인 저장이 당사자의 보호법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제4조 제5항).

정보보호법 역시 집회법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주법이 있는 경우에는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베를린주의 경우, 독자적인 정보보호법(Berliner Datenschutzgesetz, BlnDSG)을 갖고 있다. 동법 제31조b는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감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방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임무수행이나 주거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디오감시를 허용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연방정보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시 상황 및 장소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한 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그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법익이 우월하지 않을 때만 처리될 수 있다(동조 제3항 제1문).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은 베를린주 및 공공의 안전이나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동조 제4항 제2호). 수집한 자료가 상술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동조 제4항 제2문). 수집한 정보가 특정개인과 관련될 경우에는 그 처리 및 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관련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i)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더 부합하거나, ii) 관련 당사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녹화나 인계에 대해 지득한 경우, iii) 당사자에 대한 고지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경우, iv) 인적관련정보의 저장이나 인계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4항). 녹화자료가 그 목적달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 또는 지속적인 저장이 당사자의 보호법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동조 제5항).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엄격한 GDPR(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CCTV의 설치에 관해서는 GDPR 원칙을 국내법에서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

며, 일반적으로 GDPR의 원칙을 수용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 5. 일본

일본의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제사회 및 풍부한 국민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되었다.

일본에서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고시(告示)에 따른다. 하마다(浜田)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조례’(2005년 제정 하마다시 조례 제21호)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삿포로(札幌)시의 경우에는 “札幌市防犯カメラの設置及び運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하거나 고시를 발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의의

#### (1) 개인정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생년월일 그 외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 및 개인 식별 부호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그 외의 기술 등이란 문서, 도화 혹은 電子的 방식, 磁氣的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가 없는 방식인 電磁的 기록에 기재되거나 혹은 기록되거나 또는 음성, 동작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해 나타내진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 (2)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란 일종의 민감정보를 의미하며, “본인의 인종, 신조,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의 경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그밖에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그 밖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별히 배려를 요하는 것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기술(記述) 등이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③).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는 특별한 취급을 요구한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이 의무로서 요구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는데, 이 때 예외가 되는 경우는, ① 법령에 의거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④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⑤ 당해 요배려정보가 본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 및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경우 ⑥ 그밖에 전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 (3) 익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정보로서(법 제2조 제9항), 같은 조항 각 호에 열거된 개인정보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동 조항에 각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분류는, 첫째,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기술(記述)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일부의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規則性)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호), 둘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당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것 (당해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갖지 않는 방법에 의해 다른 기술 등으로 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호)이다.

익명가공정보는 첫째,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그 작성에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둘째, 익명가공정보를 생성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공방법에 대한 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또한 그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셋째, 익명가공정보가 작성된 후 그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하여 복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므로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사업자 스스로가 그 정보를 취급할 경우조차도 익명가공정보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고(법 제36조),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법 제37조).

나아가 익명가공정보를 생성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복원하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도 식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38조). 그리고 익명가공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를 위해 직원 및 위탁처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야 한다(법 제39조).

## 2) 개인정보의 활용

### (1) 이용목적의 완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 목적구속원칙의 적용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그 이용의 목적(이하 “이용목적”이라 한다)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15조). 이 경우에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정보주체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도 내’이고,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내지 공표할 의무를 진다(법 제18조 제3항).

## (2) 삭제 및 기록의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데이터를 정확하고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당해 개인데이터를 지체 없이 소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9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기록을 작성할 의무를 진다(법 제25조, 제26조). 즉,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데이터를 제공한 연월일, 당해 제3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그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5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3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당해 제3자에 의한 당해 개인데이터의 취득경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해 속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남기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26조).

## (3) 개인정보의 공개, 정정 등의 청구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공개, 정정 및 이용정지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정보주체에게 인정하고 이를 재판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의 공개, 정정 등을 신청하고 2주가 경과된 후 또는 사전에 그 신청이 거절된 경우가 아니면 재판상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4조).

#### (4) 처벌관련 사항

일본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을 취급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 하던 자가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의 행위주체에 개인정보취급자(임원, 대표자 또는 관리인)와 그 종업원 또는 이러한 자이었던 자를 포함시켰다(법 제83조). 이러한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또는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을 자신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도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절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1) 용어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의미한다(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

여기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①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거나 ② 위 ①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고,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표준지침 제2조 제9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표준지침 제2조제10호).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비공개장소에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고(표준지침 제2조제11호),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우(예: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다음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sup>7)</sup>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 등 비공개된 장소<sup>8)</sup>에서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비공개 장소에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 2) 기본원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7)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예로는, 「사적 및 사적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적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8) “비공개된 장소”로는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및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그리고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을 말한다. 장애인거주시설도 대부분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할 것이다.

- ③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④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⑤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⑥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 ⑧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⑨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 3) 주요 내용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즉,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sup>9)</sup>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에 설치·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즉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 제25조 제2항).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임의조작·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법 제25조 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도 없다(법 제25조 제5항).

### (4)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sup>10)</sup>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첫째,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한다.

10)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이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 제2항, 표준지침 제43조 제1항).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별로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 제2항·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25

조 제7항, 표준지침 제36조 제2항).

#### (6) 관리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표준지침 제37조 제1항),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37조제3항).

#### (7)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집목적 내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내 제공이 가능하다. 즉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법 제17조 제1항).

#### (8)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법 제18조 제1항, 표준지침 제40조). 다만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법 제18조제2항, 표준지침 제40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42조 제1항). 이 경우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9)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표준지침 제10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해당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이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42조 제2항). 이 경우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영상정보의 파기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한 위탁자는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4.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6조 제4항·제5항).

#### (11) 열람 등의 청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법 제35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제3항 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4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표준지침 제44조 제4항).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를 들 수

있다.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표준지침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44조 제5항 및 제45조). 이 경우 기록사항으로는,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이다. 이 때에도 표준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CCTV 영상 열람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법 제6조).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sup>11)</sup>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를 들면,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sup>12)</sup>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표준지침 제47조).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중 내부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된다(표준지침 제47조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3)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48조 제3항).

## 제4절 소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정보보호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EU의 GDPR이나 영국, 미국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지향점과 유사한 것이지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정보의 처리에 다소 관대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에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4월 현재(4차개정)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간되었다.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 ③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⑤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⑥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 ⑧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⑨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이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와 관련하여 대부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의 설치에 관한 법령은 1개 조문밖에 없으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법에 따라 Regulation은 각국의 입법절차를 거치는 문제와 관계없이 발효와 동시에 EU회원국에 적용된다.)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이용을 확대하고 있고, CCTV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나 시설에서 CCTV의 설치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표8] 외국개인정보보호법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                | GDPR                                        | 한국                     | 일본            | 미국                                                                                       |
|----------------|---------------------------------------------|------------------------|---------------|------------------------------------------------------------------------------------------|
| 개인정보처리원칙       | 제5조                                         | 제3조                    | 제7조           | 사업목적 및<br>상업목적의 활용                                                                       |
| 개인정보처리의<br>적법성 | 제6조                                         | 제15조,<br>제17조,<br>제18조 | 제17조,<br>제18조 |                                                                                          |
| 동의             | 제4조 제11항,<br>제7조                            | 제16조,<br>제22조          | 제16조          |                                                                                          |
| 아동개인정보처리       | 제8조                                         | 제22조                   |               | 「아동 온라인<br>프라이버시 보호법<br>규칙(Children's Online<br>Privacy Protection Act<br>Rule)」에서 따로 규정 |
| 민감정보           | 제9조                                         | 제23조                   | 제2조 제3항       |                                                                                          |
| 비고             | 독일 및 영국은<br>원칙적으로<br>위 조항을 그대로<br>자국법에 수용함. |                        |               | 단일화된 연방법전이<br>없이 단순 비교 불가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적으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EU의 GDPR을 중심으로 EU 외의 국가들과 비교가 가능한데, GDPR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원칙 중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살펴보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GDPR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적법성 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GDPR이 제시하고 있는 적법성의 원칙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법적 의무 준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보호, 공무수행 또는 공적 권한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추구’로, GDPR은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적법과 불법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수집의 적법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열람 청구권, 삭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정보 수집시에 최소정보 수집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GDPR의 최소처리원칙과 용어는 유사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에 대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즉, 공적 기록보존, 과학, 역사, 연구, 통계작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목적 외의 이용으로 보지 않는 ‘양립성 원칙’이 GDPR에는 명시돼 있지만 한국법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이러한 목적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CCTV와 관련하여 EU의 GDPR을 필두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처리원칙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법은 특별히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고(법 제2조 제7호, 령 제3조), 이 기기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1년 4월에 공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있어서도 CCTV의 설치·이용·관리에 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고, 예로 작성한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및 “CCTV 설치·운영 지침”도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그렇듯이, 영국에서도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Winterbourne View Hospital의 노인학대사건<sup>13)</sup>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노인복지시설 내 CCTV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찬반투표,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회 진정서 제출, 국민청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영국 정부는 케어홈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에 주목하고 있으나 CCTV 설치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CCTV의 설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시설이용자 및 가족 양쪽에 CCTV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영국의 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사생활보호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소개와 감시카메라가 비밀리에 설치된 경우와 공개적으로 설치된 경우, 감시카메라 외의 녹음기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수사

---

13) BBC NEWS, “Timeline: Winterbourne View abuse scandal”, 10 Dec. 2012.  
<<https://www.bbc.com/news/uk-england-bristol-20078999>> (2022.4.5. 최종방문).

권규율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A)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존재하므로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더욱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CCTV가 범죄예방과 인권보호에 효율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영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안감시카메라위원회’(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SCC<sup>14)</sup>)를 설치하고 있다.

서유럽의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각 기관의 ‘개호서비스정보(운영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이용자(노인) 및 가족에게 사전에 요양기관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서비스에 대한 질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호서비스정보공개제도는 ① 이용자 권리옹호에 대한 정보, ② 서비스질 확보 노력에 관한 일상생활 지원 정보, ③ 상담 불만족 등에 대응에 관한 정보, ④ 사업 운영관리 및 시설에 대한 정보, ⑤ 안전 위생관리에 대한 정보, ⑥ 종사자 및 직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된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내에서의 고령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옹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내의 CCTV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이용 선택권을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5)</sup>

세계의 모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적법성’기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정보주체에게 다양한 권

14) 2022년 2월에 “Biometrics and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의 한 부서가 되었다. 생체인식자료의 보관 및 사용위원회(생체인식위원회)와 보안감시카메라위원회는 2012년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the Freedoms Act 2012; PoFA)에 의해 창설된 법적 기구이다. 자유보호법은 사람의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의 이용에 관해 규율하고, CCTV의 사용을 규제하며, 부당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반테러권을 규정하며, 취약한 집단이나 전과와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정보의 자유와 데이터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나 비즈니스 기관은 항상 기본적인 데이터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검증하여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기관에게 민감한 데이터를 맡길 수 있도록 사용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따라서 영국의 CCTV나 교통감시카메라 등을 포함한 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 정보의 처리 방식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이 부과되고 명확한 절차가 수립되었다. CCTV 카메라에 대한 개방된 데이터 액세스는 투명성을 높여주지만 이 기능을 오남용하여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감시카메라위원회는 영국에서 보안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 준수를 감시하는 정부기관이다.

SCC Homepag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urveillance-camera-commissioner>> (2022.4.5. 최종방문).

15) 이상의 영국과 일본 제도에 관한 개관으로는, 김진/조문기, “노인복지시설 CCTV(전자감시체계) 설치 제도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75(2020.7) 참조.

리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 개인정보의 예외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설치문제는 장애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대립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있어 마치 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대립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기본적으로 시설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편으로 CCTV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거주자들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개인정보가 엄격한 요건 하에 처리되도록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제4장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실태조사 결과

제1절 방문조사 개요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장소 현황예시

제3절 소결

## 제 4장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실태조사 결과

### 제 1절 방문조사 개요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한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50건이 이르고 있으며, 또한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약 600건에 이른다. 이 중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며 시설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적장애인지원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가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시설 외의 일부 시설들을 방문 조사하여 CCTV 관련 현황 및 실태를 파악 후 장애인거주시설 CCTV 의무화 연구에 개선 적용점을 찾고자 한다. 방문 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그 밖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 조사하여 CCTV 설치 위치와 운영실태 비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방문 기관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9] 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실태조사표

| 지역  | 시설유형   | 시설명  | 입소자 |    | 종사자 |    |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충남  | 지적장애인  | M*** | 80  | 64 | 40  | 37 |
| 충남  | 중증장애인  | S*** | 30  | 29 | 27  | 25 |
| 경기도 | 중증장애인  | J*** | 31  | 31 | 31  | 31 |
| 서울  | 단기거주   | H*** | 10  | 10 | 11  | 11 |
| 경기도 | 공동생활가정 | H*** | 3   | 3  | 2   | 2  |
| 충남  | 주간보호시설 | H*** | 15  | 15 | 8   | 7  |

16) 에이블뉴스, 2021.10.18.일자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속” 기사 참고.

기관방문은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득하였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주인과의 접촉은 없는 환경 속에 시설 내외의 CCTV 관리시스템과 설치장소, 비용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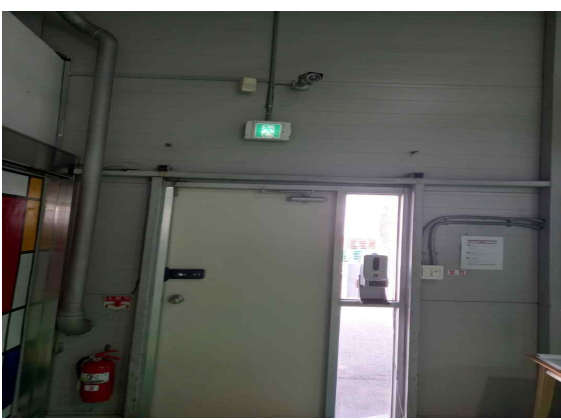
■ 충청남도 ○○거주시설

<그림 2> 충청남도 ○○ 거주시설

|                                                                                     |                                                                                      |
|-------------------------------------------------------------------------------------|--------------------------------------------------------------------------------------|
|    |    |
| CCTV 설치안내                                                                           | 현관 CCTV                                                                              |
|   |  |
| 실내 복도 CCTV                                                                          | 실내 복도 CCTV                                                                           |
|  |  |
| 주 출입구 CCTV                                                                          | 건물 외부 CCT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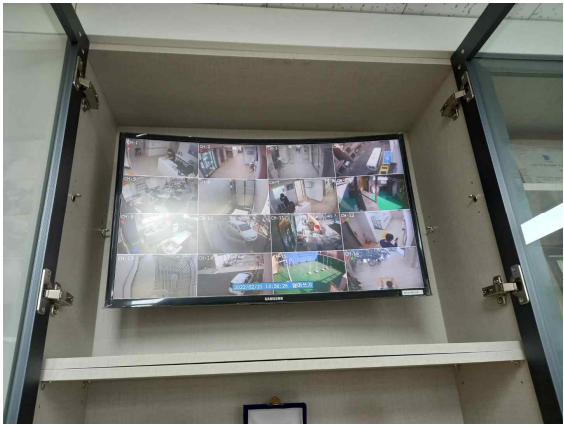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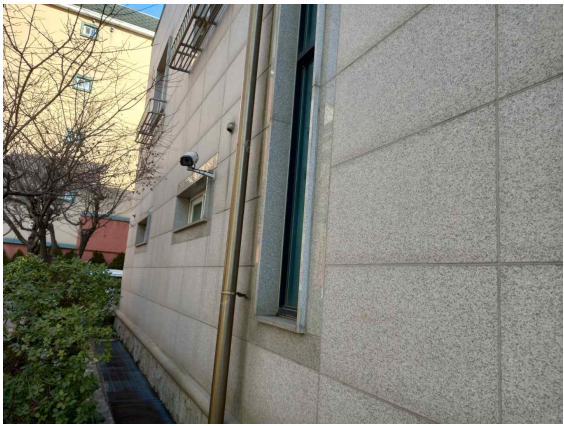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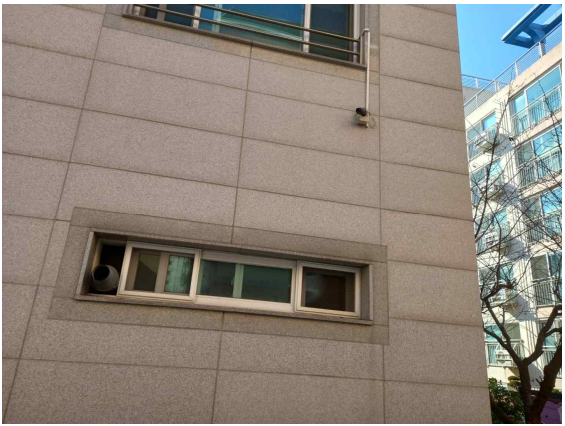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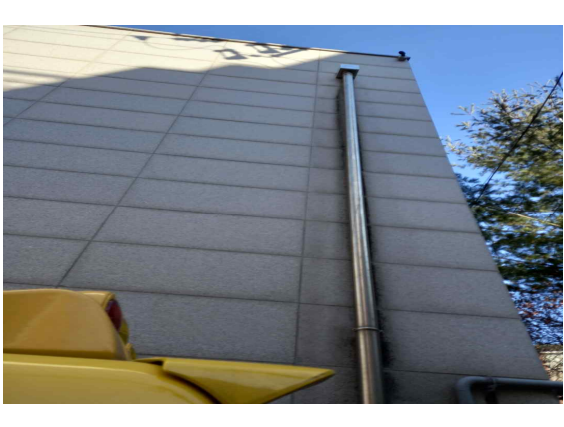
■ 충청남도 ○○ 보호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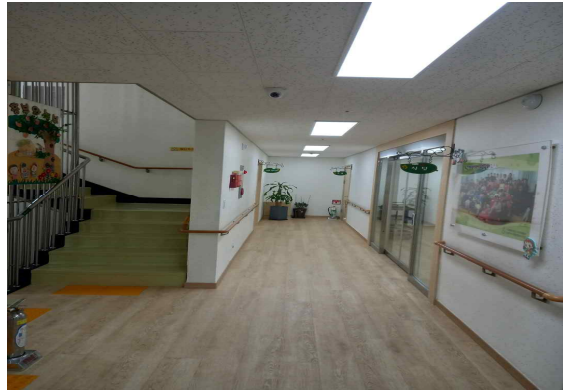
<그림 3> 충청남도 ○○ 보호작업장

|                                                                                     |                                                                                      |
|-------------------------------------------------------------------------------------|--------------------------------------------------------------------------------------|
|    |    |
| <p>건물 외부</p>                                                                        | <p>CCTV 관제</p>                                                                       |
|   |   |
| <p>건물 외부 CCTV</p>                                                                   | <p>주 출입구 CCTV</p>                                                                    |
|  |  |
| <p>실내 CCTV</p>                                                                      | <p>실내 CCTV</p>                                                                       |

■ 경기도 ○○ 거주시설

<그림 4> 경기도 ○○ 거주시설

|                                                                                     |                                                                                      |
|-------------------------------------------------------------------------------------|--------------------------------------------------------------------------------------|
|    |    |
| CCTV 관재함                                                                            | 주 출입구 CCTV                                                                           |
|   |   |
| 외부 CCTV                                                                             | 외부 CCTV                                                                              |
|  |  |
| 외부 CCTV                                                                             | 옥상 실외 CCTV                                                                           |



실내 CCTV



실내 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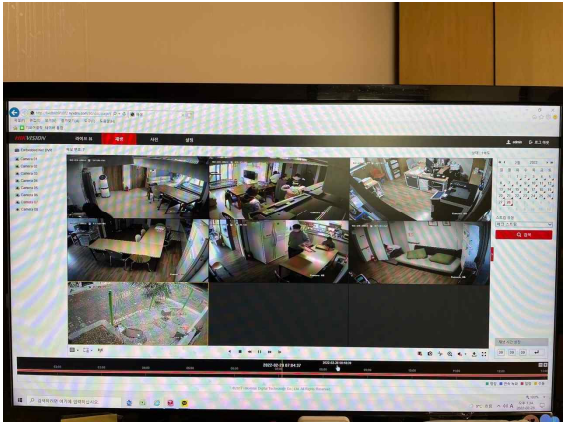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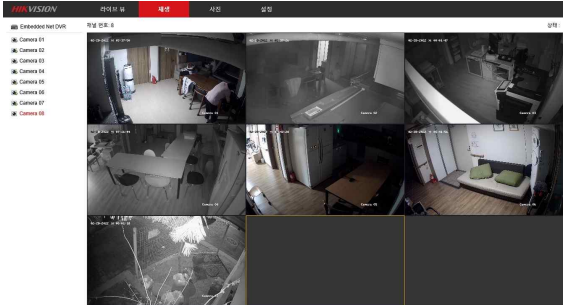
실내 CCTV



실내 CCTV

■ 서울 ○○구 단기거주시설

<그림 5> 서울 ○○구 단기거주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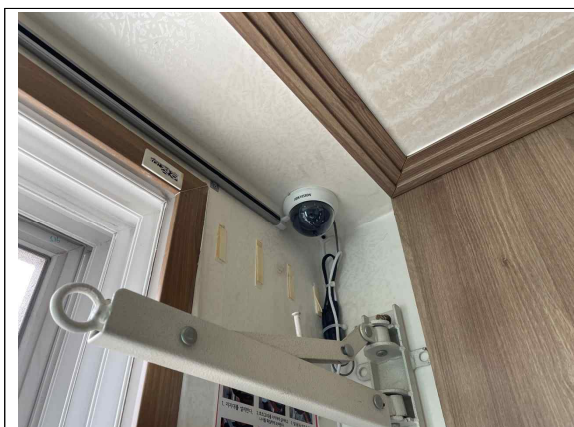
|                                                                                                    |                                                                                                     |
|----------------------------------------------------------------------------------------------------|-----------------------------------------------------------------------------------------------------|
|  <p>CCTV 설치안내</p> |  <p>CCTV 관제</p>   |
|  <p>CCTV 관제</p> |  <p>주차장 CCTV</p> |
|  <p>건물 외부</p>   |  <p>건물 외부</p>   |



실내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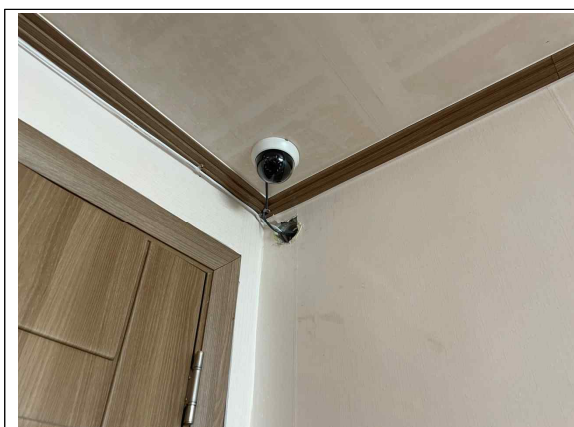
실내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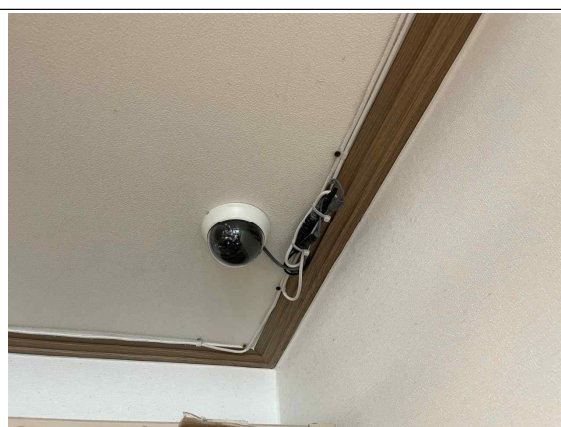
실내 내부



실내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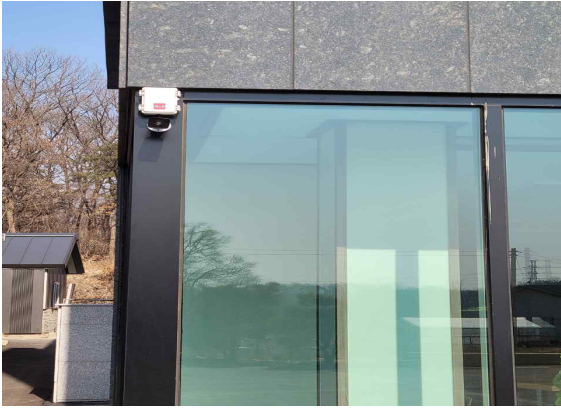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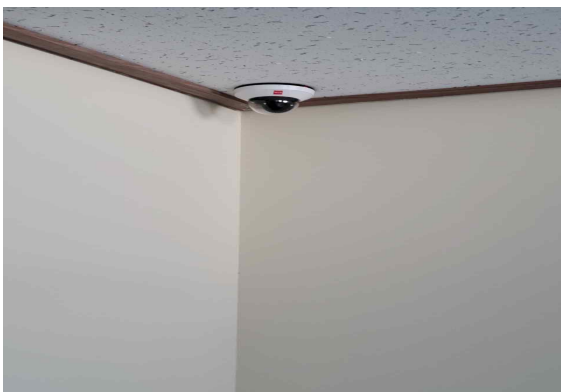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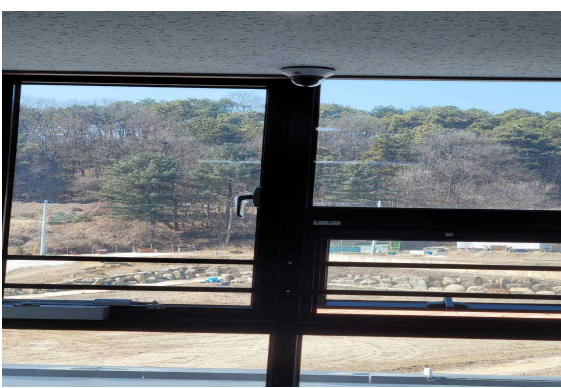
실내 내부



실내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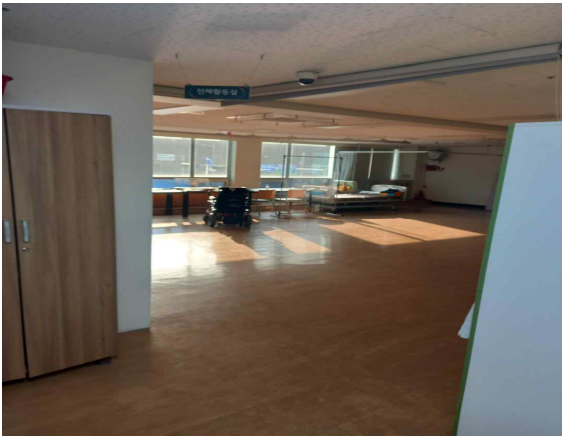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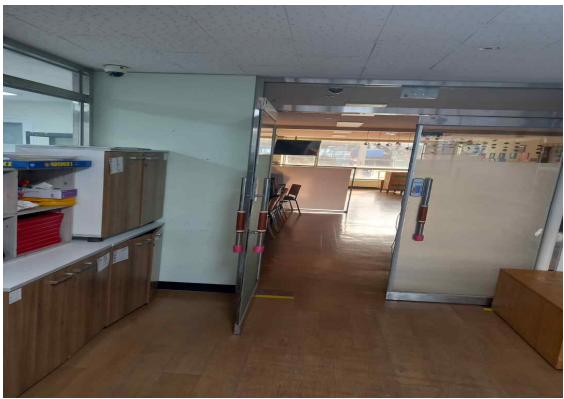
■충북 ○○ 노인요양시설

<그림 6> 충북 ○○ 노인요양시설

|                                                                                                  |                                                                                                   |
|--------------------------------------------------------------------------------------------------|---------------------------------------------------------------------------------------------------|
|  <p>CCTV 관재</p> |  <p>건물 외부</p>   |
|  <p>실내 내부</p>  |  <p>실내 내부</p>  |
|  <p>실내 내부</p> |  <p>실내 내부</p> |

■ C ○○ 주간보호센터

<그림 7> C ○○ 주간보호센터

|                                                                                     |                                                                                      |
|-------------------------------------------------------------------------------------|--------------------------------------------------------------------------------------|
|    |    |
| CCTV 관재                                                                             | 건물 입구안내                                                                              |
|   |   |
| 실내 현관                                                                               | 실내 내부                                                                                |
|  |  |
| 실내 내부                                                                               | 실내 내부                                                                                |

■ D ○○ 공동생활가정

<그림 8> D ○○ 공동생활가정



## 제2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장소 현황 예시

[표10]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장소

| 시설명       | 시설내 설치위치 |         | 운영실태 |    |            |          |               | 비고 |
|-----------|----------|---------|------|----|------------|----------|---------------|----|
|           |          |         | 화소수  | 각도 | 소리<br>녹취여부 | 저장<br>기간 | 모니터링<br>장소    |    |
| 충남<br>00원 | 외<br>부   | 정문      | 52만  | 90 | ×          | 3개월      | CCTV관리<br>사무실 | 1  |
|           |          | 후문      | 〃    | 〃  | 〃          | 〃        | 〃             | 1  |
|           |          | 이동통로 6곳 | 〃    | 〃  | 〃          | 〃        | 〃             | 6  |
|           |          | 주차장 2곳  | 〃    | 〃  | 〃          | 〃        | 〃             | 2  |
|           |          | 기타      | 〃    | 〃  | 〃          | 〃        | 〃             | 2  |
|           | 내<br>부   | 본관      | 〃    | 〃  | 〃          | 〃        | 〃             | 3  |
|           |          | 남자생활관   | 〃    | 〃  | 〃          | 〃        | 〃             | 5  |
|           |          | 여자생활관   | 〃    | 〃  | 〃          | 〃        | 〃             | 7  |
|           |          | 공동생활관   | 〃    | 〃  | 〃          | 〃        | 〃             | 1  |
|           |          | 식당      | 〃    | 〃  | 〃          | 〃        | 〃             | 1  |
|           |          | 강당      | 〃    | 〃  | 〃          | 〃        | 〃             | 1  |
|           |          | 의무실     | 〃    | 〃  | 〃          | 〃        | 〃             | 1  |
|           |          | 계       |      |    |            |          |               |    |

| 구분       | 계  | 외부용(12곳) |    |          |     |        | 내부용(19곳) |           |           |           |        |        |     |
|----------|----|----------|----|----------|-----|--------|----------|-----------|-----------|-----------|--------|--------|-----|
|          |    | 정문       | 후문 | 이동<br>통로 | 주차장 | 기<br>타 | 본<br>관   | 남자<br>생활관 | 여자<br>생활관 | 공동<br>생활관 | 식<br>당 | 강<br>당 | 의무실 |
| 설치<br>개수 | 31 | 3        | 3  | 6        | 2   | 2      | 3        | 5         | 7         | 1         | 1      | 1      | 1   |

|       |          |     |        |             |     |
|-------|----------|-----|--------|-------------|-----|
| 신관 :  | 건물우측(동쪽) | 1EA | 남동사 :  | 서쪽 출구 방향    | 1EA |
| 생활관 : | 2층 출입로   | 1EA |        | 생활관2 쪽 방향   | 1EA |
| 본관 :  | 신관쪽 방향   | 1EA | 여동사 :  | 1층 입구       | 1EA |
|       | 정문쪽 방향   | 1EA |        | 2층 프로그램실 통로 | 1EA |
|       | 주차장 방향   | 1EA | 강당 :   | 식당 조리실      | 1EA |
|       | 식당입구쪽 방향 | 1EA | 저온창고 : | 주차장2 쪽으로    | 1EA |

<그림9> CCTV 이용료

| 구분                                             | 4채널                                                                                 | 8채널                                                                                 | 16채널                                                                                  |
|------------------------------------------------|-------------------------------------------------------------------------------------|-------------------------------------------------------------------------------------|---------------------------------------------------------------------------------------|
| 제품                                             |  |  |  |
| 녹화속도                                           | 4M@60FPS                                                                            | 4M@120Fps                                                                           | 4M@240Fps                                                                             |
| HDD                                            | HDD 1EA, 1TB 기본지원<br>(Max 10TB 확장가능)                                                | HDD 1EA, 2TB 기본지원<br>(Max 10TB 확장가능)                                                | HDD 2EA, 4TB 기본지원<br>(Max 10TB 확장가능)                                                  |
| ① 월 이용료                                        | 25,000원                                                                             | 35,000원                                                                             | 55,000원                                                                               |
| ②                                              |                                                                                     |                                                                                     |                                                                                       |
| AI 영상 케어 (유지보수)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 시큐리티 안심서비스 (보상 보험)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AI 영상 관제 (모니터링)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월 이용료                                          | (선택사항) 25,000원                                                                      | (선택사항) 35,000원                                                                      | (선택사항) 45,000원                                                                        |
| ③ 월인금액                                         | 10,000원                                                                             | 15,000원                                                                             | 25,000원                                                                               |
| ① + ② 서비스 결합 시<br>36개월간, 월 이용료                 | 50,000원 → 40,000원                                                                   | 70,000원 → 55,000원                                                                   | 100,000원 → 75,000원                                                                    |
| 새로운 카메라 추가 후<br>① + ② 서비스 결합 시<br>36개월간, 월 이용료 | (4채널 카메라) 65,000원                                                                   | (8채널 카메라) 103,000원                                                                  | (16채널 카메라) 166,000원                                                                   |

그림출처 [https://blog.naver.com/directwedding\\_\\_0709/221968983480](https://blog.naver.com/directwedding__0709/221968983480)

## 제3절 소결

### 1. 기관방문 결과

먼저,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휴식시간에 감시카메라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CCTV 설치 시 시설 종사자가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시설 종사자와 거주인에게 CCTV 설치 전, 거주인의 입소 시 사전동의, 시설 종사자 채용 시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 획득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 CCTV 기능의 양면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CCTV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방문 결과 종사자들의 장소별 CCTV 설치 적합성에 대해서는 ‘방범과 안전을 위한 실외 공용공간’, ‘공용출입구’, ‘공동프로그램 공간과 공용복도’, ‘욕상 및 복도’, ‘식당 및 조리실’ 등의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시설 내 차량 승하차 시 위험하므로 주차장에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가정 특성상 CCTV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있으며, 설치가 된 경우에는 현관입구와 베란다 등 출입을 확인하는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 양로시설의 경우 입소노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종사자와 거주인이 함께 하는 공간의 폐쇄성으로 치매노인의 돌봄과 안전상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이를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지역사회 내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이용시설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출입공간과 주요공간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용시설의 경우는 종사자와 보호자 모두 CCTV 설치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안전에 대한 장점을 부각하였다.

노인복지시설에 필수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김진, 2019)로 노인 참여자 전원(40명)은 시설 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

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학대 사건에 대한 경계심이 높으며, 특히 건물 외부에도 설치하여 실종 및 범죄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케어인력(32명)은 주차장, 복도, 계단, 프로그램실(강당) 등과 같이 공동이용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침실과 욕실, 화장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하는 등 판단을 유보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직원휴게실에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사생활 침해와 노동 감시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공간에 대한 의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집단(40명)은 모든 공간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반면 케어인력(32명)은 사적인 공간(화장실, 침실, 욕실, 직원휴게실)에는 CCTV설치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11> 노인복지시설의 CCTV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식 차이<sup>17)</sup>

| 구분          | 케어인력 집단                        | 노인 집단                                        |
|-------------|--------------------------------|----------------------------------------------|
| 효과성         | 미미한 예방효과<br>임시방편적 해결책          | 강력한 예방효과<br>경각심 및 경고기능                       |
| 기능(순기능/역기능) | 기계맹신/도구 의존성 확산<br>인권교육 소홀 우려   | 노인사고 예방에 효과적<br>사고기 법률적 증거자료                 |
|             | 자유권(기본권)침해<br>(노동)감시, 개인사생활 침해 | 안전사고 예방 조치<br>인권보호에 효과적                      |
|             | 사생활 침해 우려                      | 노인인권보호 최우선                                   |
| 설치절차        | 사전협의와 구성원 동의 필수                | 사전 설치 공지 및 협의                                |
| 비용부담        | 이용자, 시설, 정부, 공동부담              | 이용자, 시설, 정부 공동책임                             |
| 설치공간        | 특정공간 제외한 공동이용 공간 설치가능          | 모든 공간 설치                                     |
| 관리규정마련      | CCTV설치 의무화 및 관련법규 정비           | CCTV설치 의무화 및 구체적 실행규칙 제정                     |
| 노인학대예방 대안   | 정부주도의 외부감시 강화                  | 시설협회차원의 규율과 제재 강화                            |
|             | 수시점검(모니터링)                     | 불시 점검 강화                                     |
|             |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br>인력확충(근무환경 개선)  | 기관장의 직원교육 강화<br>노인의 직원교육 강화<br>인력확충(근무환경 개선) |

17) 김진(2019)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관리 방안연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IoT와 AI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돌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로 종사자의 희생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지속적인 대면 돌봄이 어려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화재나 사고 예방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거주인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과 거주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구조 119

⑤ 응급:119호출  
비상급:자원총결

③ 응급알림

⑥ 처리결과

시설담당자  
현장확인

④ 응급확인

무호흡

① 무호흡데이터

② 이동파괴

④ 낙상데이터

지원센터

낙상

장애인가주시설, 노인양로시설

- 100 -

① 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누구든지 디지털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함. 특히 시설의 장은 입소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에 대해 설명 후 관련 서류 징구필요

## ② 서비스 내용

- 안전생활 지원 : 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된 IoT 기반 센서들이 입소자의 활동량, 심박·호흡, 방 출입, 발열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재, 낙상, 감염병 등을 예방 및 긴급 대응하며 안전한 생활 지원  
※ (IoT 기반 센서) 호흡센서, 활동센서, 문열림센서, 응급호출벨, AI 스피커,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 응급지원 :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낙상, 무호흡, 심정지, 발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IoT 기반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설(사무국)의 모니터링 기기 및 종사자의 모바일로 데이터와 응급알람을 전송하여 119, 의료기관 등에 연계, 응급서비스 제공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취약 계층의 안전한 생활 지원
- 정서지원 : 초고속정보통신망(LTE) 또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AI스피커 등 최신기기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서지원 기능 제공  
※ (정서지원기능) 종사자, 자녀 등과 통화 및 말벗 기능,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그림11> IoT 센서 및 통신단말장치 설치(예시)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③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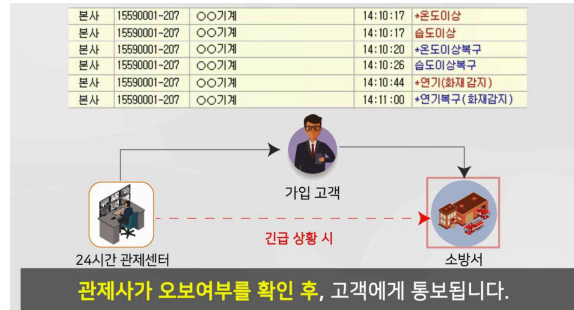
- 평시 :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서비스 정상제공 여부를 수시로 총괄 점검하고, IoT 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설치사업자에게 A/S를 요청하며, 사무국장(책임자),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도원은 사무국 내 모니터링기기 및 모바일웹을 통해 디지털돌봄 수행상황을 상시 확인
- 응급상황
  - 화재시 : 화재감지 센서에서 화재감지에 따른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119 소방서에 화재발생사실 통보 및 진화 요청
  - ※ 다만 담배연기, 음식조리 연기, 스프레이 등에 화재감지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119 연락과 동시에 알람이 발생한 시설 내 장소를 방문하여 실 화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위와 같은 단순 민감작동에 따른 알람인 경우 소방서에 출동취소 요청
  - 낙상 : 시설 내 침상, 계단 등에서 입소 노인의 낙상 상황이 발생하고 활동량감지기 등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응급

조치,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

- 무호흡, 실신 등 : 호흡·맥박감지 센서가 시설 내 노인의 무호흡, 실신 등을 감지하는 경우 위 낙상사례에 준하는 조치 실시
- 발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설 입·출입자, 입소 노인 및 종사자 대상으로 수시로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의심증상 있는 경우 시설 내 별도공간에 임시 격리 및 보건소에 상황 통보

한편, 통계청 정보에 따르면 도난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람이 방어하지 못하는 곳에서의 화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수 있다. 화재 발생시에 사람이 있는 경우 신고와 함께 화재에 대한 진화가 가능하지만, 아무도 없거나, 외진 곳에서의 화재는 미리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안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화재 이후 출동대원이 와도 불은 이미 종종 많이 번진 상태일 수 있다. 만일 카메라가 연기부터 감지해서 상황실로 전송하고, 전송받은 영상을 토대로 관제사가 분별하여 고객 통보 및 실시간으로 119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야간이나 무인의 경우에 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기능으로 실내온도 및 습도 유지 및 미세먼지를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및 모니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 <그림12> CCTV-연기감지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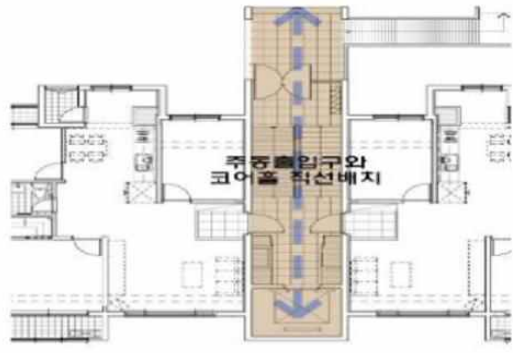


〈그림13〉 CCTV 영상



그림 출처 : <https://blog.naver.com/xavisnet/222366086710>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이동이 편리해야 함으로 주동 출입구 외부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승강기 내부의 CCTV 설치 뿐만 아니라 승강기 입구의 홀에 역시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주동 출입구와 내부 홀의 직선배치                                                                 | 승강기 투시형 출입문                                                                         |
|  |  |
| 승강기 홀에 설치된 CCTV                                                                    |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

<그림14> CCTV 설치예시

## 제5장 CCTV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종사자관련 FGI 분석결과

제2절 전문가 FGI 분석결과

제3절 장애인 당사자 FGI 분석결과

제4절 이해당사자 FGI 분석결과

제5절 요약소결

## 제5장 CCTV 관련 인식조사 결과

### 제1절 종사자 FGI 분석결과

#### 1. 종사자 FGI 참여자

초점토의에 참여할 종사자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통해 임의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2] 종사자 FGI 참여 대상자

| 참여자 | 장애인거주시설 형태   | 지역  | 직위   |
|-----|--------------|-----|------|
| 1   | 00지적장애인거주시설  | 아산시 | 원장   |
| 2   | 0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인천시 | 원장   |
| 3   | 000 장애인거주시설  | 서울시 | 사무국장 |
| 4   | 000 주간보호센터   | 천안시 | 센터장  |

#### 2. 연구절차

FGI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2022년 2월 15일 진행되었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인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FGI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2) CCTV 설치 운영 문제와 문제점들의 해결점은 무엇인가?
- 3) CCTV 설치의 긍정적 효과는 어떠한가?
- 4) CCTV가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 5)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에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 6) CCTV 설치장소, 보관기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7)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제언은 무엇인가?

### 3. 자료분석방법

각 FGI 후에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자와 참여자들 간의 담화 내용을 줄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 의무설치에 대한 운영 문제점과 해결점 그리고 설치의 긍정적 효과와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의무화 논의 가운데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핵심 주제를 탐색하였다. 특히 인터뷰 내용을 줄, 문장, 문단 단위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 단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내, 사례 간 지속적 비교를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 4. 종사자 FGI 분석 결과

[표13] 종사자 FGI 분석결과

|                         |                                    |                                                                                                          |
|-------------------------|------------------------------------|----------------------------------------------------------------------------------------------------------|
| 1) CCTV 의무<br>설치에 대한 생각 | (1) CCTV의 기능                       | 예방적 기능, 사후 조치기능,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                                                                           |
|                         | (2) 장애인복지시설 내<br>CCTV 의무적 설치<br>여부 | ① 긍정적 측면: 시설 내 장애인 사고시 기관의 안전성 확보 및 자기 점검 기회 제공<br>② 부정적 측면<br>가) 개인생활의 감시적 역할<br>나) 예방 차원보다 사후조치를 위한 기능 |
|                         | (3) 기관에 CCTV가<br>설치된 장소와 도입        | 가) 외부공간/자체적 설치(2012년)/회사 내외 출입 체크                                                                        |

|                                                        |                                                                                                                                                                            |                                                                                                                                                                                 |
|--------------------------------------------------------|----------------------------------------------------------------------------------------------------------------------------------------------------------------------------|---------------------------------------------------------------------------------------------------------------------------------------------------------------------------------|
|                                                        | 시기, 설치 사유                                                                                                                                                                  | 나) 외부 진입로, 공용공간/자체적 설치/보완<br>캡스 설치시 부가적 상품 일환으로 설치<br>다) 정문, 사무실 입구, 식당앞뒤, 건물 외벽,<br>건물 계단/자체적 설치/사고 예방<br>라) 공동공간 활동실, 복도, 현관입구/자체설<br>치(2012년)/안전과 범죄 예방                      |
| 2) 장애인복지시설<br>내 CCTV 의무적<br>설치 여부                      | (1) CCTV 설치 운영<br>과정에서 직면한<br>문제점<br>(설치비용, 유지/보수 등)                                                                                                                       | 가) 1,000만원이상/전문외부업체 활용하여<br>수리, 보수<br>나) 외부 공용 공간/경비업체/매월납입금<br>다) 외부 이동 공간/자체설치(2016년)/부모들<br>은 CCTV추가 설치 희망<br>라) 자체경비로 외부업체 설치/매월 176천원<br>유지 비용                             |
|                                                        | (2) 문제점 해결 방안                                                                                                                                                              | ▪ 개인차원: 사생활 노출에 대한 대응<br>▪ 기관 차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br>▪ 정부 차원<br>가) 설치비, 유지비 지원 확대<br>나) 설치 장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 비용,<br>정보, 외부 유출에 대한 방지책 구비<br>다) CCTV와 인권침해 상관성에 따른 구<br>조적 문제 해결책 제시 |
| 3) CCTV 설치<br>긍정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 종사자 차원 : 객관적 과정을 통한 추후<br>문제에서 보호<br>▪ 기관 차원 : 인권사고, 문제 예방<br>▪ 당사자 차원 : 개인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br>찾을 수 있음                                                                            |
| 4) CCTV가 업무<br>수행에 미친 영향                               | (1) 긍정적 측면                                                                                                                                                                 | 가) 사고시 변호 도구, 자기점검의 기회가 됨<br>나) 사건사고시 향후 예방을 위한 객관적 준<br>비가 됨                                                                                                                   |
|                                                        | (2) 부정적 측면                                                                                                                                                                 | 가) 형평성 문제 : 사고시 종사자 입장 보다<br>당사자 적극적 지원 입장<br>나) 시설운영적 측면 : 물리적 감시와 대화부<br>족으로 인한 운영진 종사자와의 이질감 발생<br>다) 종사자의 서비스의 질 저하와 소극적 태<br>도 우려                                          |
| 5) 장애인거주시설<br>내 CCTV 설치<br>의무화 논의에서<br>가장 고려해야 되는<br>것 | 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및 사적인 공간 보호 위한 대책 마련<br>나) 열람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규정에 의한 제재 필요<br>다) 구체적 설치 유지 보수비 지원 논의, 사건시 종사자에 대한 객관적<br>인식 접근<br>라) 직원과 장애인의 의견반영 및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선입견 없는<br>인식 필요 |                                                                                                                                                                                 |
| 6) 설치기준 마련<br>위한 장소,                                   | 가) 공동 공간(거실,활동실), 복도외벽, 위험물 보관창고 등 제한구역<br>/4개월                                                                                                                            |                                                                                                                                                                                 |

|                                        |                                                                                                                                                                            |
|----------------------------------------|----------------------------------------------------------------------------------------------------------------------------------------------------------------------------|
| 보관기간 대한<br>생각(CCTV 설치<br>의무화 관련)       | 나) 입구, 식당, 안전사고 발생처/3개월<br>다) 공동공간/1~2개월<br>라)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공간/ 1개월                                                                                                 |
| 7) 장애인거주시설<br>CCTV설치 의무화를<br>위해 필요한 제언 | 가) 사생활 보호 위한 제한적 설치와 비용 지원 및 연구대상 확장 필요<br>나) 탈시설화 등 거시적 정책 마련 위한 사회적 기반 시스템의 장기적<br>플랜 필요<br>다) 장애인들의 의견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당사자의 의사 반영<br>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교육 및 인력지원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

## 1)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생각

### (1) CCTV의 기능 : 예방적 기능, 사후 조치기능,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

CCTV 주요 기능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안전관리 부분에서 기본적인 역할, 기능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참여자1)

실제로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예방적인 차원보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후조치, 예를 들면 범죄면 범인을 검거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설치 자체가 일단 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힘든, 그런거는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참여자2)

CCTV 설치한 경우 범죄, 화재예방 안전 이런거 때문에 설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만약 CCTV가 없으면 차량 블랙박스까지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범죄를 추적해서 잡아내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CCTV나 이렇게 예방적인 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오히려 개인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더 강한게 아닌가.(참여자3)

### (2)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CCTV 의무적 설치 여부

① 긍정적 측면: 시설 내 장애인 사고시 기관의 안전성 확보 및 자기 점검 기회 제공

저희도 이전에 이용인분들이 좀 사고가 있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보  
호자께서 CCTV를 요청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걸 이제 같이 확인하면서 이게  
종사자나 기관의 잘못이 아닌 사고였음을 같이 확인하면서 이용인의 사고에  
대해서 추후 조치도 했었고 또 종사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종사자의 변호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중략)...CCTV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  
고 당사자들에게 지원할 때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  
각하면서 지원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반드시 감시가 아니라  
저희들을 자기점검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데..(참여자4)

## ② 부정적 측면

### 가) 개인생활의 감시적 역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반대 입장에서는 좀 감시자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다 ...(중략)...그래서 희망한다고 하면  
선택권 부분들은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1)

### 나) 예방 차원보다 사후조치를 위한 기능

저는 예방적인 차원보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후조치, 예를 들면  
범죄면 범인을 검거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설치 자체가 일단 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  
죄를 저지르기 힘든, 그런거는 부수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만약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내용 면에서는  
예방효과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참여자2)

## (3) 기관에 CCTV가 설치된 장소와 도입 시기, 설치 사유

### 가) 외부공간/자체적 설치(2012년)/회사 내외 출입 체크

현재 CCTV가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1996년도에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저희도 외부 경비업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추가 설치하게 된 부분이 있었구요. 도입할 당시에는 외부 방문객 중에서 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누가 들어온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저희도 이제 직원이 근무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산책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1)

나) 외부 진입로, 공용공간/자체 설치/캡스 설치시 부가상품으로 설치

요즘에는 세콤이나 캡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CTV 몇 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상품의 일환으로 설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자체도 기관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나 현관, 복도, 실질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딱히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없다고 하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게 CCTV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서 저는 강제하는 건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구요.. (참여자2)

다) 정문, 사무실 입구, 식당앞뒤, 건물 외벽, 건물 계단/자체적 설치/사고 예방

기존에 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문하고 사무실 입구, 그리고 식당 앞 공간하고 뒷공간 이렇게 2곳 해서 총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됐는지 왜 설치되었는지는 저도 제가 입사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고. 그 외 추가로 저희가 설치한 게 저희 사무실 입구 나가면 바로 건물 외벽이 있습니다. 거기 예전에 이제 건물 옆에 자립활동이라고 해서 거기서 자립을 준비하는 체험관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앞에서 거주인들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 앞에 CCTV 설치를 하나 추가로 했었구요. 또 하나는 건물 계단에 설치를 했는데... (참여자3)

라) 공동공간 활동실, 복도, 현관입구/자체설치(2012년)/안전과 범죄 예방

2012년 9월 3일에 개원했었는데요. 저희 첫 이용인이 10월달에 등원하셨는데 첫 이용인이 등원하기 전인 9월 18일 CCTV 설치를 다 했었구요. 그리고 현재 12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하고 있고 공동공간인 활동실, 그리고 상시인력배치가 어려운 복도라던가 현관입구 이런 쪽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설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종사자와 이용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덧붙이자면 범죄예방 효과는 다들 말씀해 주셨구요. (참여자4)

## 2) CCTV 설치 운영 문제와 문제점들의 해결점

### (1) CCTV 설치 운영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설치비용, 유지 및 보수 등)

가) 1,000만원 이상/전문외부업체 활용하여 수리, 보수

CCTV는 공교롭게도 전부 다 외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공간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구요. 그리고 건물 외부에서 이동경로 파악이라던지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부분 그리고 이제 외부 출입문을 확인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 분이나 직원분들의 불만은 나오지 않았구요. 도입 당시에 저희가 현재는 세콤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하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설치 비용만 그때 당시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관운영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초기 도입비용 부분, 유지보수도 기관에 사회복지사는 많지만 이런 부분에 전자통신기기를 관리하는 분들은 좀 적다 보니까 유지보수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1)

나) 외부 공용 공간/경비업체/매월납입금

딱히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5년 동안 느껴본 적이 없는거 같아요. 그 다음 그 이전에도 CCTV를 열람을 하거나 했던 적은 거의 없는거 같아요. 경비업체에서 와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그 정도 있었고. 한번 외부에서 열람요청 왔던 거는 저희들 주변에서 이제 무슨 도난사건이 있었나

박요. 경찰들이 와서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고...유지보수 비용 자체도 경비 업체에서 우리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내에서 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손을 데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여자2)

다) 외부 이동 공간/자체설치(2016년)/부모들은 CCTV추가 설치 희망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구요. 초기 4대 설치되어 있다고 한건 오래전에 설치한 거라 확인이 안됐고 이제 최근에 추가로 4개 한거는 저희가 법인 산하에 ◇◇◇이라는 시설이 같이 있었는데...예전에 18년도에 직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공익위원보장에서 확인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고소고발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요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보호자들이, CCTV 확인할 수 없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히려 보호자들이 CCTV 설치를 조금 더 희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 실제로 종사자들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었습니다. (참여자3)

라) 자체경비로 외부업체 설치/매월 176천원 유지비용

초기설치부터 유지보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구요. 현재 저희 12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지출과 관련된 부분일거 같구요. 저희가 월 176천원이 매월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CCTV 유지로만. 뭐 따로 서비스 받는 건 별도고. 월 고정비로만 176천원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이것들이 매월 나가야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세콤을 이용하고 있는데 세콤은 어플을 통해서 항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많은 사례는 아니고 예전에 보호자가 개인 핸드폰을 통해서 CCTV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이건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감시적 측면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4)

## (2) 문제점 해결 방안

### ■ 개인차원: 사생활 노출에 대한 대응

가장 큰 문제는 사생활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주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삶이 이루어지는 곳들인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내 생활공간을 녹취, 녹화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 제 집이라고 하면 현관까지는 공동현관 이런 데 처럼은 가능하겠지만 그 공간들은 저라면 허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생활 보호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요 (참여자1).

#### ■ 기관 차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입니다. 지금 녹화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처럼 가정용 CCTV 해킹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외부로 유출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되는데 저희 기관도 유출되지 말라는 방법이 없을거거든요.(참여자1)

#### ■ 정부 차원

##### 가) 설치비, 유지비 지원 확대

최근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되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제화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그것처럼 만약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하면은 범정부차원에서 설치비라던가 유지비라던가 이런거에 관련된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참여자4)

##### 나) 설치 장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 비용, 정보, 외부 유출에 대한 방지책 구비

설치 여건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왕 설치할거면 저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주간보호센터랑 저희는 차이가 좀 있을수는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최소한 그렇게 의무화 할거면 의무화하는데 따르는 비용이나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역효과가 많이 날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2)

다) CCTV와 인권침해 상관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책 제시

어쨌든 복지부에서도 CCTV를 의무화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그걸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야지 CCTV 설치 의무화 갖고 해결책을 내면 안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CCTV 설치 의무화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참여자3)

### 3) CCTV 설치 긍정적 효과

#### (1) 종사자 차원 : 객관적 과정을 통한 추후 문제에서 보호

종사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장애인들의 부정적인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사고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추후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서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건 사실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참여자1)

#### (2) 기관차원 : 인권사고, 문제 예방

기관차원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에게 인권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부정하지는 않겠고 (참여자1)

#### (3) 당사자 차원: 개인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음

당사자 차원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분이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우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보다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권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좀 부당한 서비스를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런 부분들도 해서 서로간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참여자4)

#### 4) CCTV가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 (1) 긍정적 측면

###### 가) 사고시 변호 도구, 자기점검의 기회가 됨

이용인 사고, 다른 사고 발생시 종사자와 기관을 이제 변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을거 같구요. (참여자4)

###### 나) 사건사고시 향후 예방을 위한 객관적 준비가 됨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향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 측면일거 같구요.(참여자1)

##### (2) 부정적 측면

###### 가) 형평성 문제 : 사고시 종사자 입장 보다 당사자 적극적 지원 입장

감시적인 효과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조금 안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4)

나) 시설운영적 측면 : 물리적 감시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운영진·종사자와의 이질감 발생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좋은 점이냐 뭐 운영진들이 감시를 안해도 알아서 감시를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관리부담에 대한 게 훨씬 더 적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물리적인 감시가 과연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구요. 그러다보니 직원에 대한 관리라던가, 관리라기보다는 직원들과 같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종사를,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과 운영진에 대한 거리라고 할까요 이질감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참여자3)

#### 다) 종사자의 서비스의 질 저하와 소극적 태도 우려

직원들 입장에서 위험소지를 감소시키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근무하게 될텐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한테는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방관자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장애인분들한테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1)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CCTV가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부담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지 자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계속 내가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구요.(참여자3)

### 5)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에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

#### 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및 사적인 공간 보호 위한 대책 마련

결국엔 장애인들의 사생활도 보호해줘야 하는 원칙이 있는거고. 반면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결국엔 CCTV로 관찰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직원과 장애인일텐데..(참여자1)

일단 사생활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설치장소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여자2)

개인정보보호 문제랑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권침해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생활실 내부 공간이거든요. (참여자3)

공동공간이 아니라 정말 민감할 수 있는 공간, 개인공간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해야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정말 많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참여자4)

나) 열람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규정에 의한 제재 필요

열람을 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제제를 해야 한다.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면 안되고 반드시 어떤 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요즘에는 특히나 많은 거 같은데 경비업체 같은 경우, 인근에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상시 볼 수 있는 이런 자체는 정말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2)

다) 설치 유지·보수비 지원 논의, 사건시 종사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접근

그리고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거주시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CCTV가 20대나 30대 정도는 필요. 만약 내부에 설치된다 고 하면 그정도 든다고 하고 월 30~40만원 정도가 들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그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상황이 발생했을 때...(중략)...어쨌든 종사자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 다기 보다는 맨 처음 왔을 때 넌 가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를 하는 기관들도 그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은 정말 가져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참여자4)

라) 직원과 장애인의 의견반영 및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선입견 없는 인식 필요

결국에는 CCTV 설치에 따른 관찰 대상이 되는 직원들과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하고. 그래야 장애인분들이 공동생활 속에서 누구는 허락할 수 있고 누구는 허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중략)...반대로 직원입장이라고 하면 직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위험한 사람으로 관찰대상으로 되는 부분들이 될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들인데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직원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노동권도 보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자1)

6)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장소, 보관기간 대한 생각(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가) 공동 공간(거실, 활동실), 복도외벽, 위험물 보관창고 등 제한구역/ 4개월

보관기준은 현재 4개월로 되어 있구요. 이거는 한분기 정도 1분기 4개월 정도 보자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공동공간이 저희기준으로 보면 활동실이 있을거 같고 거주시설이라면 거실이나 이런 부분. 복도 건물 외벽 이런 데가 있을거 같구요. 그리고 플러스로 다들 외부에 있긴 하겠지만 위험물 시설의 경우 가스탱크라던가 위험물 보관창고 등 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거에 대한 조금 우선설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의무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야 할 것 같고. 개인공간과 관련해서는 정말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4)

나) 입구, 식당, 안전사고 발생처/3개월

입구라던가 아니면 뭐 식당 정도. 그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정도는 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영상보관기간은 다들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는 하니까 3개월 정도의 보관기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은 드리지만 사실 CCTV 자체는 반대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참여자3)

#### 다) 공동공간/1-2개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뭐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공간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구요. 현재 이제 그렇게 되어있구요. 그래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금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중략)...거주공간 내 CCTV 설치하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관기간은 저희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사실 한달 아니면 두달인 거 같은데 크게 의미가 있을까(참여자2)

#### 라)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공간 / 1개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곳 외에는 기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구요.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한번 확인해봤는데 저희도 2개월 이상 녹화되고 있더라구요. 보관기간은 길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관기간이 길게 되면 여러 가지 유출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보관기간은 우려되지 않으면 30일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해킹 같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짧게 가져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1)

### 7)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제언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제언

##### 가) 사생활 보호 위한 제한적 설치와 비용 지원 및 연구대상 확장 필요

최대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특혜나 사생활에 대해서

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제한적인 설치가 되면 좋겠고 그 제한이 만약에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치하되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되면 좋겠고.. 장애인 거주시설만 볼게 아니라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반학교든 아니면 일반 사무실, 일반 회사. 정말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갑질이 성행하는 회사들이 아직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같은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거주시설만 자꾸 이렇게, 그런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구요. (참여자2)

#### 나) 탈시설화 등 거시적 정책 마련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가 너무 예산 적게 들고 관리하기 쉬운 방법을 택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탈시설화 정책에, 활동보조시간에, 활동지원시스템 개선에, 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라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3)

#### 다) 장애인들의 의견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당사자의 의사 반영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기도 하고 장애인들한테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게 존중해줘라 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그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느 하나는 열어줘야 시설도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CCTV도 그거에 연장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게 강하고 ..뭐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 장애인들의 의견이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 조금 더 위에 설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CCTV 설치하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권리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꼭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참여자1)

#### 라)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교육 및 인력지원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CCTV는 그래도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방어장치이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변화의 대상이 기관으로 보고 있고 종사자로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더불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어쨌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는 이야기를 할 때 인력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업무과정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인력지원이라던가 예산지원이라던가 이런 폭넓은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적인 것도 같이 고려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4)

## 5. 소결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관련 종사자들의 FGI’는 10개의 질문지를 통해 7개로 범주화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2), 중증장애인요양시설(1), 주간보호센터(1)의 장애인거주시설로 아산시, 인천시, 서울시, 천안시 소재의 시설장 및 사무국장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종사자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TV의 기능은 예방적, 사후적 기능과 더불어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더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CCTV 의무적 설치 여부에 있어서는 시설 내 장애인 사고시 기관의 안정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개인 생활의 감시적 역할과 예방 차원보다 사후 조치를 위한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적 측면으로 다루었다.

각 기관의 CCTV 설치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캡스 설치시 부가적 상품 일환으로 외부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중 설치 장소에는 정문, 사무실 입구, 식당 앞 뒤, 건물 외벽, 건물 계단, 외부 진입로, 활동실, 복도, 현관입구가 있었다.

그리고 CCTV 설치 운영 과정서 직면한 문제점으로 설치비용과 유지, 보수를 다루었는데 1,000만원 이상의 전문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수리, 보수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20~30여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유지하고 있었다. CCTV를 설

치, 유지하기까지 개인 차원에서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설치비와 유지비를 지원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설치 장소에 대한 신중한 검토, 비용, 정보, 외부 유출에 대한 방지책 구비와 복지부에서 CCTV와 인권침해 상관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길 요구하였다.

또한 CCTV 설치의 긍정적 효과로 종사자 차원에서 객관적 과정을 통한 추후 문제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인권사고, 문제 예방, 당사자 측면에서 개인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도출되었다.

CCTV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긍정적 측면은 사고시 변호 도구가 되고 자기점검의 기회가 되며 사건·사고시 향후 예방을 위한 객관적 준비가 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고시 종사자 입장 보다 당사자 적극적 지원 입장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고 시설 운영적 측면에서 물리적 감시에 의존한 운영진들의 관리부담의 자유가 환경을 변화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직원과 운영진과의 가치관이 상이한데서 오는 이질감 확대를 우려하였다. 더불어 사생활 침해 우려와 위험 소지 위주의 감시 역할이 커지므로 소극적 개입으로 인한 장애인 서비스 저하와 사생활보호를 위한 열람의 통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에서 고려점으로 공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설치비용 및 유지 보수비 지원에 대한 논의와 사건시 종사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장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사생활 보호와 철저한 규정에 의한 열람으로 인권 보장이 전제 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직원과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하는 직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선입견 없는 인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장소로는 입구, 식당, 안전사고 발생처, 공동공간이며, 영상보관기간은 적게는 1개월에서 4개월까지가 종사자들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필요한 종사자의 제언이다. 첫째, 이용인 보호하의 제한적인 설치와 비용 지원 및 장애인거주시설로

한정한 연구 수행의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일반 학교, 일반 사무실 등과 같은 맥락으로 다루길 강조하였다.

둘째, 복지부의 전환적 사고를 통해 탈시설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 플랜하의 사회적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이 적게 들고 관리하기 쉬운 방법보다는 좀 어렵고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탈시설 정책을 좀 더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에 수반되는 활동보조 시간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예방하는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나음을 피력하였다.

셋째, 시설에게 요구되는 보호 명목과 시설 책임성의 상충된 2가지 역할을 보완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권리로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넷째,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마련과 인권침해 관련하여 인력 지원의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종사자의 업무과정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등 인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제 2절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1. 전문가 FGI 참여자

초점토의에 참여할 전문가는 CCTV 설치와 관련된 각 분야를 다뤄줄 수 있는 다양한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임의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4 전문가 FGI 참여 대상자

| 참여자 | 전문가 집단 형태   | 직위  |
|-----|-------------|-----|
| 1   | 사단법인 **     | 변호사 |
| 2   | 소방안전관리과     | 교수  |
| 3   | 한국장애인개발원    | 박사  |
| 4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관장  |

## 2. 연구절차

FGI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명으로 구성된 2차 전문가 FIG는 ZOOM을 활용한 화상 방법으로, 2022년 2월 27일 17시에 진행하였고,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인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FGI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 2)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3)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장의 긍정적 변화는 무엇인가?
- 4) CCTV 설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와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가?
- 5)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문제에 CCTV 설치 의무화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6) 거주시설 내 공간적인 특성이 장애인 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7)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도움 방안과 향후 해

결은 무엇인가?

- 8)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와 영상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 9)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들은 무엇인가?

### 3. 자료분석방법

각 FGI 후에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자와 참여자들 간의 담화 내용을 줄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 의무설치 관련 제도 정비시 고려해야 할 점과 시설의 공간적 특성이 장애인 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방안 모색을 통해 의무화 논의 가운데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핵심 주제를 탐색하였다. 특히 인터뷰 내용을 줄, 문장, 문단 단위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내, 사례 간 지속적 비교를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 4. 전문가 FGI 분석결과

[표15 전문가 FGI 분석결과]

|                                              |                                                                                                                                             |
|----------------------------------------------|---------------------------------------------------------------------------------------------------------------------------------------------|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생각                 | (1) 부정적 견해<br>가) 사생활 침해와 기본권 침해<br>(2) 긍정적 견해<br>나) 현행 의무화한 어린이집의 긍정적 효과 반영<br>다) 예방차원에서 긍정적 효과<br>라) 예방과 사후 대책을 위해 필요                      |
| 2)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한 생활 공간 설치 기준 마련<br>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생활 공간 내 설치기준의 엄격한 잣대 필요<br>다) 적절한 설치 장소 가이드라인 만들기<br>라) 근본적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 공간적 측면 |
| 3) 장애인거주시설 CCTV                              | 가) 사고 규명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 확보                                                                                                                     |

|                                      |                                                                                                                                                                                                                  |
|--------------------------------------|------------------------------------------------------------------------------------------------------------------------------------------------------------------------------------------------------------------|
|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                | 나) 문제 발생시 투명성에 의한 이용인과 종사자 보호 차원<br>다) 범죄 예방 측면과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 자료                                                                                                                                                 |
| 4)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                | 가) 사생활 침해<br>나) 운영자의 긴장감 유발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권 침해<br>다) 사기저하<br>라) 음성적 학대 및 장애인 학대 고도화 우려                                                                                                                             |
| 5) 거주시설 내 공간적인 특성이 장애인 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가)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br>나) 공간적인 특성의 정의에 맞는 위험 지역 설치<br>다) 거주시설 내 숨을 수 있는 많은 공간적 특성<br>라) 거주시설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구분의 어려운 특성                                                                                                |
| 6)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공간적 측면)과 해결 방안 | 가) 근본적 문제 접근한 현재 거론 대안들 활용(소규모, 탈시설, 지원주택 등)<br>나) 공간적 특성 활용 : 벽 없는 건축으로 자연적 감시 유도한 예방(청각장애인 대학교)<br>다) 1인 1실의 공간 제공<br>라) 시설 내 갈등 줄일 수 있는 환경 계획 : 개인 공간, 방어 공간                                                  |
| 7)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설치기준 마련         | 가) 설치 장소의 최소화 : 주 출입구 중심 위주, 생활 공간의 최소화<br>나) 보관기간(60일)/전용시설, 공용시설 설치<br>다) 보관기간(30일 이내 활용-표준개인정보보호규정)/생활공간 제외한 공용공간 설치<br>라) 보관 기간(60일)/설치 최소화로 옥상, 보일러실, 체육관, 생활공간은 제외<br>마) 안정 확보 요청한다면 개별실 설치/ 다양한 내용을 고려 필요 |
| 8)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         | 가) 시설의 구조적 문제 개선해가면서 CCTV는 최후의 보루로 활용<br>나) 설치 장소, 보관 기간에 설치 시간 추가/ 의무화 검증 프로그램/ CCTV 기능의 확대<br>다) 이용자에게 CCTV 설치 고지와 설치 이유, 활용 방법의 충분한 설명                                                                        |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생각

### (1) 부정적 견해

#### 가) 사생활 침해와 기본권 침해

아무래도 CCTV 설치가 된다고 해서 장애인 학대가 사실 예방의 효과라기

보다는 사실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하나의 그런 수습적인 차원에서만 사실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기본권 침해가 있고. 거주인 뿐만 아니라 거기 생활하고 있는 생활교사들 역시도 그런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참여자4)

## (2) 긍정적 견해

### 나) 현행 의무화한 어린이집의 긍정적 효과 반영

저는 찬성에 표를 던졌는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석 의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있고 선행연구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도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설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구요. 또 저는 건축 분야, 소방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방차원에서요. 그리고 셉테드(CPTED)라고 하는 범죄예방 설계에서부터 시작된 CCTV이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는 CCTV가 설치되면서 인식이 좀 개선된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2)

### 다) 예방차원에서 긍정적 효과

솔직히 CCTV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도 질문이 있지만 이걸 어디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거 같구요.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CCTV 같은거 저도 제 애가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경험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보호자가 안심을 하게도 되고 그리고 CCTV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 종사자들도 조금 더 조심할 하게 되고 그런건 있는 것 같습니다만.(중략)...저는 어쨌든 필요는 한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자1)

### 라) 예방과 사후 대책을 위해 필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학대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장애인은 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CCTV와 같은 기기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CCTV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시설 이용자의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자3)

2)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정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한 생활공간 설치 기준 마련

그 우리 법령상을 보더라도 사실 이게 사생활 침해문제가 제일 심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대나 이런 것들이 이용인들의 거주공간에서 발생을 하는거 같은데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이분들의 사생활적인 공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롯이 다 노출이 되는거라 그런것들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법령상에도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더라도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참여자2)

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생활공간 내 설치 기준의 엄격한 잣대 필요

이런 거주시설이라고 하는건 완전히 24시간 보통의 가정처럼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기본권 침해라는게 너무나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시설 내 CCTV설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의 공간, 주출입구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셨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각지대라고 발생할 수 있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설치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생활하는 생활공간 내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조금 더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자4)

다) 적절한 설치 장소 가이드라인 만들기

거주시설에 사생활을 보호해야하는 목욕탕이라던가 제가, 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실, 침실 이런 데는 제외하고 24시간을 감시할 것인가 아니면 주간만 감시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한다면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제가 찾아본 건 선행연구도 있었고 또 가이드라인이 있었더라구요. 어린이집에. 그 가이드라인이 초기에 한 5,6년 전 발생할 때에는 설치하자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보니까 아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1)

라) 근본적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 공간적 측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가 학대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CCTV 설치 이외의 학대방지, 안전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학대예방 및 방지, 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고시스템, 학대에 대한 사건처리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안전확보의 측면에서 학대에 대한 인식확산 및 인식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상담 지원, 시설의 소규모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CCTV 설치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공간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여자3)

### 3)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

가) 사고 규명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 확보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이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몸에 심하게 멍이 든 걸 가족들이 확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신거예요. 이게 혹시 폭행을 한거 아니냐 그랬는데 시설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럼 CCTV 돌려보자고 해서 치료실에 있는 CCTV를 돌려봤더니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뛰다가 어딘가에 모서리에 세게 부딪쳐서 허벅지를 그래서 멍이 든게 확인이 된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 사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할수도 있고 장애특성상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4)

사고원인을 알 수 있을거 같고 사고인지 아니면 학대라고 하는 증거자료 수집이라던가 증거자료로 봐도 될 것 같구요.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참여자1)

#### 나) 문제 발생시 투명성에 의한 이용인과 종사자 보호 차원

좀 투명해지는게 있을거 같고. 그리고 아까 모두 처음 서두에서 종사자들이 조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좀 당당해지는 거니깐요. 돌려보면 좀 잘 나오게 될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용인과 종사자들을 다 어느 정도 좀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이용인들끼리의 약간 그런 문제들. 특히 보호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구요. 우리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거 같습니다.(참여자2)

#### 다) 범죄 예방 측면과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 자료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으로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3)

#### 4) CCTV 설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 가) 사생활 침해

사생활에 대한 제한이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거고 이거는 거주인과 종사자 모두가 마찬가지인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느냐 따라서 만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으로 설치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 방이라던지 목욕실이라던지 CCTV가 없는 주변의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들이 사

실 훨씬 많기 때문에...(참여자4)

사생활 침해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구요. 또 운영자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갑갑함, 불편함 긴장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1)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CCTV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3)

나) 운영자의 긴장감 유발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권 침해

물론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각지대는 이제 발생하는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모두가 다 안해야겠다 아니면 모두가 다 해야겠다 또 CCTV를 통해서 인식개선이 된다고 하고 그 운영자나 보호자들이 서로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되서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1)

다) 사기 저하

뭐 다른 사기저하라던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시설에서는 솔직히 저는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그 담당자로 해야 하고 생각보다 아마 매주 한 달에 한 번 보호자들 회의하잖아요. 제 생각엔 그때마다 보호자들이 CCTV 보여 달라고 할 거 같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도 일일이 또, 저희 어린이집도 보면 그런 대응을 예상해보면 그냥 또 다 얼굴을 가려야하니 어찌니 어떻게 보여지니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2)

라) 음성적 학대 및 장애인 학대 고도화 우려

제가 가본 시설들 중에는 이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주공간 안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들을 자세히 보면 은밀하게 이것들이 창을 향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생활침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조사라던지 갔을 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설치되면 점점 더 확대는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있구요. (참여자4)

아마 CCTV가 있으면 저는 더 고도화가 될 거 같아요. 더 지능화가 되고. 제가 경험한 제 경험에 비춰볼 때는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중 상당수가 종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랑 지내다보니 본인은 학대라고 생각을 못 하는거죠. 이게 처음에는 무슨씨 무슨씨 이야기하다가 좀 친해지니까 반말하다가 반말하다보면 한 대씩 툭툭 때렸다가 친해지니까 좀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화를 냈다가 그러면서 되더라구요. (참여자2)

통계조사에서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CCTV 장애인 학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하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CCTV설치 의무화가 학대 발생률을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나 장애인의 특성상 학대 행태 등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3)

## 5) 거주시설 내 공간적인 특성이 장애인 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

### 가)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

어쨌든 구조적인거고 단체생활을 하는거고. 근데 그 단체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통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고. 분명히 그 시설의 주인은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는 거죠. 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런 학대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참여자4)

#### 나) 공간적인 특성의 정의에 맞는 위험 지역 설치

제 생각이 이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가 있는데. 거기서 CCTV를 달거든요. 어디에 다냐면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 범죄 때문에 출입구 복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공간적인 특성이라는 단어를 받았을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 또는 불빛이 나지 않는 골목길 같은 곳에 범죄가 더 많다. 그래서 거주시설에 사각지대라는 곳도 사람들이 음침한 곳에서 학대 발생이 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곳에 CCTV를 설치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참여자1)

#### 다) 거주시설 내 숨을 수 있는 많은 공간적 특성

구조적인, 그 거주시설 공간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겠죠. 워낙 몰래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리고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서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해결책이 마땅히 않았던 사건이 왜 시설 특히 남성 이용인들이 있는 시설에는 방마다 방장이 있잖아요. 조금 기능 관찮고 좀 드세고 애들 때리고 그래서. 약간 좀 깡패같은 그런 양반이 하나 둘 정도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우리 인권지킴이단이 가면 딱 옆에서 감시를 해요. 자기 이야기 못하게.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에서도 어디 보일러실 데리고 가서 때리는 것처럼 워낙 시설은 크고 얼마든지 중간에 숨어서 때릴 곳이 그런 일이 일어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2)

#### 라) 거주시설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구분의 어려운 특성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도 대규모시설, 폐쇄적 특성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장애인 학대 발생이 높게 나타납니다. 더욱이 국내의 거주시설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쉽고 이러한 특성이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3)

#### 6)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공간적 측면)과 해결방안

가) 근본적 문제 접근한 현재 거론 대안들 활용(소규모, 탈시설, 지원주택 등)

지금에 나오는 대안들이 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어쨌든 소규모화하는, 물론 소규모화한다고 해서 그거 역시도 탈시설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탈시설 정책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했던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참여자4)

나) 공간적 특성 활용 : 벽 없는 건축으로 자연적 감시 유도(청각장애인 대학교)

저는 앞서 공간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말씀드리고 싶은게 미국에 모대학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대학교죠. 거기는 이제 벽이 없습니다. 서로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범죄예방 설계도 자연적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학대를 하지 않을거거든요. 저희도 그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 저희가 거주시설 지원 때문에 법정에서 만났는데 그 시설들을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선들이 갈 수 있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평면구조라던가 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일정 공간 거실 또는 사각지대가 보이는 곳 자연적 감시를 통해서....(참여자1)

다) 1인 1실의 공간 제공

이거 해결하려면 1인 1실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독립된 공간을. 지금 시설들 다 안그러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용인들 끼리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거든요. 잠도 같이 자잖아요. 5명, 4명 이렇게. 지금 그게, 그게 제일 문제이지 않을까. 적어도 그러면 1인이 독립해서 완전히 외부와 분리되서 자기만의 생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줘야하지 않을까 적어도 만약에 시설을 유지한다면.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2)

라) 시설 내 갈등 줄일 수 있는 환경 계획 : 개인 공간, 방어 공간

앞서 학대의 단계에 따른 제도와 공간의 연계 외에 시설 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환경계획이 필요합니다. 서구에서는 인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공간’, ‘방어공간’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환경계획에 반영해 왔습니다. 개인의 공간은 누구나 확보하고 싶고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일정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방어공간은 건축이나 도시환경을 위한 계획이 범죄가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오늘날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에 위의 두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자연적 감시, 행동특성별 영역성 확보 등이 고려되는 환경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3)

#### 7)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설치기준 마련

##### 가) 설치 장소의 최소화 : 주 출입구 중심 위주, 생활 공간의 최소화

사실 기간은 잘 모르겠구요. 근데 저는 정말 설치해야한다면 최소화. 주출입 구라던지 만약 시설 울타리 쪽에 사실은 이제 나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동 동선이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실 역시도 저는 모두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최소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출입구 중심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자4)

##### 나) 보관 기간(60일) / 전용시설, 공용시설 설치

참고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보관기간은 60일 정도 측정한거 같더라구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보처리가 되어야하고 저도 CCTV 관심이 있어서 용량을 좀 파악했더니 8대에 1테라가 있어야 30일 정도 돼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저장하니까 한 30~60일 정도에 있는 기간 정도로 해야할 것 같고. 설치장소는 딱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시설이나 공용시설이냐. 공용시설에는, 전용시설은 하지 않고 공용시설에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저희가 거주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거실, 대다수가 낮에 활동하고 있는, 저희가 아파트에 살면 거실이겠죠. 거기를 공용시설로 봐야하는 건가 전용 시설로 봐야한다면 아파트 시설의 거주시설 같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여져서 최소 1군데 이상은 설치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참여자1)

다) 보관기간(30일 이내 활용-표준개인정보보호규정 41조)/ 생활공간 제외한 공용공간 설치

그 어디를 설치해야 할까 사실 시설마다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본 시설들은 대부분이 생활공간하고 그런 공용공간이 일치하거든요. 자다가 일어난 그 방에서 놀아요. 거기에 책상 깔아놓고 프로그램하고. 복도.. 복도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 시설 층마다에 엘리베이터 앞이라던가 계단쪽 그런쪽이라던가 뭐 그런걸 생각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복도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최소화하면서 뭔가 이렇게 확대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 누군가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도같은 데가 필요할거 같은 한데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중략). 근데 우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이 있거든요. 개인정보위원회 고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웬만하면 지켜라 이건데 여기에서 보면 41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관기간 이거 달성하기 힘들면 30일 이내로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중략). 근데 30일로 할 경우에 과연 그럼 그 확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데 근데 보통 이게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2)

라) 보관 기간(60일)/설치 최소화로 옥상, 보일러실, 체육관, 생활공간은 제외

통상 아까 60일 이야기하셔서 뭐 그 정도인거 같구요.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 안전과 관련해서 벌어질 수 있는 옥상이라든지 시설구조들에 따라서 보일러실이 있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 곳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설치를 할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조금 놓고 최소한의 생활공간 안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목적자체를 CCTV를 여러 가지 실종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범죄,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요렇게 조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4)

마) 안정 확보 요청한다면 개별실 설치/ 다양한 내용을 고려 필요

CCTV 설치기준에 대한 연구는 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규모나 이용정원 등도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장 사적 공간인 개별실에서 안전에 대한 확보를 요청한다면 CCTV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켜고 끌 수 있는 스마트기기의 설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관기간은 학대 발생과 신고 또는 학대 발견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기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3)

#### 8)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

가) 시설의 구조적 문제 개선해가면서 CCTV는 최후의 보루로 활용

이게 학대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수단으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설 내에서 이런 학대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장치들이 있잖아요. 아까 변호사님이 활동하셨던 것처럼 인권지킴이단을 조금 더 실체화하는 형태. 지금의 인권지킴이단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위원을 선정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시설장들이 사실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해서 인권지킴이단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방에 여러 명이 생활한다던지 이런 생활적인 최소한의 생활적인 것부터 사실은 이런 개인의 사생활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것들부터 사실 하나씩 개선해가면서 이 CCTV라고 하는건 제일 마지막 최후에 하나의 보루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참여자4)

내밀한 곳을 확대예방을 위해 비추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딱 관장님 말씀에 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사실 면피성, 책임회피, CCTV도 있었다 우리 할거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걸로 이용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참여자2)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의 협력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차후 이러한 논의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참여자3)

나) 설치 장소, 보관 기간에 설치 시간 추가/ 의무화 검증 프로그램/ CCTV 기능의 확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공간적인 특성에 대해서 전용시설, 공용시설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설치하는 장소, 보관기간에 더붙어서 설치시간까지 고민을 한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검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의무화를 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주시설 지원사업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할 것 같고. 거기서 시범사업장을 선정할 때, CCTV 설치의무화에 대해서 시범사업장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의 확대입니다. CCTV라고 하는 부분이 셉테드라고 하는 범죄예방설계와 캡티드라고 하는 화재예방 설계가 있습니다. CCTV 자체적으로 온도, 습도,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CCTV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방기구나 화재가 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된다면 기능의 확대가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CCTV가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긴급상황, 온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간다 했을때는 소방서에 연락하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탑재한다면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1)

다) 이용자에게 CCTV 설치 고지와 설치 이유, 활용 방법의 충분한 설명

CCTV설치 시에는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위한 공용시설이라면 이러한 고지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

주시설의 경우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CCTV 설치 위치나 설치 이유, 활용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교육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를 찾아봤는데 주로 외부인에 대한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 창 등에 CCTV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참여자3)

## 5. 소결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관련 전문가들의 FGI’를 위하여 9개의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대상은 인권 관련 변호사, 소방안전 관리과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중심으로 구성하여 ZOOM을 활용한 화상 채팅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문가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거주시설 CCTV 의무 설치에 대하여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1명의 참여자가 우려하였으며, 3명의 참가자는 현행 설치 의무화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효과와 장애인 학대 예방 차원과 사후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였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한 생활 공간 설치 기준 마련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생활 공간 내 설치 기준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둘째, 적절한 설치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CCTV 설치가 학대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기에 근본적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장의 긍정적 변

화에 대하여는 명확성에 의한 사실 확보가 유리하고 사고 시 사고 규명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용인과 종사자 보호와 범죄예방 측면과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효과로는 사생활 제한과 CCTV 설치로 장애인 학대 고도화를 우려하였다. 또한 기본권 침해에 의한 종사자와 운영자의 긴장감 유발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권 침해와 사기 저하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루었다.

거주시설 내 공간적인 특성이 장애인 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CCTV가 사실은 대안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구조를 조정할 것인지, 탈시설로 전향할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다루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주시설 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과 거주시설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구분의 어려운 특성이 장애인 학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공간적 측면에서 도움 방안과 해결 방안으로 근본적 문제 접근에 대한 현재 거론 되고 있는 소규모, 탈시설, 지원주택등의 대안들을 활용해야 하며, 외국의 사례를 활용한 공간적 특성을 활용 대안으로 벽 없는 건축으로 자연적 감시를 유도하여 예방 효과를 본 사례를 예시하였으며, 1인 1실의 공간 제공을 통하여 시설 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환경 계획(개인공간, 방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CTV 설치 장소와 영상 보관 기간에 대한 참여자들은 설치 장소의 최소화 와 주 출입구 위주, 공용공간 설치(옥상, 보일러실, 체육관 등)를 언급하였고 생활공간은 보호가 필요하며, 개별실에서 안전 확보 요청이 있다면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용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보관기간으로 1~2개월정도에 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가 과정을 통해 CCTV는 최후의 보루로 활용해야 한다. CCTV 설치는 학대 예방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현재 시설에서 한 방에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형태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최소한 생활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설치 시간에 대한 추가와 설치 의무화 검증 프로그램의 가동과 CCTV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간적인 특성에 대해서 전용 시설과 공용시설을 구

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장소와 보관 기간에 더하여 설치 시간이 필요하며, 의무화 검증여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 CCTV가 가지고 있는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설계에 자체적 온도, 습도,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CCTV를 활용한다면 기능의 확대를 도모하여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설이 가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서 문제 되는 것들, 책임회피, CCTV도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이용자에게 CCTV 설치 고지와 설치 이유,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구체적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 설명 이유는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교육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외부인 침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창,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소용 비용은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의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례들을 활용한 구체적 논의 확대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제3절 장애인당사자 FGI 분석결과

#### 1. 당사자 FGI 참여자

초점토의에 참여할 당사자는 장애거주시설 당사자로 임의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6] 당사자 FGI 참여 대상자

| 참여자 | 거주시설 유형 | 장애유형     | 거주환경특성 | 나이/성 | 대상        |
|-----|---------|----------|--------|------|-----------|
| 1   | 단기시설    | 뇌병변/시각장애 | 다인실    | 36/남 | 거주인(L**)  |
| 2   | 단기시설    | 무        | 1인실    | 32/여 | 생활교사(K**) |
| 3   | 공동생활가정  | 지적장애     | 다인실    | 28/남 | 거주인(K**)  |
| 4   | 공동생활가정  | 지적장애     | 다인실    | 46/남 | 거주인(J**)  |

## 2. 연구절차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naire)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2022년 2월 28일 진행되었는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참여 장애인의 시각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참여자를 도와 생활교사 1인이 함께 하였고,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1시간의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이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같은 날 28일 오후 6시에서 7시에 거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2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1시간의 FGI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인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FGI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CCTV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CCTV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 2) CCTV 기능 이해 정도는 어떠한가? (순기능, 역기능 정도 파악)
- 3) CCTV 설치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필요와 불필요 정도 파악)

## 3. 자료분석방법

각 FGI 후에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자와 참여자들 간의 담화 내용을 살펴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잘 반영하고자 최대한 참여자들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또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 의무설치에 대한 당사자의 언어로 실증성을 더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의사 표현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반복적인 강조적 표현들에 집중하고 면담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짧은 대화에 있는 반복적인 표현들을 통해 강조성을 재확인하였다.

#### 4. 장애인 당사자 FGI 분석 결과

##### 1) CCTV에 대한 인식

##### ① CCTV 본 기억 : 이용시설(작업장)과, 거주시설(단기시설)에서의 기억이 존 재함

저는 대학교 때 계단 내려갈때마다 CCTV가 있는 걸 다 봤거든요. (참여자3)

맨날 보는데. 작업장. 우리 작업장. (참여자4)

저희 기관에도 달려있고. 뭐 어린이집 같은데는 의무적으로 달려있다고 듣긴 했어요. 저희 기관에도 달려있고. (참여자1)

##### ② 현 거주시설에서 CCTV 설치장소 : 거실(생활관), 공용공간, 사무실

저기, 3층에는 거실하고 그 다음에 음... 그러니까 생활관. 여기 사무실 하고 거실 하고. 생활, 저기 4층 생활관 쪽에.(참여자1)

거주하시는 방, 거실에만 있어요. 공용공간에만 있어요. (참여자2)

없어요. (참여자4)

##### ③ CCTV의 기능 : 물건 훔쳐 가는 것, 때리는 것, 싸우는 것, 이용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것

CCTV 다 보이잖아. 방이나 학교 이런데 다 보이잖아. 사람들 다. 물건 훔쳐 가는지 안훔쳐 가는지 다 보잖아. (웃음) 일 하나 안 하나 다 보이잖아요. 싸우 나 안 싸우나. (참여자4)

애들이 보면 서로 때리고 하는 게 그거 때문에 해놔던 거 같아요. 때리고 이제 서로 장난치고 막 물건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CCTV를. (참여자3)

뭐, 도둑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이용자들이 어떻게 지내는, 뭐 거주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볼 수 있을 거 같고. (참여자1)

## 2) CCTV 기능 이해 정도

### ① 누군가 매일 항상 나를 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화가 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듯함

마음이 화가 날 거 같아요. (참여자3)

나도요. (참여자4)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뭐... 글쎄... CCTV... 뭐... 조금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한다... 거주인들 생활하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좀 봐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감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불편할 거 같기는 해요. (참여자1)

### ②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감시로 인해 화가 날 것 같고 찍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현 수반

CCTV... 나는 그런 건 안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꾸 그거 있으면 누가 날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화가 날 거 같아요. (참여자3)

나도 똑같아요. 나는 사진 찍는 거 제일 싫어. (참여자4)

뭐... 글쎄... CCTV... 뭐... 조금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좀 조심해야 한다... 뭐... 뭐... 저기... 거주인들 생활하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좀 봐야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감시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불편할 거 같기는 해요.

(참여자1)

③ 카메라가 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행동이 조심스럽고 더 행동을 잘하려고 노력하게 됨

더 잘할 거 같아요.(참여자3)

나는 안 먹어. (웃음) 남의 거 먹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안 볼땐 어떻게 할거 같아요?) 그럴 땐 먹을거 같아요. (참여자4)

좀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보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참여자1)

### 3) CCTV 설치에 대한 욕구

① CCTV가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 부정적 욕구 : 사생활 노출로 인한 침해 차원에서

나는 안 달았으면 좋겠어. 불편해. 카메라가 작업장에 있잖아. 그럼 다 보잖아. 나는 보는 게 싫어요. 작업장에 누가 돈 훔쳐가나 안 훔치나 보잖아. 또 뭐지. 싸우나 안싸우나도 보고. 또 사고치고 이런거. 또 뭐지, 우리 일할 때도 유리 깨나 안깨나 다 보잖아요.(참여자4)

저도 그때 버스나 이런 거 탈 때 보면 CCTV 있어 가지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구요. 제가 타는 이제 뭐 마을버스나 이런 거 보면 전부 CCTV가 있으니까 타기도 겁이 팍 나고. 자꾸 나를 보는 거 같아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참여자3)

■ 긍정적 욕구 : 장애인 폭력에 대한 사후 대책과 위험한 순간에서 보호하고 물건들을 잃었을 때 찾아 줄 수 있음

글쎄... 뭐 딱히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근데 CCTV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요새 시설 같은데서, 우리 기관이 아니라 뉴스 같은데서 많이 보도되고 그러잖

아요. 일단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중략)...뭐...요새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한대 정도...각 시설에 한 대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1)

폭행 이런 거요. (참여자2)

뭐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물건을 가져가니까. 애들이 한번씩 대학교 때 보면 애들이 좀 가다가 몇명애가 거기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 때, 그럴 때 CCTV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넘어졌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참여자3)

② CCTV가 가장 필요한 사람(대상) : 위협에 처한 사람, 경찰(증거자료), 장애인시설당사자, 거주인의 가족들, 구조대원

뭐, 거주인들의 그런 가족들이라던지... 아니면은 뭐... 거주인들의 가족들이라던지 외부, 거주인과 관련있는 사람들이라던지... 아니면 경찰같은 사람. 혹시 뭐 조사를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조사를 할거 아니예요. (참여자1)

뭐 조사 나오고 할 때 증거자료가 되죠. (참여자2)

만약 사람이 다쳤을 때 구조대원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그 구조대원이 오는걸 CCTV로 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게 좋은거 같아요. 볼수도 있고. 구조대원이 어디서 계단으로 올라올 때도 다 볼 수도 있으니까.(참여자3)

③ CCTV 설치 장소 : 화단, 현관, 현관 밖, 거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지금 제 방에는 거실이라던지 그런데 있는데 화단? 그럼 그쪽에다 놓겠죠. (참여자1)

현관..누가 돈 훔쳐가나 안훔쳐가나. 방은 안좋아요. (참여자4)

저 같은 경우는 만약 CCTV를 설치한다면 그... 음... 뭐지. 현관이나 아니면 밖에, 주변에다가 그냥 설치해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그런거 보게 하려고 설치할 거 같아요. (참여자3)

거주인들 생활하는 거실이라던지. 뭐...여기 사무실, 여기 프로그램실 같은거..

(참여자1)

④ CCTV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선량한 사람(종사자)이 피해보는 상황 발생 우려, 사생활 노출

필요하지 않은... 뭐... 폭행...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행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저기...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버리면 곤란... 그리고 또 폭행을 휘두르지 않은 종사자들도 있을테니깐. (참여자1)

안되면 더 좋고. 탈의.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구나(참여자1)

폭행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깐요(참여자2)

네. 제가 대학교 주말반하고 이제 막 애들끼리 씻으러 내려가서 거기서도 샤워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누가 이제 쳐다보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죠. (참여자3)

⑤ 허락을 받지 않고,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짜증, 불쾌, 기분이 좋지 않음

그럼 안돼요. 안돼요. 사진 막 찍어놓으면 안 되지. 사진을. 허락은 받아야죠 당연히. 허락은 받아야 되는 거고. 허락 안 받으면 짜증나죠. 막 짜증나. (참여자4)

완전... 자꾸 불쾌함이 드는거죠. 자꾸 CCTV가 있으니깐 내가 잘 때 몸을 뒤척거리는데 것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네. 허락 안 받으면 못달아요. 이거. 저도 짜증나죠. 저도 예전 그 대학교 때 한번 화 엄청 나가지고 주말반 할 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방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냥 문을 잠궈놓고 혼자 자 버렸어요. 아니 자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쳐다보고 있으니깐. (참여자3)

별로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갈아입는 건데 그게 그냥 노출이 된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불쾌할 수도... (참여자1)

## 5. 소결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 관련 당사자 장애인들의 FGI’는 11개의 질문지를 통해 3개로 범주화하여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참여자는 4명으로써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지적 장애인 참여자(2인)와 장애인단기시설의 시각 장애인 참여자(1인), 생활교사(1인)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 교사를 제외한 3명의 장애인 당사자 모두가 다 인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당사자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TV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알기 위한 검증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CCTV의 순기능, 역기능 정도 파악을 파악하여 CCTV 설치에 대한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CCTV를 본 기억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에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거실(생활관), 공용공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CCTV는 물건을 훔치고, 때리고, 싸우는 것 등의 이용자들이 어떻게 지내는 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CCTV 기능 이해 정도를 알기 위하여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드는 생각에 대하여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날 것 같고 찍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CCTV였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행동이 조심스럽고 행동을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CCTV 설치욕구에 있어서 설치 필요에 대한 부정적 욕구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말하였고, 장애인 폭력에 대한 사후 대책과 위험한 순간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물건들을 잃었을 때 찾아 줄 수 있는 등 긍정적 설치 욕구를 표현하였다. 또한 CCTV가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란 정의 하에 경찰의 증거자료로, 장애인시설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거

주인의 가족들, 구조대원이 필요하며 시설 설치 장소로는 화단, 현관, 현관 밖, 거실, 사무실, 프로그램실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에 대하여 선량한 종사자가 피해 보게 되며, 사생활 노출로 인한 개인 생활 보호가 되지 않음을 말하였다. ‘허락받지 않고 CCTV를 설치한다면 어떨까’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은 ‘허락받지 않고’라는 말에 집중하였으며 “안돼요, 안돼”를 강조하며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불쾌하다는 강한 어조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 제 4절 이해당사자 그룹 FGI 분석결과

### 1. 이해당사자 FGI 참여자

초점토의에 참여할 이해당사자 그룹은 CCTV 설치와 관련된 각 분야를 다뤄 줄 수 있는 다양한 각계 분야의 장애인 관계자와 인권 전문가로 임의 선정하였고 참여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7] 이해당사자 FGI 참여 대상자

| 참여자 | 장애인계, 인권 전문가 집단 형태 | 나이/성별 | 직위    |
|-----|--------------------|-------|-------|
| 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50/남  | 관장    |
| 2   | *** 인권지킴이단         | 59/여  | 부단장   |
| 3   | **** 거주시설          | 63/여  | 공공후견인 |
| 4   | *** 거주시설           | 57/여  | 부모당사자 |

### 2. 연구절차

FGI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명으로 구성된 4차 장애인계, 인권 전문가 그룹으로 FIG는 2022년 3월 16일 18시에 진행하였고,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 연구의 윤리적 원칙인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연구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FGI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CCTV 설치 의무화 도입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발생과 그 견해 이유
- 학대방지 위한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학대 방지 도

음 여부)

- CCTV 설치 의무화가 장애인 학대 예방에 근본적인 대안 가능성 여부

2) 시설 내 CCTV 설치 시 고려 부분과 설치 기준 마련은 어떠한가?

- 긍정적, 부정적 효과 (시설장, 종사자, 거주인, 가족, 후견인 측면)

-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방안

- CCTV 설치 시 특별히 고려할 점(종사자, 기관, 정부, 비용 등)

- CCTV 설치 의무화 기준마련(필수 설치장소와 부적절한 장소, 설치장소 고려 점)

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은 무엇인가?

### 3. 자료분석방법

위의 분석 방법과 같이 각 FGI 후에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면담자와 참여자들 간의 담화 내용을 줄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 의무설치에 대한 생각과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과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가운데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핵심 주제를 탐색하여 제언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인터뷰 내용을 줄, 문장, 문단 단위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단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내, 사례 간 지속적 비교를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 4. 이해당사자 FGI 분석 결과

[표18] 이해당사자 FGI 분석결과

|                       |                                                                                          |
|-----------------------|------------------------------------------------------------------------------------------|
| 1)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도입 목적<br>가) 장애인 인권 보호<br>나) 장애인, 종사자, 시설 모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
|-----------------------|------------------------------------------------------------------------------------------|

|                                         |                                                                                                                                                                                                                                                                                                                                                                                                                                                                                                                                                                                                                                                                                                                                  |
|-----------------------------------------|----------------------------------------------------------------------------------------------------------------------------------------------------------------------------------------------------------------------------------------------------------------------------------------------------------------------------------------------------------------------------------------------------------------------------------------------------------------------------------------------------------------------------------------------------------------------------------------------------------------------------------------------------------------------------------------------------------------------------------|
|                                         | <p>다) 사후 대책을 위한 보조장치</p> <p>(2)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발생과 그 견해 이유</p> <p>가) 장애인 특성 이해 부재</p> <p>나)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부족과 이용인들의 모니터링 부재</p> <p>다) 개인의 일탈, 기관 운영자의 철학,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br/>(개인공간 부족, 서비스 인력 부족)</p> <p>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p> <p>(3) 학대방지 위한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학대 방지 도움 여부) : 4명의 참여자 모두 설치 의무화에 긍정</p> <p>가) 현시대 추세를 통한 긍정성 반영에 따른 설치 필요</p> <p>나) 설치 목적, 설치 내용, 범위에 대한 제약, 사생활 보호가 전제 된 설치 의무화</p> <p>다) 사각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 경감</p> <p>라) 학대로부터 장애인 보호와 종사자 보호</p> <p>(4) CCTV 설치 의무화의 장애인 학대 예방의 근본 대안 여부와 대안책 : 참여자4를 제외한 참여자1,2,3은 CCTV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근본 대안으로 어렵다고 함</p> <p>가) 외부 인권위원회 조직</p> <p>나) 탈시설 로드맵 기조에 따른 탈시설 지향</p> <p>다) 학대 가해자의 처벌 강화 규정 마련</p> <p>라)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거주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함</p>                         |
| <p>2) 시설 내 CCTV 설치 시 고려 부분과 설치기준 마련</p> | <p>(1) 긍정적, 부정적 효과</p> <p>① 긍정적 효과 (시설장, 종사자, 거주인, 가족, 후견인 측면)</p> <p>가) 거주인들 자체의 분쟁과 갈등 해결</p> <p>나) 시설장 측면: 인권침해 예방,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종사자 측면: 객관적 자료 확보의 인권 보호</p> <p>다) 거주인 측면: 시설 내 안전 생활 담보, 인권침해 예방 및 감소</p> <p>라) 사생활 보호, 안전 보장과 사고 예방</p> <p>②부정적 효과 (시설장, 종사자, 거주인, 가족, 후견인 측면)</p> <p>가) 종사자 측면 : 사생활 감시라는 불편한 선입관, 사기 저하, 심리적 위축, 직무 수행의 어려움 초래</p> <p>나) 시설 측면: CCTV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갈등 문제 확대/ 거주인 측면: 사생활 침해로 심리적 위축 문제 발생/시설과 종사자간 관계 설정 어려움</p> <p>다) 시설장 측면: 설치 비용 부담감/가족, 장애인 측면: 사생활 침해/가족 측면: 시설 학대에 대한 불안감, 가족 사생활 보호 우려</p> <p>(2)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방안</p> <p>가) CCTV 효과에 대한 대상자(종사자, 거주인) 교육, 개인의 시간 보호 (휴게시간)</p> <p>나) 장애인의 사적 생활 노출을 염두한 설치 장소 선정 마련, CCTV의 열람 권한 규정, 보존에 법적 제약 장치(열람자 권한 부여, 열람</p> |

|                                     |                                                                                                                                                                                                                                                                                                                                                                                                                                                                                                                                                                                                                                                                                              |
|-------------------------------------|----------------------------------------------------------------------------------------------------------------------------------------------------------------------------------------------------------------------------------------------------------------------------------------------------------------------------------------------------------------------------------------------------------------------------------------------------------------------------------------------------------------------------------------------------------------------------------------------------------------------------------------------------------------------------------------------|
|                                     | <p>근거의 법제화, 열람 기록)</p> <p>다) 개인적 사생활 공간 미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p> <p>라) CCTV 설치 최소화, CCTV 설치 목적의 명확화, 설치 후 관리 활용 명확화(관리절차 활용(열람) 불이행시 과징금, 행정조치 등)</p> <p>(3) CCTV 설치 시 고려 부분(종사자, 기관, 정부, 비용 등의 의견)</p> <p>가) 종사자 차원: 전문 직업성 존중에 의한 상쇄 효과, 위촉완화</p> <p>나) 기관 차원: CCTV 담당자 지정(정보주체 보호차원) 및 영상정보 수집, 저장, 관리와 열람 기준 마련,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설명, 관리절차 필요</p> <p>다) 지자체(정부) 차원 : 설치비용 지원, 설치 후 정부의 관리 감독기능 강화</p> <p>(4) CCTV 설치 의무화 기준 마련(필수 설치장소, 부적절한 장소, 설치장소 고려)</p> <p>가) 부적절 장소: 사생활 노출 발생 장소 (화장실, 장애인 개인방)</p> <p>나) 종사자들의 감정적 저항을 긍정적인 공감으로 이끌어 내기가 선행 후(설명회, 토론회등) 법적 진행/ 설치 장소: 사무실 출입문, 물리치료실 설치</p> <p>다) 설치 최소화(사적 공간에 대한 기준)</p> <p>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탈의실, 목욕탕 외의 오픈 공간에 설치</p> |
| 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논의 중 가장 고려 점) | <p>가) CCTV 영상 보관 기간의 연장(1년까지)과 고퀄리티 CCTV 설치</p> <p>나)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선행, CCTV 설치의무화 어린이집 실효성 살펴 보완점 고려 혼란 최소화하기</p> <p>다) 이해 당사자들의 인권의 최소한 보호와 설치에 대한 의사 반영 고려</p>                                                                                                                                                                                                                                                                                                                                                                                                                                                                                                                   |

## 1)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도입 목적

#### 가) 장애인 인권 보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이런 것을 공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 인권분야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CCTV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게 장애인 인권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3)

나) 장애인, 종사자, 시설 모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첫번째는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세번째는 우리 시설 안전관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종사자 또 시설 모두를 위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2)

우리 시설 내 안전. 안전확보. 어찌됐던 인권침해 예방. 더불어서 시설은 하나의 집이지요. 큰 집이지요. 그 안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어진다고 보여지고. 어찌됐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발생시 객관적인 판단자료 확보가 결과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여자1)

다) 사후 대책을 위한 보조장치

우선 CCTV를 설치하는 곳은 이미 우리 사회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의무화 되어있고 한걸음 나아가서는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CCTV 앱을 공유하고 있는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을 위한 보조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4)

## (2)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 발생과 그 견해 이유

가) 장애인 특성 이해 부재

장애인들 자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거나 혹은 전달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금방 눈치 채지 못하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 특히 장애인들 중에는 역시 또 감정이 컨트롤이 안되서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진전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3)

## 나)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부족과 이용인들의 모니터링 부재

장애인 학대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이고 또 관리자더라던가 아니면 그 종사자들이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인들의 어떤 욕구라던가 만족도조사도 하고 이런 어떤 모니터링이 부재해서 발생한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자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2)

## 다) 개인의 일탈, 기관 운영자의 철학,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개인공간 부족, 서비스 인력 부족)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좀 줄었어요. 오히려 이제 재가, 집에서 가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학대가 굉장히 늘었구요. 발생의 원인들.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개인의 일탈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하는 사람의, 개인의 일탈인데요. 실제 그러면 그 개인을 숙아내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기관 운영자의 철학. 그건 전체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만들어지는 조직의 문화. 직원들의 숙련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구요. 또 근데 그들만의 문제냐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 그 이유들이 있었지요. 그죠.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시설을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공간 만들고 하는데. 개인의 법상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 사생활 보호하는 측면에서...(참여자1)

## 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첫번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던가 여러가지 선생님들이 몇년동안 일을 하다보면 일종의 번아웃이 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창기에 장애인을 돌봐주는 그 마음가짐보다는 본인들이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혹은 또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런 감정이 좀 불쾌하게 나가다보면 그게 이제 학대의 경향처럼 가는 경향이 있어서(참여자3)

야간 근무자들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우리 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1)

장애아를 15년 키웠던 저 자신도 때로는 그 아이와 생활 속에 지치다보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방향이 필요하듯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분이나 이런 모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4)

(3) 학대방지 위한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 (학대 방지 도움 여부) : 4명의 참여자 모두 설치 의무화에 긍정

가) 현시대 추세를 통한 긍정성 반영에 따른 설치 필요

거주시설 내 CCTV는 의무화가 되는 것이 꼭 해야한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학대예방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거 같아서 이걸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관에는 CCTV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감시기능 이런거를 언급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국에 CCTV 설치 안한데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CCTV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일반사람들도 모든 사생활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오히려 더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3)

나) 설치 목적, 설치 내용, 범위에 대한 제약, 사생활 보호가 전제 된 설치 의무화

그게 뭐 완벽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던 우리 종사자, 기관 관리자, 거주 장애인 모두의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구요. 시설 입장에서 어찌보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가 우리 사회는 아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편으로 지금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같이 하게 되구요. 결국 CCTV 설치에 따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범위에 대한 제약, 개인 사생활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실은 의무화에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자1)

#### 다) 사각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 경감

현재 CCTV가 의무화 되어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다고 해서 장애인 학대방지를 100%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니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2)

#### 라) 학대로부터 장애인 보호와 종사자 보호

학대방지 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종사자나 서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장애인 학대도 있지만, 반대로 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나 봉사자분들도 때로는 장애인들한테 예기치 않는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이 없기에 시설종사자분들의 이직률도 높은 듯 합니다. (참여자4)

#### (4) CCTV 설치 의무화의 장애인 학대 예방의 근본 대안 여부와 대안책 :

참여자4를 제외한 참여자1,2,3은 CCTV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근본 대안으로 어렵다고 함

#### 가) 외부 인권위원회 조직

CCTV 설치하는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어려울거 같아요....(중략). 제가 보기에는 공공후견인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복지사 전

문가면서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자원봉사자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그 친구들이 의사소통이 분명치 않아도 겉모양, 외형을 살펴만 봐도 그 친구들이 지금 상태가 좋은 감정인지 좋지 않은 감정인지 나올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부 인권 위원회처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친구들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외부의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여자3)

#### 나) 탈시설 로드맵 기조에 따른 탈시설 지향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상황들의 변화들도 있을거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탈시설 로드맵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긴 안목으로 해서 어찌됐던 다양한 형태의 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보호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 가능하면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으로, 또 다양한 형태의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1)

#### 다) 학대 가해자의 처벌 강화 규정 마련

저희 시설은 2015년부터 카메라 16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학대 장애인, 그 장애인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 처벌이 좀 가볍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거 같구요. 장애인 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마련되면 좋겠구요. (참여자2)

#### 라)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거주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함

다양한 형태의 거주형태의 모양이 나와야합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이 소규모로 그들이 보호될 수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형태의 천편일률적인, 정부에서 규제하는 그런 형태의 물론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1)

## 2) 시설 내 CCTV 설치 시 고려 부분과 설치기준 마련

### (1) 긍정적, 부정적 효과

#### ① 긍정적 효과 (시설장, 종사자, 거주인, 가족, 후견인 측면)

##### 가) 거주인들 자체의 분쟁과 갈등 해결

저희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거의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가해자측이고 거주하는 분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막상 현장에 가보면 거주하고 있는 거주인들끼리도 서로 가해와 피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주인들이 그런 피해자나 가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되다보니까 상대방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서 약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주인들 자체도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보고요. (참여자3)

나) 시설장 측면: 인권침해 예방,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종사자 측면: 객관적 자료 확보의 인권 보호

시설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어찌됐던 목적 자체가 인권침해,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CCTV 자체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입니다. 그쵸. 그 장면을 보면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종사자 측면에서 좋을 거 같구요. 종사자 인권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 거주인들 측면에서는 시설 내 안전생활에 대해서 늘 담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거고, 인권침해 피해라는 것들이 예방이 되니까,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참여자1)

시설장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적과 부합하구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어떤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도 시설 안전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신속하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문제발생시 빠른 원인파악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구요. 대게 보면은 시설에서도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입증 자료로 억울함을 좀 해소할 수 있겠죠..(참여자2)

다) 거주인 측면: 시설 내 안전 생활 담보, 인권침해 예방 및 감소

또 가족, 장애인 측면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구요. 학대를 당해도 장애인들은 어떤 참고인 진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만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보호자들은 마음놓고 각자의 삶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2)

라) 사생활 보호, 안전 보장과 사고 예방

CCTV는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큰 것 같구요. 거주인이나 아니면 종사자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저도 근무를 하면서 CCTV가 바로 머리위에 있거든요. 그랬을때 오히려 더, 예전에 돈 사고도 예방되는 걸 CCTV가 찾아줬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지금은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CCTV는 전적으로 설치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걸로 저는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되기 때문에 훨씬 부모로써도 안전하게끔 어떤 사고예방에도 그 CCTV가 다 증명을 하기 때문에 훨씬 CCTV 설치가 용이하다고 저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참여자4)

② 부정적 효과 (시설장, 종사자, 거주인, 가족, 후견인 측면)

가) 종사자 측면 : 사생활 감시라는 불편한 선입관, 사기 저하, 심리적 위축, 직무 수행의 어려움 초래

부정적인 효과라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사생활을 감시당한다는 거 혹은 업무태도를 감시당한다는 선입관이 들수

는 있지만... (참여자3)

종사자 측면에서 그 다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무수행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감시받는다는 느낌이라던가 그런게 있을 수 있구요(참여자2).

종사자 측면에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찌됐던 사기저하 발생합니다. 늘 가해자로서 바라보여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시에 심리적인 위축 분명히 발생할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사자 측면 어찌됐던 거주장애인 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재설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어찌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구요(참여자1).

나) 시설 측면: CCTV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갈등 문제 확대/ 거주인 측면: 사생활 침해로 심리적 위축 문제 발생/시설과 종사자 간 관계 설정 어려움

CCTV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문제 적지 않습니다. 봤냐 안봤냐부터 시작해서. 이 갈등문제에 또 봉착할 수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그런 면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중략)...거주인 측면은 또 한편으로는 CCTV 사생활 침해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찍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나쁜거거든요. 당사자, 우리 거주인들도 사생활 침해받을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관련이 없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거기 내가 나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거주 장애인들 심리적 위축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부분들. 그 다음 종사자의 관계설정. 서로 간에. 실은 굉장히 관계설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염려가 된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구요. 가족측면에서 어찌됐던 우리 거주장애인들 시설 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겠다. 인권침해 염려를 조금 더 감소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구요. CCTV 설치된데 어찌됐던 시설과 종사자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하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여자1)

다) 시설장 측면: 설치비용 부담감/장애인 측면: 사생활 침해/가족 측면: 가족 사생활 보호 우려

시설장 측면에서는 없을거 같구요. 다만 설치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 가족 장애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 있구요. 가족 측면에서는 시설에서 학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해소를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구요. 가족 장애인측면에서 또 부정적인 효과는 가족 사생활 보호가 위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2)

## (2)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방안

가) CCTV 효과에 대한 대상자(종사자, 거주인) 교육, 개인의 시간 보호(휴게시간)

그거는 아마 종사자들을 조금 더 어떠한 이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과 아니면 거주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그런 오히려 대변을 할 수 있는 CCTV라는 어떤 교육도 필요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CCTV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거의 안해봤어요. 그게 그냥 너무나 공공연하게 서로를 위한 보호인것 같아서요. 모든 종사자분들을 위한 거라면, 휴게시간에 허락된 장소에서는 설치를 피하는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참여자4)

나) 장애인의 사적 생활 노출을 염두한 설치 장소 선정 및 CCTV 관련 규정 등 마련

거주시설 안에도 뭔가 사적인 생활이 노출되는 분야는 조금 제외하고 공적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선택을 잘 해서 연구를 하면 이게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열람하거나 보존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어야할 거 같아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자라던가 누구한테 특별히 부여하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하고 또 그것을 열람하는 것은 아무때나 평소에 열람하면 안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이거는 무엇때문에 내가 이것을 살펴본다는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봐야하는거죠. 평소에는 예방차원에서 CCTV는 녹화는 되겠지만 녹화되는 걸 운영자라고 해서 함부로 보면 그건 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녹화는 24시간 자유

롭게 하지만 그걸 보거나 검토하는 권한은 법적인 면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이 같이 따라줘야 할 것 같아서 그걸 꼭 중시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3)

#### 다) 개인적 사생활 공간 미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한 종사자 교육

장애인 거주시설은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생활이 노출되서 어떤 또 다른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곳. 기저귀 교체라던가 또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주로 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공간을 CCTV를 설치 안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앞에서도 관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학대가 시설에서 좀 많이 불거지다보니까 사실 시설 전체가, 전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전체가 어떤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가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서로를 다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것을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종사자들을 좀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그런 인식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2)

#### 라) CCTV 설치 최소화, CCTV 설치 목적 및 설치 후 관리 활용 명확화 (관리절차 활용(열람) 불이행시 과징금, 행정조치 등)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 명확해야한다.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야하고. 그래야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 다음 설치 후 관리. 왜 우리가 자꾸 감시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사회가. 이유가 있거든요. 이미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되잖아요. kt에서도 작동하는 거 밖에서도 봐요. 직원들 일하는거까지.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CCTV 목적이 근태관리라던가 복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들. 그 다음 설치 후 관리 절차. 열람이라던가 그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켜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든 행정조치든 명확하게 그에 따른 조치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명확하게 시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던가 복무관리를 목적으로 활용을 이미 하고 있는게 이미 있습니다. (참여자1)

(3) CCTV 설치 시 특별히 고려 부분(종사자, 기관, 정부, 비용 등의 의견)

가) 종사자 차원: 전문 직업성 존중에 의한 상쇄 효과, 위축완화

종사자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어떤 그 전문직업성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참여자2)

종사자 측면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거 같구요. CCTV 활용을 절대로 기관장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 그건 바로 불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할거 같고(참여자1).

나) 기관 차원: CCTV 담당자 지정(정보주체 보호차원) 및 영상정보 수집, 저장, 관리와 열람 기준 마련,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설명, 관리절차 필요

기관 차원에서는 CCTV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정보주체 관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열람 등 기준마련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CCTV 설치비용을 좀 지원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자2)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 많잖아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 충분한 관계자들의 설명들, 절차들이 필요하고. 관리절차들. 특히 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들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면들...(참여자1).

다) 지자체(정부) 차원 : 설치비용 지원, 설치 후 정부의 관리 감독기능 강화

설치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관이나 지자체 기준에

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복지, 또 보건복지 이런 측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치운영 자금을 먼저 마련해서 기관에다 그 걸 배분을 해줘야 할 거 같구요. 그 다음 설치를 하고 나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됐던 지자체가 됐던 어떤 그 CCTV가 설치됐을 때 운영하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 하나 수립이 되어야할 거 같아요. (참여자3)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찌됐던 후견인이 말씀하셨지만 관리에 있어서 운영현황이나 설치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발생했을 때 응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구요.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만들겠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바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자1)

정부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게 그냥 자동으로 어느 시설이 생길 때 자동으로 그 CCTV 비용까지가 이제는 정부에서 아예 지원되는 걸로. 그래서 아까 후견인 말씀대로 아예 하나의 정부기관이 그걸을 관리차원에서 통신사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를 언제라도 열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차원이 아주 우리나라에 대대적인 시설로 지원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참여자4)

(4) CCTV 설치 의무화 기준 마련(필수 설치장소, 부적절한 장소, 설치장소 고려)

가) 부적절 장소: 사생활 노출 발생 장소 (화장실, 장애인 개인방)

저희 시설이 지금 설치된 곳을 말씀드리다면 주출입구. 복도. 거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에 저희가 지금 16대 설치해서 작동이 되고 있구요. 특히 고려해야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시설은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던가 장애인 개인방. 이런 사생활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2)

나)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공감 먼저 - 설명회, 토론회 등 진행/ 설치 장소: 사무실 출입문, 물리치료실 설치

저는 CCTV 설치의무화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거주시설의 시설장들과 거주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저항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어떤 설명회라던가, 이분들이 이걸 설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장애인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토론회 같은걸 먼저 선행시킨 다음에 법적으로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출입하는 그 사무실의 출입문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또 한가지. 거주시설에는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거주시설에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그 장애인들은 환자 입장에서 충분히 자기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실에서 치료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물리치료실에도 CCTV가 설치가 됐으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3)

다) 설치 최소화(사적 공간에 대한 기준)

설치 최소화를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던 공용공간으로 제한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까 출입구, 식당이라던가 위험성이 있는 계단이라던가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요. 프로그램실. 그 다음 상담실은 전 설치가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거실. 개인방이 아닌, 함께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실, 복도, 운동장 정도가 공용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찌됐던 저는 직원 사무공간에 대해서도 설치는 안해야한다. 직원 사무하는 공간에까지 설치하는 건 실은 굉장히 위험성들이 따르거든요.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직원 사무공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1)

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탈의실, 목욕탕 외의 오픈 공간에 설치

CCTV는 원장님 말씀대로 어디 그 오픈되지 않는 공간. 자기가 사생활 보호되지 않는. 저도 아이가 시설에 있다 보니 탈의실이나 목욕탕 이런데 외에는 그냥 CCTV는 자연적으로 설치를 해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뭔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참여자4)

### 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논의 중 가장 고려 점)

#### 가) CCTV 영상 보관 기간의 연장과 고퀄리티 CCTV 설치

첫째는 CCTV가 기록되는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유치원에서 학대사건이 났는데 3개월 밖에 기록이 안되서 5개월 전 난 거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이 정도면은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록이 되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번째는 이왕 CCTV를 설치할 때 그래도 성능이 좋은걸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애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CCTV는 그 CCTV 화질이 좋은, 성능이 좋은 걸로 설치를 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보는게 아니라 그건 경찰이 보는 거겠죠. 봤을때 딱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2가지를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자3)

#### 나) 사적공간과 공용공간 구분, CCTV 설치의무화 선행기관 검토 필요

사적공간하고 공용공간. 이걸 명확하게 그걸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제언이라고 할까요. CCTV 설치의무화를 지금 현 실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면 설치 전 후 학대건수 감소화 그 다음 실효성 등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보완점을 찾아본다면 장애인 시설에 CCTV 설치 후의 혼란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참여자2)

#### 다) 이해 당사자들의 인권의 최소한 보호와 설치에 대한 의사 반영 고려

핵심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먼저이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의 인권이 최소한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종사자 입장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있어서 제안들. 그 다음에 참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이 필요하겠지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거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의 관리감독. 명확하게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1)

라) 시설 거주자나 종사자들 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함

종사자나 거주자나 거기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분들이나 서로가 서로를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무조건 CCTV는 설치가 되어야 하고. CCTV 16대를 설치하여 모든 종사자나 시설에 머물고 있는 중증장애우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주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장애인 모든 시설에 CCTV 설치하는 당연히 하루속히 의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장애우 부모로써 부탁드립니다.

(참여자4)

## 5. 소결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의 FGI’를 위하여 9개의 질문지를 구성하여 3개의 핵심 주제로 탐색하여 제언에 이르게 되었다. FGI의 대상은 거주시설의 공공후견인, 당사자 부모, 인권지킴이단 소속의 부단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ZOOM을 활용한 화상 채팅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해당사자 그룹의 FGI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과 시설 내 CCTV 설치 시 고려 부분 및 설치 기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이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도입 목적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종사자, 시설 모두의 안전사고 예방, 시설 안전관리와 인권침해 발생 시 객관적 판단자료 확보, 사후 대책을 위한 보조장치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장애인 학대 발생과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 처리 과정과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이용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일탈, 기관 운영의 철학,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언급하였다.

학대방지 위한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은 4명의 참여자 모두 CCTV 설치 의무화에 긍정적 반응을 하였다. 즉, 시대 추세를 따라 설치 필요하며, 설치 목적, 설치 내용, 범위에 대한 제약, 사생활 보호가 전제된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 대비, 학대로부터 장애인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장애인 학대 예방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4를 제외한 참여자1, 2, 3은 CCTV가 장애인 학대 예방의 근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대안으로는 외부 인권위원회 조직과 탈시설 로드맵 기조에 따른 탈시설을 지향하였으며, 학대 가해자의 처벌 강화 규정 마련,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시설이 사라진다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거론이 있었다.

시설 내 CCTV 설치 시 고려 부분과 설치기준 마련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거주인들 자체의 분쟁과 갈등 해결과 시설장, 장애인, 종사자, 시설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였다. 시설장 측면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종사자 측면에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로 인한 인권 보호와 거주인 측면의 시설 내 안전 생활 담보, 인권침해 예방 및 학대 감소를 참여자1은 대상자 분류를 통해 정리하였다. 참여자4는 효과를 수치화하여 긍정적 효과에 90%, 부정적 효과에 10%의 매김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생활 감시라는 불편한 선입관이 존재하며, 시설 측면에서 CCTV로 인한 당사자 간 갈등 문제 확대와 종사자 측면에서 사기 저하, 심리적 위축, 직무수행의 어려움 초래, 거주인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로 심리적 위축 문제 발생, 가족 측면에서 시설 학대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 시설과 종사자 간 관계 설정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는 CCTV 효과에 대한 대상자(종사자, 거주인)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휴게 시간과 허락된 장소 설치

필요를 언급함으로 시간과 장소의 규정안에서 마련 기준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장애인의 사적 생활 노출을 고려한 설치 장소 선정 마련, CCTV의 열람 권한 규정, 보존에 법적 제약 장치(열람자 권한 부여, 열람 근거의 법제화, 열람 기록)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인사생활 공간 미설치와 CCTV 설치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CCTV 설치 최소화, CCTV 설치목적의 명확화, 설치 후 관리 활용 명확화(관리절차 활용(열람) 불이행시 과징금, 행정조치 등)등이 거론되었다.

CCTV 설치 시 특별히 고려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차원에서는 전문 직업성 존중에 의한 상쇄 효과와 기관 차원의 CCTV 담당자 지정(정보주체 보호차원) 및 영상정보 수집, 저장, 관리와 열람 기준마련과 설치비용의 정부 차원의 지원, 설치 후 정부의 관리 감시기능 작동(보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종사자 측면에서 위축 완화가, 기관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설명, 관리 절차, 지자체 차원에서는 운영현황이나 설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분절화), 지침 명확화를 강조하였다. 특별히 종사자, 기관 차원에서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자체, 정부 차원의 100% 비용 지원, 정부의 대대적인 비용 지원과 중앙 통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 되었다.

CCTV 설치 의무화 기준마련을 위해서 부적절한 장소로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장소로 화장실, 거주인 개인 방, 탈의실, 목욕탕이 나왔으며 사적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설치 최소화를 통해 종사자들의 감정적 저항을 긍정적인 공감으로 이끌기 위한 설명회, 토론회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설치 장소로는 사무실 출입문, 물리치료실, 오픈 공간을 위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CCTV 영상 보관 기간의 연장(기본 1년까지)과 고퀄리티 CCTV 설치에 대한 제언이다. 현재 영상 보관 기간이 3개월~5개월으로는 장애 학대 사건을 유추하고 찾아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CCTV 화질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서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준비하여야 설치 의무화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적공간과 공용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효성을 살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CCTV 설치에 대한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모두의 인권이 최소한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 모든 과정이 인권임을 강조하였으며 관리 감독을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시설 거주자나 종사자들 보호 차원에서 조속한 의무설치를 제안하였다. 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CCTV는 무조건 필요하며 모든 장애인들과 종사자 서로의 보호 차원에서 설치 기능을 강조하였다.

## 제5절 요약소결

장애인거주시설 확대 방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를 위하여 일반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네 집단’(전문가, 종사자, 장애인당사자, 이해당사자)을 통한 FGI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 상황을 감안하여 전문가 집단과 종사자 집단은 ZOOM을 통한 비대면 인터뷰를,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면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네 집단’의 FGI 결과는 내용상 공통적인 내용과 차별성을 가지고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는, 공통적인 내용이다,

CCTV 설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일반적 기능인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 조치기능,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 강조되기에 50% 이상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였다. 즉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부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 문제 발생이 주는 현안적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 장소로 개인공간을 제외한 생활공간과 위험 지역의 위험성을 위해 필요하며, 외부 현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용인 보호하의 제한 적인 설치와 비용 지원 및 연구 대상 확대의 필요 공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열람의 통제 필요도 추가하였다.

CCTV설치의 기저에 있는 장애인 확대를 다룸에 있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근본적 구조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전환적 사고를 통해 거시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차별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인터뷰 집단의 역할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 되어진 차별화 된 제언을 근거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는 종사자 집단의 입장이다.

종사자 집단의 제언은 이용인 보호하의 제한적인 설치와 비용 지원 및 연구의 대상의 확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장애인들이 CCTV 설치하는 것이 싫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할 수 있는 권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로 한정된 현재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일반 학교, 일반 사무실 등 같은 맥락으로 다루어지길 강조하였다. 더불어, 복지부의 전환적 사고를 통해 탈시설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 플랜하의 사회적 기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 마련과 인권침해 관련하여 종사자의 업무과정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인력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구축 등 대안 모색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 집단의 입장이다.

전문가 집단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CCTV는 최후의 보루로 다루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설치 장소와, 보관 기간에 추가하여 유동성 있는 설치 시간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CCTV 설치 의무화 검증 여부 프로그램과 CCTV를 거주시설에 설치해야 한다면 CCTV의 기능확대를 추가하여 위험 감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용자에게 CCTV 설치 고지와 설치 이유,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구체적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CTV 설치 비용은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의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사례들을 활용하여 구체적 논의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다.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을 재차 제스처와 함께 표현하였다. 공간적 차원에서 개인공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해당사자의 입장이다.

CCTV 도입 목적으로 종사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이용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를 이야기 하였으며 개인의 일탈, 기관 운영의 철학, 시설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원인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였다. 더불어, CCTV 영상 보관 기간의 연장(기본 1년까지)과 고퀄리티 CCTV 설치를 통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해 당사자들 인권의 최소한 보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CCTV 설치에 대한 의사 반영이 골고루 반영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CCTV 효과에 대한 대상자(종사자, 거주인)들의 교육으로 인식의 전환 과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하였다.

CCTV가 장애인 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순 없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권위원회 조직과 탈시설 로드맵 기조에 따른 탈시설을 지향,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거주 형태와 함께 학대 가해자의 처벌 강화 규정 마련을 제시하였다.

CCTV 설치 시 특별히 고려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 차원에서는 전문 직업성 존중에 의한 상쇄 효과와 기관 차원의 CCTV 담당자 지정(정보주체 보호차원) 및 영상정보 수집, 저장, 관리와 열람 기준마련과 설치비용 지원, 그리고 설치 후 정부의 관리 감시기능 작동(보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종사자 측면에서 위축 완화가, 기관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설명, 관리 절차, 지자체 차원에서는 운영현황이나 설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지침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제2절 연구제언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운영관리 규정과 지침  
및 예산추계

## 제6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연구결과

#### 1. 선행연구와 외국 법 제도의 함의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CCTV 설치 장소와 CCTV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다른 복지시설의 CCTV 설치에 관한 등장 배경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 이슈는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주된 입법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 보안이다. 이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동의 인권 확보와 학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충분한 학술적 및 제도적 사전검토 없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된다(정순원,2017; 조재현,2015).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2021년 12월 21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요양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수급자와 종사자가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라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두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학대 방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상 기록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연 1

회 이상 CCTV 설치 등을 조사하고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CCTV 설치현황과 설치장소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9] 사회복지기관 CCTV 설치현황

| 연구보고서/기관                                                     | 설치현황  | 설치장소                                                                   |    | 설치개수      |      |
|--------------------------------------------------------------|-------|------------------------------------------------------------------------|----|-----------|------|
| 부산수영구<br>노인복지관(2020)                                         | 설치현황  | [4층] E/V 앞, 강당                                                         |    | 2대        |      |
|                                                              |       | [3층] E/V 앞, 수영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    | 3대        |      |
|                                                              |       | [2층] E/V 앞, 게이트볼장, 실외기 앞                                               |    | 3대        |      |
|                                                              |       | [1층] 출입구,                                                              |    | 1대        |      |
|                                                              |       | [지하1층] E/V 앞, 지하주차장(입구, 정면)                                            |    | 3대        |      |
|                                                              |       | [실외]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좌, 우)                                            |    | 3대        |      |
|                                                              |       | [기타] E/V 내부                                                            |    | 1대        |      |
| 정신요양시설<br>은혜원(2022)                                          | 설치현황  | 본관                                                                     |    | 신관        |      |
|                                                              |       | 지하실                                                                    | 1대 | 세탁실       | 1대   |
|                                                              |       | 출입문(뒤)                                                                 | 1대 | 세탁장입구     | 1대   |
|                                                              |       | 작업장                                                                    | 1대 | 연결통로      | 1대   |
|                                                              |       | 3층복도                                                                   | 1대 | 2층생활관 복도  | 2대   |
|                                                              |       | 식당                                                                     | 1대 | 2층생활관 휴게실 | 1대   |
|                                                              |       | 강당                                                                     | 2대 | 3층생활관 복도  | 2대   |
|                                                              |       | 1층복도                                                                   | 2대 | 3층생활관 휴게실 | 1대   |
|                                                              |       | 2층복도                                                                   | 2대 | 옥상흡연장/기계실 | 각 1대 |
| 「어린이집<br>영상정보처리기기<br>설치·운영<br>가이드라인」에<br>대한 개선방안<br>연구(2020) | A어린이집 | 설치카메라 대수: 53대<br>보육실 26대, 공동놀이실 1대, 놀이터 6대, 식당 4대, 복도/현관 5대, 건물 외부 11대 |    |           |      |
|                                                              | B어린이집 | 보육실 7대, 공동놀이실 1대, 현관 1대, 조리실 1대                                        |    |           |      |
|                                                              | C어린이집 | 보육실 8대, 공동놀이실 3대, 복도/현관 2대, 건물 외부 1대, 기타 1대                            |    |           |      |
|                                                              | D어린이집 | 보육실 3대, 공동놀이실 1대, 실외놀이터 1대, 현관 1대, 건물 외부 1대                            |    |           |      |
|                                                              | E어린이집 | 보육실 5대, 놀이터 4대, 현관 1대, 자료실 1대                                          |    |           |      |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실태와 지원방안 연구(2020)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0]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현황

|  | 노숙인<br>시설 | 노인시설 | 아동시설 | 장애인<br>거주시설 | 정신건강<br>증진시설 | 한부모<br>가족 | 전체 |
|--|-----------|------|------|-------------|--------------|-----------|----|
|--|-----------|------|------|-------------|--------------|-----------|----|

|                     |                                     |        |         |        |        |      |         |
|---------------------|-------------------------------------|--------|---------|--------|--------|------|---------|
|                     |                                     |        |         |        |        | 복지시설 |         |
| 시설수                 | 4                                   | 1,642  | 849     | 311    | 64     | 12   | 2,870   |
| CCTV 설치시설 수         | 4                                   | 1,249  | 324     | 164    | 23     | 9    | 1,764   |
| CCTV 설치율            | 100%                                | 76.07% | 38.16%  | 52.73% | 35.94% | 75%  | 61.52%  |
| CCTV 수              | 비공개 장소 <sup>18)</sup>               | 7      | 9,465   | 468    | 385    | 21   | 10,346  |
|                     | 공개 장소 <sup>19)</sup>                | 75     | 110,108 | 1,238  | 1,144  | 136  | 112,701 |
|                     | 전체                                  | 82     | 119,573 | 1,626  | 1,529  | 157  | 122,967 |
| 촬영고지 <sup>20)</sup> | 안내판 설치                              | 70     | 6,311   | 944    | 729    | 101  | 8,155   |
|                     | 홈페이지 게시                             | -      | 1,456   | 35     | 72     | 1    | 1,564   |
|                     | 기타 <sup>21)</sup>                   | -      | 924     | 64     | 26     | 4    | 1,018   |
| 영상정보<br>보유기간        | 1개월 이내                              | 26     | 8,333   | 763    | 647    | 90   | 9,859   |
|                     | 1~3개월                               | 56     | 3,472   | 539    | 621    | 51   | 4,739   |
|                     | 1년 초과                               | -      | 114     | 26     | 1      | 1    | 142     |
|                     | 목적 외 이용 <sup>22)</sup>              | -      | 4       | 1      | 6      | -    | -       |
|                     | 제3자 제공 <sup>23)</sup>               | -      | 49      | 3      | 5      | 1    | 58      |
|                     | 정보 주체<br>열람 존재<br>청구 <sup>24)</sup> | 청구     | 14      | 76     | 1      | 13   | -       |
|                     |                                     | 허용     | 14      | 80     | 3      | 12   | -       |

자료 : 경기도 복지정책과 행정자료: 2020년 8월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은“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 가정에서 제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장애인에게 일상적 보호, 생활환경 정비, 주거공간 제공 등의 보호적 기능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적·문화적 그리고 변호적 기능 등의 개별적 보호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인권과 사생활침해라는 중요한 자유권의 충돌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동의들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들은

18) 직원 등 허가된 인원 외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예:전산실 등 출입제한 구역)

19) 불특정 다수(민원인 등)가 출입이 가능한 장소(예:도로, 공원, 민원실 등)

20) 촬영 사실 고지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 39조에 근거하여 제시

21) 기타는 관보 또는 지역신문 게시,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 CCTV 대수

22) 행정예고, 안내판 등에 게시한 영상정보 수집목적 이외에 이용한 건수(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표준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0조)

2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또는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 이외의 제3자(경찰, 법원 등)에 제공한 건수(법률 근거 상동)

24) 정보 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청구 및 제공 건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4조)

범죄예방과 안전사고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의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공동이용 장소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고 있지만, 개인 사생활공간인 침실과 욕실, 화장실 등과 같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은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정보보호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EU의 GDPR이나 영국, 미국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지향점과 유사한 것이지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오히려 정보의 처리에 다소 관대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에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4월 현재(4차개정)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간되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와 관련하여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의 설치에 관한 법령은 1개조문밖에 없으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법에 따라 Regulation은 각국의 입법절차를 거치는 문제와 관계 없이 발효와 동시에 EU회원국에 적용된다.)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도 그렇듯이,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CCTV가 범죄예방과 인권보호에 효율적인 도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CCTV 설치에 대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각 기관의 ‘개호서비스정보(운영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이용자(노인) 및 가족에게 사전에 요양기관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서비스에

대한 질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우는 개인정보 이용을 확대하고 있고 있으며, CCTV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지자체나 노인 및 장애인시설에 CCTV의 설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설치문제는 장애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대립적인 이익이 존재하고 있어 마치 정보의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대립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내의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을 우리 사회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내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한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50건이 이르고 있으며, 또한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약 600건에 이른다. 이 중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며 시설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적장애인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CTV가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시설 외의 일부 시설들을 방문 조사하여 CCTV 관련 현황 및 실태를 파악 후 장애인거주시설 CCTV 의무화 연구에 개선 적용점을 찾고자 하였다. 방문 기관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그 밖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 등을 방문 조사하여 CCTV 설치 목적과 위치, 운영실태, 비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시설의 종사자들은 휴식시간에 감시카메라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CCTV 설치 시 시설 종사자가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CCTV의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방문 결과 종사자들의 장소별 CCTV 설치 적합성에 대해서는 ‘방법과 안

전을 위한 실외 공용공간’, ‘공용출입구’, ‘공동프로그램 공간과 공용복도’, ‘옥상 및 복도’, ‘식당 및 조리실’ 등의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시설 내 차량 승하차 시 위험하므로 주차장에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내의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지역가정 특성상 CCTV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있으며, 설치가 된 경우에는 현관입구와 베란다 등 출입을 확인하는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미 국내의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의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거주시설내의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공감은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다만, 올해 여름 장애인거주시설의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개별 시설 내의 CCTV 설치운영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 등의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 3. 장애인거주시설 CCTV 관련 인식조사 결과 함의

장애인거주시설 확대 방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연구를 위하여 종사자, 인권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 등을 통한 FGI 를 실시하였다. 먼저는, 공통적인 내용의견으로는 CCTV 설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일반적 기능인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 조치기능, 개인의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역할이 더 강조되기에 50% 이상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현하였다. 즉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부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 문제 발생이 주는 현안적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 장소로 개인공간을 제외한 생활공간과 위험 지역의 위험성을 위해 필요하며, 외부 현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용인 보호하의 제한적인 설치와 비용 지원 및 연구 대상 확대의 필요 공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열람의 통제 필요도 추가하였다.

종사자와 전문가 집단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CCTV는 최후의 보루로 다루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설치 장소와 보관 기간

에 추가하여 유동성 있는 설치 시간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였다.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을 재차 제스처와 함께 표현하였으며, 공간적 차원에서도 개인공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다.

CCTV가 장애인 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순 없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권위원회 조직과 탈시설 로드맵 기조에 따른 탈시설을 지향,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거주 형태가 나와야 함과 학대 가해자의 처벌강화 규정 마련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 제2절 연구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그렇듯이,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인 삶의 공간이기에 더더욱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의 CCTV 설치와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거주인들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그 개인정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처리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공용 공간에 국한되어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의미하는 공용공간<sup>25)</sup>이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CCTV 설치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21년 4월에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공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안)과 CCTV 설치

25) 예를 들면, 주 출입구를 포함한 정문과 후문, 시설 외벽이나 건물 진입통로, 건물 복도 및 연결통로, 다목적홀과 같은 다수가 함께 하는 공간들이며 그 밖의 옥상이나 운동장, 식당, 강당, 사무실 등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운영 지침(안)”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내의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이미 도입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애인거주시설내의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학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CCTV 설치 운영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전환적 사고를 통한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의 거시적 정책 마련을 위한 장기적 플랜하의 지역 내 사회적 기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마련과 인권침해 관련하여 종사자의 업무과정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인력 지원의 소프트웨어적 시스템 구축의 대안 모색 역시 필요해 보인다.

셋째, 향후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시·군·구의 재정 능력이 매우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은 중앙정부의 복지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IoT와 AI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돌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거주시설 돌봄 공백과 거주인의 안전을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을 살려 접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역시 근래에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과 거주인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 향후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돌봄사업과 병행하여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 제3절 장애인거주시설 CCTV설치 운영관리 규정과 지침 및 예산 추계(안)

#### 1.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 정 0000년 00월 00일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의 집(가칭)」(이하 ‘시설’로 약칭함) 이용인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화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CCTV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CCTV의 설치·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설치 운영·관리 규정」(이하 ‘이 규정’으로 약칭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

### 제4조(책임관 및 담당부서)

시설의 CCTV에 대한 책임관은 시설장이고, 설치 및 운영관리는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하며, 운영지원팀에는 CCTV관리자를 둔다.

### 제5조(운영관리)

① CCTV 주장치는 주사무실에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고, 열람·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1. 책임관

2. CCTV관리자

3. 책임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해 점검 사항리스트를 작성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책임관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① CCTV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CCTV는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비 특성 및 보유목적에 따라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의견수렴)

책임관은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때 CCTV의 설치 목적 및 그 적합성, 설치 위치, 수량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판 설치)

CCTV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책임관
2. CCTV관리자

###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 제9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확인,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안 된다.

####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부 칙

이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2.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운영 내부 지침

「안전의 집」은 「CCTV 설치·운영 지침」을 통해 우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안전의 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우리 시설의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거주자의 안전 확보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물 및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방지

### 2. CCTV의 위치, 설치된 개수 및 촬영범위

| 설치 위치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
| 1층    | 4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내부</li> <li>- 복도(좌)(식당 입구, 세탁실 입구)</li> <li>- 복도(우)(사무실 입구, 화단 입구, 상담회의실 입구, 곡식 창고 입구),</li> <li>- 조리실 내부</li> </ul>                |
| 2층    | 3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생활실 복도<br/>(각 생활실·화장실 입구, 사무공간, 계단입구, 의무실 입구)</li> <li>- 남자생활실 복도<br/>(각 생활실·화장실 입구, 사무공간, 중앙계단입구, 의무실 입구)</li> <li>- 중앙거실</li> </ul> |
| 3층    | 3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계단</li> <li>- 복도(작업치료실입구, 다목적실입구)</li> <li>- 하늘공원(복도, 공방, 계단창고, 옥상연결계단)</li> </ul>                                                    |

|           |    |                                                                         |
|-----------|----|-------------------------------------------------------------------------|
| 옥상        | 1대 | - 옥상(좌) (컨테이너 및 빨래건조대)                                                  |
| 외부        | 3대 | - 현관입구(자동문입구, 계단, 경사로)<br>- 조리실 뒷문(뒷문입구, 도로)<br>- 시설뒷문(자동문입구, 쓰레기분리수거장) |
| 시설<br>주차장 | 1대 | - 시설주차장(주차장, 진입로, 주차장앞도로)                                               |
| 합계        |    | 총 15대                                                                   |

### 3. CCTV 관리책임자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책임관     | 오리온 | 시설장 | 안전의 집 | 010-***-**** |
| CCTV담당자 | 정중앙 | 직원  | 운영지원팀 | 010-***-**** |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1층 사무실 |

－ 촬영된 영상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주체가 열람·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책임관에게 연락을 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확인장소 : 시설내 1층 사무실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안전의 집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삭제를 책임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각 신청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이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설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 집」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CCTV 설치·운영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이내에 시설

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장애인거주시설 CCTV 설치 운영시 소요예산 추계(안)

#### 1) 연간 소요예산

(1) 위탁업체 : 월 25만원×12월×거주시설 수 787개소 = 약 23억 6천만원

월 5만원× 12월×공동생활가정 770개소 = 약 4억 6천만원

- 매년 약 28억 정도 소요 됨.

(2) 기능보강 설치(1회 설치) : 800만원 × 거주시설 수 787 개소 = 약 63억

300만원 × 공동시설 수 770 개소 = 약 23억

- 내용연수와 CCTV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내용연수를 8년으로 하고, 운영비, 수리비 등 운용비용을 설치비의 50%를 추가 산정 하면

- 86억 + (86억 × 50%) = 약 130억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무정전전원장치(10년) △화상분석시스템(9년) △경보장치(9년) △출입통제시스템(9년)  
△보안용카메라(7년) △감시용녹화기 또는 녹음기(7년) △영상신호보상기(9년) △비디오 모니터(7년)  
△무인교통감시장치(7년) 등

\*\* 조달청고시에는 CCTV 내용연수가 8년으로 규정되어있고, 설비들이 내용연수 차이로 일부 설비만 교체되는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는 보안방법설비 내용연수를 6년으로 개정 요청

○ 내용연수와 운용비용을 포함한 8년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합계         |
|------|-----|----|----|----|----|----|----|----|------------|
| 위탁업체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24        |
| 기능보강 | 130 |    |    |    |    |    |    |    | 130        |
| 차이   | -   |    |    |    |    |    |    |    | <b>△94</b> |

1. 8년간 소요예산의 경우 위탁업체 224억과 기능보강 130억으로 소요예산은 약 94억원 정도 차이가 있음

## 2. 장단점비교

－ 위탁업체: (장점) 개인정보 보호법(CCTV) 전문가 관리·운영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관리할 수 있음

(단점) 매월 관리비용 소요 및 물가인상분 증가 요인

－ 기능보강: (장점) 운용비 및 관리비용 예산 절감

(단점) 시설 운영자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가능성 존재

## ○ 내용연수와 운용비용을 포함한 13년간 소요예산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합계          |
|------|---------------------|----|----|----|----|----|----|----|----|----|----|----|----|-------------|
| 위탁업체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28 | 364         |
| 기능보강 | 86억+(86억*50%) = 130 |    |    |    |    |    |    |    |    |    |    |    |    | 130         |
| 차이   | -                   |    |    |    |    |    |    |    |    |    |    |    |    | <b>△234</b> |

## ○ 종합의견

1. 기능보강 소요예산 산출시 내용연수와 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할 필요성 있음.

2. 8년간 추계 소요예산 산출을 통해 위탁업체는 224억, 기능보강은 130억 원으로 위탁업체와 기능보강 비용의 차이는 대략 94억 정도로 예산 추계에서는 기능보강이 소요예산 비용의 우위를 나타냄

3. 한편 위탁업체 운영시 개인정보 관리, 유출 방지 등 전문가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최근 추가 기능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비교하여 장단점의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문헌

- 구자연, 정유나(2020)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20-03. 육아정책 연구소.
- 김승환(2011) CCTV와 인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국가인권위원회, 2013.
- 김정수(2019)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62) 255~290
- 김진(2019)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관리 방안 연구: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 연구*. 18(2). PP.157~171.
- 김진·김희성(2018) 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11) 467~480
- 김진·조문기(2020) 노인복지시설 CCTV(전자감시체계) 설치 제도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본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0(75). 143~168
- 나달숙(2011)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 연구”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 문병호(2007)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CCTV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규정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문용필·이호용(2017)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4(1). 67~95
- 변지훈(2020) CCTV의 활용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 어린이집, 수술실과 안면인식 CCTV의 운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희정, 원도연, 이숙현(2020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CCTV 운영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GGWF REPORT 2020-14. 경기복지재단.
- 심지선(20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재·신수진(2021) 노인복지시설 CCTV 설치에 대한 시설 종사자와 보호자의 인식. *노인간호학회지*. 23(3). 239~248.
- 이지연(2017). 보육교사의 CCTV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관계의 조절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2). 31~48.
- 임지봉(2013)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전현욱(2021).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刑事政策*. 33(1).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021). 보건복지부. 181~208.

차선희·이진숙(2016).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의 경험. *비판사회정* 책. 51. 292~325.

Rachel Abrams, “Target to Pay \$18.5 Million to 47 States in Security Breach Settlement”, The New York Times, May 23. 2017.

<https://www.nocutnews.co.kr/news/5538387>, CBS노컷뉴스 2021.04.20.

<https://www.nytimes.com/2017/05/23/business/target-security-breach-settlement.html> (2022.3.5. 최종방문).

BBC NEWS, “Timeline: Winterbourne View abuse scandal”, 10 Dec. 2012. <<https://www.bbc.com/news/uk-england-bristol-20078999>> (2022.4.5. 최종방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urveillance-camera-commissioner> (2022.4.5. 최종방문).

## 부록1. 개인정보처리 규정(안)

### 개인정보처리 규정(안)

#### 가.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0000 집(이하 “시설”이라한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시설의 개인정보처리는 다음의 처리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2. 복지서비스의 제공 :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입소상담에서부터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계획, 진행, 평가와 이용요금납부, 그리고 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3. 인사관리 : 시설의 근로자등(근로자, 입사지원자, 퇴직자등)에 대한 인사관리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4. 기타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등의 업무처리 : 시설에서 후원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에 해당실적을 등재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시설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시설의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의 진행중인 경우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복지서비스의 제공 : 시설에 입소하기 전 상담단계에서부터 진행되는 기초조사에서부터 시설이용계약 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각종 복지서비스제공단계, 그리고 이용계약종료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개별사유의 종료시까지

3. 인사관리 : 시설에 입사지원한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해 제출된 각종지원서류에서부터 정규직원들의 인사노무관리, 퇴직이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개별사유의 종료시까지

4. 기타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등의 업무처리 : 시설에서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등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개별사유의 종료시까지

라. 제 4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시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거주장애인 및 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 및 법정서류 / 관할 지자체

2. 거주장애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복지증진 / 보험사(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3. 거주장애인의 특수교육 지원 / 담당 학교 및 교육청

4. 직원들의 교육지원 / 교육담당기관

5. 직원들의 채용관련 / 관할 지자체(신원조회), 관할 경찰서(범죄경력조회), 사대보험사, 신용보증업체, 세무서등
6.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보고 / 관할 지자체 및 해당 시스템
7.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등

마.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부주체는 시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정정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시설에 대해 서면, 전화, 전화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시설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한다.

③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설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바.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시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등)
2. 복지서비스의 제공 : 개인식별정보(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본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정보, 종교등), 가족사항(가족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근무처, 직위, 거주지등), 학력사항(재학기간, 학교, 전공, 졸업여부등), 건강사항(각종의료정보, 수급자격여부등), 기타사항(재산사항, 혼인여부, 주거상황, 종교등)

3. 인사관리 : 개인식별정보(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본적,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정보, 종교등), 가족사항(가족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근무처, 직위, 거주지등), 학력사항(재학기간, 학교, 전공, 졸업여부등), 경력사항(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세무관련등), 병역사항(군별, 병과, 계급, 제대여부, 복무기관, 미필사유등), 건강사항(각종 의료정보, 수급자격여부등), 기타사항(재산사항, 혼인여부, 주거상황, 종교, 각종 자격사항, 면허등)

4. 기타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등의 업무처리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활동실적등)

#### 사.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시설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정부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파기절차 : 시설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시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2. 파기방법 : 시설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 아.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시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고유식별정보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자.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 : 사무국장

연락처 : 041)123-\*\*\*\*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기획행정팀

연락처 : 041)456-\*\*\*\*

② 정보주체 당사자가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즉각적인 답변 및 처리하도록 한다.

차. 제 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기획행정팀

연락처 : 041)456-\*\*\*\*

카. 제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등을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타. 제 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설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 시설의 주요시설물에 8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기획행정팀 / 담당팀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시설의 사무실과 C동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게 요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조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부 칙

파.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하.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록2. 개인영상정보(CCTV)처리 규정(안)

# 개인영상정보(CCTV) 처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안전의 집(가칭)**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거주인과 직원 및 내방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정소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총괄·운영책임관 지정)** **안전의 집(가칭)**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안전의 집(가칭) 원장**으로, 설치 및 관리책임관은 사무국장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각 팀 팀장으로 지정한다.



**제4조(카메라 설치현황) 안전의 집(가칭)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            |             |                  |             |
|------------------|------------|-------------|------------------|-------------|
| <b>설치<br/>위치</b> | 상담실<br>(1) | 주출입구<br>(1) | 상담실 겸 원장실<br>(1) | <b>총 3대</b> |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기관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기관장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안전의 집(가칭)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자동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제9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① 관련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그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열람, 제공, 파기 시 반드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재생 장소)** 개인영상정보는 관리팀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는 관리팀에서 열람 재생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도와 00시·군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_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                                                                                                                                   |                      |  |           |        |
|-----------------------------------------------------------------------------------------------------------------------------------|----------------------|--|-----------|--------|
| 개인영상정보(□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  |           | 처리기한   |
|                                                                                                                                   |                      |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소                   |  |           |        |
| 정보주체의<br>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 청구내용                                                                                                                              | 영상정보<br>기록기간         |  |           |        |
|                                                                                                                                   | 영상정보<br>처리기기<br>설치장소 |  |           |        |
|                                                                                                                                   | 청구목적<br>및 사유         |  |           |        |
| <p>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br/>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p> <p>2022년      월      일</p> <p>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안전의 집(가칭) 원장 귀하</p> |                      |  |           |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

【별지 제2호】 서식\_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형태 | 담당자 | 목적/사유 | 이용·제공받는<br>제3자/열람 등<br>요구자 | 이용·제공근거 | 이용·제공형태 | 기간 |
|----|--------------------------------------------------------------------------------------------------------------------------|----|--------|-----|-------|----------------------------|---------|---------|----|
| 1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br><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파기 |    |        |     |       |                            |         |         |    |
| 2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br><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파기 |    |        |     |       |                            |         |         |    |
| 3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br><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파기 |    |        |     |       |                            |         |         |    |
| 4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br><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파기 |    |        |     |       |                            |         |         |    |
| 5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br><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파기 |    |        |     |       |                            |         |         |    |
| 6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br><input type="checkbox"/> 열람<br><input type="checkbox"/> 파기 |    |        |     |       |                            |         |         |    |

### 부록3.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안)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안)

### 제 1 장 총 칙

#### 거. 제 1 조 (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0 00 0 집(이하 ‘시설’이라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너. 제 2 조 (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 더. 제 3 조 (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개인정보관리실무자”라 함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시설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

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리.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① 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시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실무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며.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前 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시설 전 직원에게 공표한다.
- ② 내부관리계획은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버. 제6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1. 시설의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서. 제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 관리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5.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실무자로 임명한다.

④ 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어.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시설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저. 제9조(물리적 접근제한)

-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처. 제10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터.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퍼. 제13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 제14조(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

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분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고. 제15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장 정기적인 자체감사

노. 제16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도. 제17조(자체감사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로.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모. 제19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보.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소.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록4. CCTV설치 운영 규정(안)

### CCTV설치 운영 규정(안)

#### 제 1 장 총 칙

##### 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에 따라 000 집의 CCTV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 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

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자를 말한다.

#### 초.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이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등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코.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 토. 제5조(CCTV 설치의 목적)

0000 시설 각시설물의 내·외부와 주차장, 시설 출입구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설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 포. 제6조(담당부서, 책임관 지정)

CCTV 설치·운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행정팀으로 하고 관리책임관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 호. 제7조(CCTV 대수·위치·성능 등)

시설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시설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시한다.

| 구분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설치대수 | 비고    |
|----|-----------|--------------|------|-------|
| 1  | 출입문 바깥쪽   | 시설 진입로       | 1    | 칼라 촬영 |
| 2  | 시설 외벽     | 시설 돌계단 앞 도로  | 1    | 〃     |
| 3  | 출입문 안쪽    | 출입문 내부 및 복도  | 1    | 〃     |
| 4  | 남자생활관 복도  | 남자생활관 복도     | 1    | 〃     |
| 5  | 휠체어 통로 상단 | 남자생활관 휠체어 통로 | 1    | 〃     |
| 6  | 여자생활관 중정  | 여자생활관 중정     | 1    | 〃     |
| 7  | 여자생활관 통로  | 여자생활관 통로     | 1    | 〃     |
| 8  | 다목적홀      | 다목적홀         | 1    | 〃     |
| 9  | 남자생활관 앞   | 남자생활관 앞 쇼파   | 1    | 〃     |
| 10 | 세탁실 연결 복도 | 세탁실 연결 복도    | 1    | 〃     |
| 11 | 남자생활관 중정  | 남자생활관 중정     | 1    | 〃     |
| 12 | 남자생활관 통로  | 남자생활관 앞 통로   | 1    | 〃     |
| 13 | 남자생활관 앞   | 남자생활관 앞 공간   | 1    | 〃     |

구. 제8조(안내판의 설치)

- ①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② 안내판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의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
-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관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부서별 책임관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누. 제9조(공청회의 개최)

- ①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 양론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두. 제10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루. 제11조(화상정보의 관리)

- ① CCTV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되 필요시 일정시간만 촬영 할 수 있다.
-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1호)에 기록 관리한다.

#### 제12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 ①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또는 서버 설치장소)로 한다.
- ② DVR 및 서버가 설치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정한다.
- ③ DVR 및 서버는 CCTV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 ④ 제한구역에 개인정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제한구역 출입대장 에(별지 2호) 기록관리 한다.

#### 무. 제13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제14조(화상정보의 제공)

-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 관리대장(별지1호)에 기록 관리한다.

수. 제15조(정보주체의 권리)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보 칙

#### 제18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한 자는 알게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주.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 추. 제 2 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0 호 서식]

|                                                                                                                                                                                                                                                                                                  |                    |                               |               |        |
|--------------------------------------------------------------------------------------------------------------------------------------------------------------------------------------------------------------------------------------------------------------------------------------------------|--------------------|-------------------------------|---------------|--------|
| <b>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input type="checkbox"/>열람 <input type="checkbox"/>존재확인) 요청서</b>                                                                                                                                                                                                         |                    |                               |               | 처리기한   |
|                                                                                                                                                                                                                                                                                                  |                    |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br>의 관계 |        |
|                                                                                                                                                                                                                                                                                                  | 주 소                |                               |               |        |
| 정보주체<br>인적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청구내용                                                                                                                                                                                                                                                                                             | 청구영상<br>기록기간       |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               |        |
|                                                                                                                                                                                                                                                                                                  | 청구영상<br>설치장소       | (예: 원내장소 기입)                  |               |        |
|                                                                                                                                                                                                                                                                                                  | 청구영상<br>목적<br>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        |
| <p>「장애인복지법」 제0조의 0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input type="checkbox"/>열람 <input type="checkbox"/>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원장 귀하</p> |                    |                               |               |        |

|                                                                                                                                                                                                                                                                    |                                                               |          |     |
|--------------------------------------------------------------------------------------------------------------------------------------------------------------------------------------------------------------------------------------------------------------------|---------------------------------------------------------------|----------|-----|
| <b>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b><br>(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제한 [ ] 제공 등 기타 )                                                                                                                                                                 |                                                               |          |     |
| 수신자 :<br>주 소 :                                                                                                                                                                                                                                                     |                                                               |          |     |
| 요구내용                                                                                                                                                                                                                                                               |                                                               |          |     |
| 열람일시                                                                                                                                                                                                                                                               | 20    년    월    일<br>(오후                ~ 오후                ) | 열람<br>장소 | 교사실 |
| 통지내용                                                                                                                                                                                                                                                               |                                                               |          |     |
| 열람 방법                                                                                                                                                                                                                                                              |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          |     |
| 사 유                                                                                                                                                                                                                                                                |                                                               |          |     |
| 이의제기<br>방    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br>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장애인복지법」 제0조의 제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조의0,<br>「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br>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br>통지합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div><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원장</div> |                                                               |          |     |

[별지 제0호 서식]

|                                                                                                                                                                                                                                                           |            |                |              |        |  |
|-----------------------------------------------------------------------------------------------------------------------------------------------------------------------------------------------------------------------------------------------------------|------------|----------------|--------------|--------|--|
| <b>정 정·삭 제 청 구 서</b>                                                                                                                                                                                                                                      |            |                |              | 처리기간   |  |
|                                                                                                                                                                                                                                                           |            |                |              | 10일 이내 |  |
| 청구인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br>관계 |        |  |
|                                                                                                                                                                                                                                                           | 주 소        |                |              |        |  |
| 정보주체의<br>인적사항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
| 정정(삭제)<br>청구의 내용                                                                                                                                                                                                                                          | 파일명칭       |                | 열람일          | 년 월 일  |  |
|                                                                                                                                                                                                                                                           | 정정(삭제)할 항목 |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              |        |  |
|                                                                                                                                                                                                                                                           |            |                |              |        |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  |
| <p>「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의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0조의 제0항에 따라<br/>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원장 귀하</p> |            |                |              |        |  |

[별지 제0호 서식]

|                                                                                                                                                                                                                                                                |   |               |  |      |  |
|----------------------------------------------------------------------------------------------------------------------------------------------------------------------------------------------------------------------------------------------------------------|---|---------------|--|------|--|
| 번 호                                                                                                                                                                                                                                                            |   |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      |  |
| 제                                                                                                                                                                                                                                                              | 호 |               |  |      |  |
| ① 수 신                                                                                                                                                                                                                                                          |   | 귀하<br>(주소 : ) |  |      |  |
| ② 개인정보파일명                                                                                                                                                                                                                                                      |   |               |  |      |  |
| ③ 접 수 연 월 일                                                                                                                                                                                                                                                    |   |               |  |      |  |
| ④ 정정(삭제)결정<br>및 거부내용                                                                                                                                                                                                                                           |   |               |  |      |  |
| ⑤ 정정(삭제)거부<br>사유<br>※ 거부시만 작성                                                                                                                                                                                                                                  |   |               |  |      |  |
| ⑥ 담 당 자                                                                                                                                                                                                                                                        |   | 소 속           |  | 직 급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⑦ 그밖의 안내사항                                                                                                                                                                                                                                                     |   |               |  |      |  |
| <p>1.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OOOO원장</p> |   |               |  |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제공)

| 번호 | 구분                                                         | 이용<br>일시 | 요청자 | 파일명<br>/형태 | 이용목적/사유 | 이용<br>시간 | 이용<br>장소 | 담당자<br>확인서명 | 비고 |
|----|------------------------------------------------------------|----------|-----|------------|---------|----------|----------|-------------|----|
| 1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 |          |     |            |         |          |          |             |    |
| 2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 |          |     |            |         |          |          |             |    |
| 3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 |          |     |            |         |          |          |             |    |
| 4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 |          |     |            |         |          |          |             |    |
| 5  | <input type="checkbox"/> 이용<br><input type="checkbox"/> 제공 |          |     |            |         |          |          |             |    |

[별지 00서식]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 번호 | 파일명 | 파일생성일 | 파일 내용 | 삭제·파기 사유 | 파기일 | 파기담당자 | 비고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b>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b> |                                                                                               |
|---------------------------------------|-----------------------------------------------------------------------------------------------|
| <b>목   적</b>                          | <b>거주인 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b>                                                                  |
| <b>촬영시간</b>                           | <b>24시간 연속촬영 / 녹화</b>                                                                         |
| <b>설치장소<br/>(촬영범위)</b>                | <b>출입구, 복도 및 주차장, 운동장, 식당, 강당</b>                                                             |
| <b>담당자</b>                            | <b>책임자 : ○○○○ 원장 ○○○○ [연락처]</b><br><b>운영자 : ○○○○ 국장 ○○○○ [연락처]</b><br><b>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b> |

## 시립 장애인 복지시설 내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요강[취지]

제1조 본 요강은 시립 장애인 복지시설에 설치하거나 시립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운용하는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후나바시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요강 (2012년 후나바시시 요강)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본 요강의 규정은 시립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44조제1항에 규정된 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지정관리업무에 따른 방법 카메라 등을 운용하는 자(이하 "지정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에, 제5조제1항 및 제7조 중 "시장"은 "지정관리자"로 대체한다.

(정의)

제2조 이 요강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법 카메라/범죄방지, 시설의 적정관리, 사고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에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화상의 촬영 장치이며, 기록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방법 카메라 등 방법 카메라, 화상표시장치, 화상기록장치, 기타 부속물을 말한다.

(3) 화상 방법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며 즉시 화상 표시장치에 의해 표시되는 화상 (음성 포함 이하 동일)을 말한다.

(4) 화상 데이터 방법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고 화상기록장치 또는 외부기억매체에 기록된 화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열재생화상, 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화상데이터를 말한다.

(시장 등의 책무)

제3조 시장은 시민 등이 승낙 없이 임의로 외모·자태가 촬영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 따라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또는 운용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쓴

다.

2 시장은 화상 및 재생화상, 화상데이터(이하 "화상데이터 등"이라 한다)로부터 알아낸 내용의 유출, 화상데이터의 훼손, 멸실 및 조작 방지, 기타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확보조치"라 한다)를 강구한다.

3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화상 데이터 등으로부터 알게 된 내용을 임의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전항의 규정은 지정 관리자가 지정 관리 업무에 수반해 실시하는 방법 카메라 등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이하 '지정 관리 업무에 수반하는 방법 카메라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 준용한다.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제4조 시장은 시립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사고방지, 범죄예방, 시립장애인 복지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경비 등 수위업무 보조로써 방법카메라 등을 설치한다.

방법 카메라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및 촬영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시설명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촬영범위      |
|---------|---------|------|-----------|
| 호쿠소 육성원 | 신관1층    | 17대  | 신관1층      |
|         | 현관      |      | 현관        |
|         | 엘리베이터 안 |      | 엘리베이터 출입구 |
|         | 신관2층    |      | 신관2층      |
|         | 복도      |      | 복도쪽 출입구   |
|         | 복도      |      | 동쪽 비상 출입구 |
|         | 복도      |      | 서방 비상 출입구 |
|         | 교무실 앞   |      | 엘리베이터 출입구 |
|         | 신관3층    |      | 신관3층      |
|         | 복도      |      | 복도쪽 출입구   |
|         | 복도      |      | 북쪽 비상 출입구 |
|         | 복도      |      | 동쪽 비상 출입구 |
|         | 복도      |      | 서방 비상 출입구 |
|         | 교무실 앞   |      | 엘리베이터 출입구 |
|         | 기존동 1층  |      | 기존동 1층    |
|         | 현관      |      | 현관        |
|         | 홀       |      | 복도쪽 출입구   |
|         | 기존동 2층  |      | 기존동 2층    |
|         | 복도      |      | 동쪽 입구     |
|         | 복도      |      | 서쪽 출입구    |
|         | 복도      |      | 데이룸 출입구   |
|         | 복도      |      | 원장실 옆     |

|                         |                                                      |    |                                                     |
|-------------------------|------------------------------------------------------|----|-----------------------------------------------------|
|                         |                                                      |    | 데이룸 창가 출입구                                          |
| 신체장애인복지작업소<br>태양 등 복합시설 | 기존부<br>현관 홀<br>테라스<br>복도 출입구<br>증축부<br>현관홀           | 4대 | 기존부<br>현관 홀 출입구<br>작업실 출입구<br>슬로프<br>증축부<br>현관홀 출입구 |
| 光風みどり園<br>(시설명)         | 정면 입구<br>주방 외벽<br>현관<br>직원 현관<br>남자 화장실 외벽<br>작업실 외벽 | 6대 | 정면 입구<br>테라스<br>현관<br>직원 현관<br>주차장<br>옥외 작업장        |

(방법 카메라 등 관리자)

제5조 시장은 화상데이터 등으로 부터 알게 된 내용의 유출과 화상데이터의 훼손, 멸실 및 개찬 방지 기타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방법카메라 등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관리자가 없을 경우 미리 관리자가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3 시장이 관리자를 두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방법 카메라 등의 운용을 담당하는 소속 장으로 충원한다. 다만, 해당 소속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 관리자가 지정 관리 업무에 따른 방법 카메라 등 관련 업무를 할 경우는 해당 지정 관리자가 관리자를 정한다.

5 지정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 및 제2항의 관리자가 지명하는 자의 직명과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법 카메라 등 취급자)

제6조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그 업무를 보조하는 방법 카메라 등 취급자(이하 '취급자')를 둘 수 있다.

취급자는 방법 카메라 등의 작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상이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방법 카메라 설치 표시)

제7조 시장은 방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 내용 및 방법카메라의 설치자 명 또는 관리자의 직명을 방법카메라의 설치장소 또는 촬영구역 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화상표시장치 및 화상기록장치의 설치장소)

제8조 시장은 방법 카메라와 관련된 화상표시장치 및 화상기록장치를 잠금장치가 있는 실내 등에서 지정관리업무에 수반하는 방법 카메라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내다볼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상 데이터의 관리)

제9조 화상 데이터의 관리는 다음에 열거된 바에 따른다.

- (1) 관리자 및 취급자 이외의 자는 방법 카메라 등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 (2) 관리자는 화상데이터를 편집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촬영 시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 (3) 외부기억매체와 관련된 화상데이터는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실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화상데이터를 보관장소 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 (4) 관리자, 취급자 기타 지정 관리업무에 따른 방법 카메라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을 감시할 수 있다.
- (5) 전문가 및 취급자는 방법카메라 등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생화상을 검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자 및 취급자 이외의 지정 관리 업무에 따른 방법 카메라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것(재생 화상의 촬영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6) 관리자는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데이터의 복제물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7) 화상데이터는 전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방법카메라 등의 설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화상 데이터의 보관기간(겹쳐서 찍는 경우는 덮어쓰기 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동일)은 14일 이내로 한다.

(9)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생화상을 검색하거나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화상데이터의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다음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화상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화상데이터의 복제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검색, 제공하거나 이용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10) 보관기간이 경과한 화상 데이터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11) 기억매체의 열화가 인정된 화상데이터 및 제6호 또는 다음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후에 반환된 복제물인 화상데이터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삭제하고 기억매체의 파쇄, 재단 등을 하여 폐기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지정 관리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정관리자가 둔 관리자가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공을 하는 때에는 지정관리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이미지 데이터 이용 및 제공 제한)

제10조 시장은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목적의 범위를 넘어 화상 데이터를 후나바시시 내부 혹은 후나바시시 개인정보보호조례(2005년 후나바시시 조례 제6호)이하 '개인정보보호조례'라고 한다.)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실시기관(의회를 제외한다.이하 '실시기관') 상호 이용하거나 화상 데이터의 복제물을 다른 실시기관 혹은 실시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화상데이터 제공 요청을 문서로 받았을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2)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또는 본인에게 제공할 때

(3)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한 경우

(4) 시장이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화상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화상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보호시설 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후나바시시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조례(2005년 후나바시시 조례 제7호) 제1조에 따라 놓인 후나바시시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화상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화상데이터 복제물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립장애인복지시설의 방법카메라 등과 관련된 화상데이터이용·제공신청서(제1호 양식)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용 또는 제공승낙·불승낙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립장애인복지시설의 방법카메라 등과 관련된 화상데이터이용·제공승낙·불승낙 통지서(제2호 양식)로 당해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한다.

4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상데이터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상데이터를 수집한 때의 취급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특정한 부서에 한정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상데이터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공처에 대하여 제공과 관련된 화상데이터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제한과 기타 필요한 제한을 붙임과 동시에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확보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관공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상 데이터의 유출, 훼손, 멸실 및 조작 방지에 관한 것.

(2) 이미지 데이터의 복제물을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이용 및 제공 금지를 규정한다.

(3) 화상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4) 화상 데이터 반송에 관한 사항

(5) 화상 데이터 복제물을 제공받은 목적과 관련된 업무(제8호에서는 '업무') 종료 후의 화상 데이터 복제물 취급에 관한 것.

(6) 화상 데이터 취급에 관해 종사자에게 주지할 것

(7) 화상 데이터의 취급에 관하여 책임자의 설치에 관한 것.

(8) 업무의 위탁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것

(9)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에 관한 것

(10) 손해배상에 관한 것

(11) 기타 화상 데이터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시장은 방법 카메라 등의 운용을 지정 관리자에게 하게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서면을 수령하고, 제3항의 서면을 통지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특정 부서에 한해, 또는 전항의 필요한 제한을 붙였을 때는 그 내용을 서면으

로 지정 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재생 화상 검색 등에 따른 기록)

제11조 관리자는 재생화상의 검색과 화상데이터의 복제,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삭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립장애인복지시설의 방법 카메라 등과 관련된 화상데이터관리부(제3호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민원 처리)

제12조 관리자는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또는 운용에 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지정관리자는 방법카메라 등의 설치 또는 운용에 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 관리자에 관한 조치)

제13조 시장은 지정 관리 업무에 따른 방법 카메라 등 관련 업무를 볼 때 지정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협정서에 명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이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조례 적용)

제14조 개인정보보호조례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방법 카메라 등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보칙)

제15조 본 요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